

연구보고서(수시과제) 7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장은하 · 문유경 · 조혜승 · 김정수 · 김지현





2017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장 은 하 (본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 유 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조 혜 승 (본원 부연구위원)
김 정 수 (본원 전문연구위원)
김 지 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장은하·문유경·조혜승·김정수·김지현(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국제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차별화되어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개발목표의 달성에 대한 노력과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유엔(UN)의 SDG 지표에 대한 유관기관·전문가그룹(IAEG-SDG) 운영과 고위급정치포럼(HLPF) 개최 등을 통해 SDG 지표의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DG 목표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전의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권한강화”가 SDGs의 다섯 번째 독립목표로서 수립되어 있으며, 그 외 10개 목표에 성평등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평등의 달성 없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도 달성이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 역시 SDGs 내 성평등 관련 목표의 이행 및 달성에 대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특별히 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그 내용면에서 MDGs에서 진일보하여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 구조적인 성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적 성평등 지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관련 지표의 이행을 위한 배경지식과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내논의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방향 제시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성인지적 관점



에서 제시하고, 국내의 관련 가용통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SDGs 성평등 목표 이행과 달성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국내적 논의에 의미 있고 유용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자문의견을 내어주신 유관기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원내외 연구진 및 집필자, 그리고 본 연구사업을 지원해준 박윤정 위촉연구원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권 인 숙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됨.
- SDGs는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을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요청함. 한국 역시 SDG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착수가 필요한 상황임.
-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독자적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음.
- 특히 SDGs 5번에서는 구조적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어 전환적(transformative) 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국내적으로 SDGs 이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SDGs 와 성평등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SDGs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SDGs 글로벌 이행 현황과 국내 이행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본 연구는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분석함.

- 둘째,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앞서 서술된 배경 및 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제 2장에서는 SDGs와 지표 수립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과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함.
 - 본론인 제 3장에서는 성평등 독자목표(SDG 5)의 14개 지표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지표 10개의 41개 지표와 2개의 세부목표를 검토하고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향후 성평등 관련 SDGs 목표의 국내적 이행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나. 연구의 방법

- SDGs 내 성평등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젠더관점의 해석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함.
- 향후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정부(여성가족부 및 통계청), 여성단체, 개발협력 분야 및 SDG 관련 시민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진행함.

II. 이론적 배경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SDGs 지표의 수립 과정은 2015년 3월 구성되어 지표 수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이하 IAEG-SDGs) 회의와 유엔통계위원회(UNSC) 총회가 연계되어 이루어져 옴. IAEG-SDGs은 지표를 녹색, 황색, 회색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여, 지표의 개발상황에 따라 3개 Teir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공개자문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수정해오고 있음.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 2016년 7월 3개 Tier 체계 완성 이후, IAEG-SDGs는 2017년 10월 현재 시점으로 232개 지표(실제 244개)를 확정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수정, Tier 재분류, 추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총 33개의 지표가 제5차 IAEG-SDGs 회의에서 개선, 수정된 바 있음. 이들 개선 및 수정은, 세부목표와 지표 간 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샌다이 프레임워크와의 연동된 결과이거나, 혹은 세부목표와의 관계나 지표 간 관계 정리를 통해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IAEG-SDGs 3차 회의 직후, Tier III 지표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Tier 재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작됨.
 - 2017년 말까지 33개 세부목표 상의 37개 지표 추가 여부가 확정될 예정임.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 성평등 지표에 대한 정의는 크게 독립목표로서 목표 5에 포함되어있는 지표들과 기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크로스커팅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UN Women(2017)의 기준을 준용하되, 목표별로 성별 분리가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지표 혹은 세부목표를 더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함.

- 젠더 지표는 Tier I, II, III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성평등 목표인 목표 5의 경우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Tier III 지표도 가장 많고, 특히 목표 5의 경우는 Tier III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Tier II도 많아 지표의 완성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젠더관련 지표 중 Tier III 지표들의 개발일정은 대부분 2017년 내에 방법론 관련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2017년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2020년 중간점검 이전까지는 모든 지표가 Tier I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일정임. 또한, 글로벌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Tier III 개발 일정과 함께 젠더관련 지표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 세분화와 그 정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11월 6차 IAEG-SDGs 회의에서 시작되는데, 데이터 세분화와 수집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넘어 기타 소수 성정체성 이슈까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가. 거버넌스

-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촉구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가 마련됨.
-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됨.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이후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

- 그러나 초기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위상의 재정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선행연구

- 현재 SDGs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SDGs 아젠다의 글로벌 이행 연구, SDGs 국내이행 연구, SDGs의 지역차원 이행에 관한 연구, 통계·데이터 측면의 연구,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연구, SDGs 섹터 별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아직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추진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이행을 위한 논의의 기초와 지침으로써 유용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자목표 5번과 성평등이 크로스커팅된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현재 국내 가용통계와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II.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MDGs의 성평등 목표에서는 모성보건, 성평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MDGs의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Post-2015 논의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달성을 위한 구조적 방해물을 해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함(UN Women 2013:2).

- 이러한 시각 하에, SDGs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진입하게 됨. SDGs에서는 여성성기절제 등 여성에 대한 악습, 성평등을 위한 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역량강화, 재생산 건강과 자기결정권,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세부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철폐와 권리적 접근이 도입되었음. 또한 크로스커팅 이슈에서는 10개 목표에 포함됨으로써, SDGs의 보다 넓은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실현하였고 이는 보다 통합적인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가. 세부목표의 의의

- 성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함.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존재함. 법 자체가 차별적일 수도 있으며, 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차별은 존재할 수 있음. 또한 법적으로 차별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더라도, 같은 법은 여성과 남성에게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본 목표는 5번 목표 이하의 다른 세부목표들을 아우르는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를 제시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 국내 현황을 보면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음.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가. 세부목표의 의의

- 세부목표 5.2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공동의 보편적인 문제임. 이러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ICPD Programme of Action)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슈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SDGs에서는 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지표 5.2.1은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의 소녀 비율을 측정하고자 함. 이 지표는 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는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로부터 경험하는 육체적, 성적, 심리적 형태의 폭력을 모두 다루고 있음. 또한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에 대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에는 지표 5.2.1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데이트 폭력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여성이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가늠해 볼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나, 동거상태가 아닌 비동거 상태의 성적 파트너에게 당한 폭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데이트폭력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만 18세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녀가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지표 5.2.1의 국내 이행과 SDGs 국가 보고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계자료의 개발이 요구됨.

2) 지표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지표 5.2.2는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을 조사함.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표 5.2.2에 관한 국내 가용 통계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검토할 수 있음. 최근 실시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2015년 8월~2016년 7월) 동안 남성(0.1%)에 비해 여성(1.5%)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나, 신체적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가. 세부목표의 의의

- 5.3 세부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MDGs에 비해 SDGs가 젠더적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되는 세부목표 중 하나임. 유엔(UN)에서는 조혼, 여성할례 등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 문제를 여성 및 소녀의 재생산 건강 및 성·재생산권을 포함한 여성 및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를 저해하는 차별이자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정의하고 있음. 유해한 관습에 대한 세부목표는 기존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 협약으로서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나. 지표 분석

1) 지표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지표 5.3.1은 세부목표 상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언급된 아동결혼 및 조혼에 대한 지표로서, 20-24세의 여성인구 중에서, 15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과, 18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검토함.
- 지표 5.3.1의 경우, 국내에 가용통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 작성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혼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등의 통계가 존재하나, 혼인통계의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미비하기도 하고, 18세 이전의 동거 경험 혹은 사실혼 경험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2012~2016)의 <인구동향조사> 상의 연도별 혼인건수를 아내와 남편의 연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15세 미만의 남녀 혼인 건수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19세 이하 남녀 혼인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여성의 경우, 1%대 정도에서, 남성의 경우, 그보다 더 낮은 0.2~0.3% 수준임.

2) 지표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 지표 5.3.2는 세부목표 상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제시된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에 대한 지표로서 15-49세 사이 여성인구 중에서 여성성기절제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로 측정됨.
- 지표인 5.3.2와 관련해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가 주로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으므로, 국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동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와 국내적 상황 및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가. 세부목표의 의의

- 5.4 세부목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부과되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unpaid care and domestic work)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돌봄과 가사노동의 남녀 간 분배는 그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시장 참여, 임금 및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의 문제 및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나. 지표 분석

1) 지표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 유엔 통계국이 제시하는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정의는 자가 최종 소비를 위한 무급 생산활동으로서, 자가소비(self-consumption)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무보수 노동과, 공동체와 환경,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보수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을 포함함. 지표의 계산 방식은 개인의 전체 시간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성별, 연령,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혼인상태, 소득, 장애여부, 인종/민족 등의 분류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권장하고 있음.
- 5.4.1지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가용통계가 행동별·집단별로 일별 분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국내 가용 통계 중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검토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서 여성이 약 3-5배의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업무(일)에 활용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아 남녀 간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시간의 사용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음.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선정함. 세부목표 5.5 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SDGs 수립을 위한 UN의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8차 회의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선정함. 세부목표 5.5는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지표 5.5.2. ‘여성관리직 비율’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검토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 동 지표는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을 측정함. 의회의 경우 전체 여성과 남성의 의석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단원제 또는 하원 의원석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체 여성과 남성의 수 중에서 여성이 대표직을 맡은 수의 비율(%)로 계산됨. 또 지방정부의 경우 각 국가의 지방정부의 구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음.
- 지표 5.5.1의 경우 국내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당선인 통계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대 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지표 5.5.1.에 대한 국내 지표 산출이 가능함.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음.

2) 지표 5.5.2. 여성 관리직 비율

- 지표 5.5.2.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그 외 분야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을

검토함. 지표 5.5.2.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과정을 보기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의 표준 척도보다는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Tier II와 Tier III 지표는 추가 개발이 필요함.

- 관련 국내 가용 통계로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매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판사를 포함한 여성 법조인 비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 5.5.2. 지표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여성 및 여아의 인권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게 됨. SDGs 수립을 위한 UN 차원의 공개작업반은 제 8차 회의부터 양성평등과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슈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함.
- 세부목표 5.6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지표 5.6.1)’과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지표 5.6.2)’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 지표 5.6.1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을 측정함. 즉, 성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에 남성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측정하기 위함임.

- 지표 5.6.1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 이 조사는 1964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3년 주기로 측정되며 한국의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형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됨.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피임사용과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몇 개의 문항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5.6.1지표의 국내 이행정도를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지표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 5.6.2.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임.
- 이는 성관계 및 재생산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문제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됨을 의미함.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Tier III로 구분되고 있음.
- 지표 5.6.2의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가. 세부목표의 의의

- 여성의 경제적 자원(토지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이 자원들이 개인과 가구의 수입 창출원이 되며 경제적 충격과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여성은 또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협상력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음.

나. 지표 분석

1) 지표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농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 (a)는 전체 농업 종사자 중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함. 반면 (b)는 양성 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의 정도를 나타냄.
- 한국의 경우 현재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자원, 토지,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
- 본 지표를 한국에서 적용할 경우, 단지 농지소유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지표로 그 해석을 확대해 볼 수 있음. 현재 한국의 경우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 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에 성별구분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음. 또 다른 지표로는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을 고려할 수 있음. 2017년의 경우 남성은 56.4%(751만2천명), 여성은 42.4% (580만 1천명)으로 주택 소유율에 있어 남성이 약 1.29 배 높았으나, 여성소유자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2) 지표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 본 지표의 정확한 정의는 “법적근거는 여성의 토지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포함한다”임. 한국의 경우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동 지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원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가. 세부목표의 의의

- 현재 정보통신기술은 마케팅 및 은행업무 등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는 농촌 및 벽지 거주자의 정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나. 지표 분석

-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이 지표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매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환경과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을 참고할 수 있음. 2016년 현재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 보면, 남성은 87.9%, 여성은 82.2%로 남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이용률의 경우, 2016년 남성이 86.7%, 여성이 80.6%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가. 세부목표의 의의

- 본 지표는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본 지표는 공공재정 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cycle)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1) 추적하고 2)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고자 함.

나. 지표 분석

- 본 지표는 통계의 수치가 아닌 시스템의 존재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음. 한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이 존재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 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내에 다양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음.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1의 빈곤이슈는 일찍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부터 자세히 다루어지기 시작한 여성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임. 목표 1의 7개 세부목표 중에서 5개 세부목표에 성별, 연령이 구분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전체 12개 지표 중에서 6개 지표에 해당함.
-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음. 둘째, 토지권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가 2018년도부터 성별 분리되어 발표될 예정임. 셋째, 사회안전망 내 취약계층의 비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수급자가 15만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여성 등 취약계층에 배당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지출 비중과 재난

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된 인구 수 지표수립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 목표 2의 주요내용은 기아 종식과 영양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임. 동 목표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식량에 대한 권리 (right to food)와 가임기 및 수유기 여성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 전체 7개 세부목표 중 2개 세부목표에서 여성,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등을 언급하고 있음. 세부목표 2.2의 하위지표로 가임기 여성의 빈혈이 지표의 하나로 추가될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음. 세부목표 2.3의 하위 지표로는, 소규모 식량생산의 평균 소득을 성별 및 원주민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함.
-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표 2.3.2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가 존재하나(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37-38) 조사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성별 분리된 농가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세부목표 2.2와 연계된 빈혈 유병율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상 성별, 연령별로 분리된 빈혈 유병율 추이를 확인하면, 20대 여성은 8.6%, 30대 여성은 12.6%, 40대 여성은 16.1%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음.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겪지만, 특히 여성과 여아의 경우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기인하는 성차별적 역할 및 요인들로 인해 건강을 저해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됨. 특히 북경행동강령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여성의 건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생산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보건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생식기관련 질병, HIV/AIDS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노출됨. 목표 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는 총 4개로 산모 사망비율(3.1), AIDS 등의 전염병의 성별 비율(3.3),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3.7),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3.8)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보건과 관련된 SDG 목표 3의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음. 모성 사망 비율과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의 경우 지표의 기준이나 세계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HIV/AIDS 신규 발생률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정도를 보임.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과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함.

- 그러나 청소년 출산율의 경우, 10-14세의 출산율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조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국내 수요를 반영한 '필수 보건서비스'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함.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목표 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비차별적 교육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이루어지며, 특히 여성의 교육은 가족 내의 건강과 영양, 교육 증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MDGs 내에서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목표로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SDGs에서는 교육의 질과 중등교육, 직업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범위가 확대됨.
-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후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 여성의 삶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로 포함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음. 특히 세부목표 4.5는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목표 4.1-3은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을 모두 언급하며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음. 목표 4 내에서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이행 방안 중 7개가 젠더를 포함하고 있음. 즉,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목표와 지표가 성평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 성평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교육과 관련된 SDG 목표 4의 젠더관련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과 남성의 교육기회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성평등이 달성되었다고 보임. 다만, SDGs의 이행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데이터 구축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물과 위생시설에의 접근은 여성권한강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임.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여성과 여아들이 물을 길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수인성 감염 발생률 감소와 같은 연관된 분야에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은 지표임.
-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하수도 보급률>이 있음. 한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은 1997년 60.9%에서 2015년 92.9%로 증가하여 48,925천명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움.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목표 8에서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빈곤 퇴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목표 8의 크로스커팅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는 여성들의 유급노동과 일자리의 질,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12개 세부목표 중에서 4개 세부목표 하위의 6개 지표에서 성별분리 통계가 요청되고 있음.
-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표 8.3.1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조사>의 성별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치에 따르면, 자영업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약 7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지표 8.5.1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실정임. 한편, 8.5.2 지표의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성별 분리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 기준 남녀 간 실업률에 큰 차이는 없거나 여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임. 아동노동과 관련된 8.7.1 지표와 및 8.8.1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표수립을 위한 자료 보완이 필요함.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목표 10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불평등은 사회적 통합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 기존의 MDGs내에서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이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MDGs는 저개발국의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선진국 내에서의 불평등 완화까지 초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목표 10은 총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방안을 포함함. 이 중에서 세부목표 10.2와 지표 10.2.1은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로 분리됨.
- 세부목표 10.2는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현황을 집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입과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지표 10.2.1은 성별분리 데이터를 지표로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나누어 살펴보게끔 함. 이는 여성이 경제위기와 빈곤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지표 10.2.1에 대한 국내 가용 데이터로는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로 분기별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음.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전체 인구비율이 13.8%라면, 남성은 11.5% 여성은 15.9%의 비율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함. 이 지표는 앞서 언급된 세부목표 1.1과 1.2의 지표 1.1.1, 1.2.1, 1.2.2와도 연동되어 집계될 수 있음.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 안전한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해당 정부는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장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성과 소녀의 전반적인 안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
- 지표 11.2.1은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을 측정함.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와 <국가교통조사>가 있음. 이 통계들은 매우 세분화 되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부목표 11.7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명시하는 목표임. 지표 11.7.1은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을 측정함.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토지소유현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이 있음. 그러나 이 통계로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항목 확장이나 세분화가 필요함.
- 세부목표 11.7.2는 지난 12 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겪은 15 세 이상 소녀 및 여성의 수 (최신 괴롭힘의 가해자 및 발생 장소 별로 분류)를 측정함.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국가승인통계인 <성희롱 실태조사>가 있음.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7,844명) 응답자의 6.4%로 나타났으며, 남성(1.8%)보다 여성(9.6%), 관리직(4.6%)보다 일반직원(6.9%), 정규직(6.4%)보다 비정규직(8.4%)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 연령적으로는 40대 미만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남. 성희롱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 장애유무, 취업여부로 분류되어 있으며, 발생 장소도 분류하고 있어 지표 11.7.2.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함.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소녀들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조사됨. 동 지표의 정의 및 계산 방법으로는 여성, 청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배양하는 전문 지원을 받는 최빈개발도상국(LDCs)의 수를 선정하고 있음.
- 13.b.1.지표는 여성, 청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배양하는 전문 지원을 받는 최빈개발도상국(LDCs)의 수(UNSD Goal13, 2016: 14)를 설정하였으며, 최빈개발도상국의 수를 지표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은 없음. 그러나 목표 13번의 기본 취지와,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13.b.1 지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정부도 기후변화와 젠더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목표 16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와 사회적 포용, 사법 접근권 강화 및 제도의 효과성·책임성·투명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동 목표 하에는 16개 세부목표와 23개 지표가 포함됨. 이 중에서, 폭력 및 사망, 아동에 대한 학대·착취·매매·폭력과 관련된 3개 세부목표의 6개 지표에서 성별로 분리된 지표가 수립되어 있으며, 성별로 구분된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16.1 세부목표 하의 두 지표(16.1.3, 16.1.4) 역시 여성과 관련이 많은 지표들로 보임.
- 관련하여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6.1 세부목표와 관련해 분쟁과 관련된 지표 외에는 관련 지표들이 성별로 분리된 통계에 의해 모니터링 가능할 것으로 보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강력범죄의 피해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며, 성폭력 피해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16.2 세부목표의 2개 지표(16.2.2, 16.2.3)와 관련해서는, 여성피해자수가 남성에 비해 여성 피해자가 2~3배 정도에 이르고, 20세 이하의 피해건수가 42건에 이르는 등 아동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의 피해자 수가 남성에 비해 약 2배를 차지함.
- 16.7 세부목표의 2개 지표(16.7.1, 16.7.2)와 관련해서는, 16.7.1 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식이 국내외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며, 16.7.2 지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하는 선거 관련 통계와 안전행정부에서 생산하는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등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음. 이들 통계를 참고하면,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부내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음.

V. 정책과제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SDGs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를 분석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함. 이를 통해 향후 SDGs 내 젠더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검토, 국내 가용 통계를 매칭 및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 연구결과, 한국은 SDGs 젠더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지표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일부 성평등 관련 지표에 관련하여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본고에서는 SDGs의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맥락을 반영한 대안 목표 및 지표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정확한 가용 통계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 통계 생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함. 또한 관련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함.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SDGs 내 성평등 관련 목표의 이행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의 SDGs 성평등 관련 목표의 로드맵 수립과 실질적 달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분야별 정책 제언

가. SDGs 성평등 목표 달성 거버넌스

1)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 국내 SDGs 이행 총괄 기구의 위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총괄 기구가 정해진 후에는 SDGs 내 성평등 관련 목표 이행을 위한 분야별 작업반(working group)이나 분과위원회 설립을 제안함.
- 또한 환경, 교육, 보건, 성평등, 도시, 물 등 SDGs 내 특정 목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자문, 조정, 협치를 담당할 주무부처가 필요하며 성평등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2)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법·정책에 주류화(통합)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중 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은 기존의 법·정책에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통합하는 방법임.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평등위원회에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과할 수 있음.

3)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단체, 통계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함.

4)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의 로드맵 구축을 제안함. 2015-2020년의 첫 5년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20-2025의 다음 5년은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2025-2030의 마지막 5년은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상할 수 있음.

3. 향후 연구 과제

-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첫째, 글로벌 논의 현황과 해외 사례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함. 둘째,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함. 여기에는 성평등 독자 목표와 크로스커팅된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해석, 지표 확정, 대안지표 개발 작업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셋째,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s 성평등 목표의 국외 이행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 넷째, 통계와 관련 하여 성평등 목표, 크로스커팅 목표 이외에도 SDGs의 전 지표의 성인지적인 해석과, 성별 분리 가능 통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기존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소개·비교하는 작업, 글로벌 지표 중 국가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대해 국별 비교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작업 등도 수행된다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풍성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의 내용	6
나. 연구의 방법	9
II. 이론적 배경	13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15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15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18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30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34
가. 거버넌스	34
나. 선행연구	38
III.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45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47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
가. 세부목표의 의의	51
나. 지표 분석	52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55
가. 세부목표의 의의	55
나. 지표 분석	56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	62
가. 세부목표의 의의	62
나. 지표 분석	64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71
가. 세부목표의 의의	71
나. 지표 분석	72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77
가. 세부목표의 의의	77
나. 지표 분석	77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84
가. 세부목표의 의의	84
나. 지표 분석	85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95
가. 세부목표의 의의	95
나. 지표의 분석	95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99

가. 세부목표의 의의	99
나. 지표의 분석	100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102
가. 세부목표의 의의	102
나. 지표 분석	102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107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09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113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116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20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26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28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32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34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38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40

V. 정책과제	147
1. 연구의 요약	149
2. 분야별 정책 제언	150
가.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150
나.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151
다.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152
라.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158
3. 향후 연구 과제	160
■ 참고문헌	163
■ 부 록: SDGs 목표 5 번역표	171
■ Abstract	179

표 목 차

<표 I-1>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지표 목록	7
<표 I-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내용	10
<표 II-1> SDGs 지표 검토과정 중 색깔코드 분류	15
<표 II-2> IAEG-SDGs 회의 경과	16
<표 II-3> 지표의 Tier 체계구분	18
<표 II-4> 지표 개선 결과	20
<표 II-5> 샌다이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개선 결과	22
<표 II-6> 지표 오류 개선결과	22
<표 II-7> Fast Track 지표 제안과 결과	24
<표 II-8> 목표별 지표의 Tier 구성	25
<표 II-9> 추가 검토 지표	26
<표 II-10> 목표별 성평등 관련 지표와 Tier 현황	33
<표 III-1> SDGs 독립목표로서 성평등 세부목표	47
<표 III-2> 목표 5 지표의 초안과 확정지표	49
<표 III-3>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	53
<표 III-4>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	54
<표 III-5>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평등권 침해의 차별 조항	55
<표 III-6>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58
<표 III-7>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59
<표 III-8>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61
<표 III-9> 5.3.1 지표 관련 국내통계	66
<표 III-10> 연령별 남녀 혼인건수	66
<표 III-11> 남녀 초혼 평균연령	67
<표 III-12> 5.3 세부목표 관련 대안적 지표 및 통계(안)	70

<표 III-13> 5.4.1 지표 관련 국내통계	74
<표 III-14> 10세 이상 남녀인구의 행동별 평균시간(요일평균)	75
<표 III-15> 지역(농가/비농가)에 따른 행동별 남녀인구 행동별 평균시간 (요일평균)	75
<표 III-16> 10세 이상 남녀인구의 연령에 따른 남녀인구 행동별 평균시간 (요일평균)	76
<표 III-17> 역대선거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지역구	79
<표 III-18> 역대선거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비례대표	79
<표 III-19>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비율	80
<표 III-20>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비율: 비례대표	80
<표 III-21> 역대선거별 여성 기초의원 비율	80
<표 III-22> 역대선거별 여성 기초의원 비율: 비례대표	81
<표 III-23> 여성 판사의 비율	82
<표 III-24> 5.6.1 지표와 관련된 국내 설문 문항	86
<표 III-25>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87
<표 III-26>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 (중복 응답)	89
<표 III-27> 5.6.2 지표와 관련된 국내 법률 및 규정	92
<표 III-28>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104
<표 IV-1> 목표 1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09
<표 IV-2> 목표 2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14
<표 IV-3> 목표 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16
<표 IV-4> 목표 4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21
<표 IV-5>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성별 분포	124
<표 IV-6> 목표 1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26
<표 IV-7> 목표 8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29
<표 IV-8> 성별 비임금 근로자수	131
<표 IV-9> 목표 10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32
<표 IV-10> 성별 중위소득 50%이하 비율 (단위: %)	133



<표 IV-11> 목표 11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34
<표 IV-12> 목표 1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38
<표 IV-13> 목표 16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141
<표 V-1>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154
<표 V-2> 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통계의 구분	156

그림 목 차

[그림 II-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	36
[그림 II-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 체계도	37
[그림 III-1] 공적·사적 부문의 여성 관리직 비율	83
[그림 IV-1] 성폭력 피해건수 증가추이 (1999-2015)	144
[그림 V-1] SDGs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로드맵	159



I

서론

-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¹⁾ 새로운 SDGs 프레임워크가 이전의 MDGs와 차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본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을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SDGs를 이행해야 하며, 한국 역시 SDG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SDGs 목표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엔(UN)은 “SDG 지표에 대한 유관 기관·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을 구성하였으며, 2017년 7월 뉴욕 UN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HLPF에서 첫 번째 자발적 국별평가 보고를 진행한 22개국 중 하나로서, 이를 위해 외교부가 국무조정실, 환경부, 통계청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과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ROK, 2016: 3-4).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이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걸친 SDGs 목표의 한국의 현황을 개괄하였다. 이어 SDGs 목표 관련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혁신적 이행수단의 발굴 등을

1) 이는 2017년 10월 시점까지 구성된 지표의 개수로서, II장에서 제시될 국제적 SDGs 지표 논의에 대한 내용에서 후술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표설정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지표의 개선과 수정, Tier의 재분류와 더불어, 2017년말까지 33개 세부목표 하의 37개 지표 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독자적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었다. 특히 SDG 5번에서는 MDGs와는 달리 구조적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어 성평등 달성에 있어서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관한 고민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국제여성인권 운동의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에도 이러한 전환적(transformative) 관점이 녹아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작으로 현황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적으로 SDGs 이행 및 성평등 독립목표와 크로스커팅 목표의 이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아직 SDGs 성평등 목표의 체계적 이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²⁾, 2016), 한국의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도,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 목표와 성과, 성 평등 간 연결성이 부족하며, SDGs 내 주요 젠더이슈인 폭력, 여성혐오살인(femicide)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개선 노력 부족함을 지적하며,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평가 및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행과제 보완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3).³⁾

또한 SDGs 와 젠더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글로벌 연구는 UN 차원에서 다수 생산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개론적이

- 2)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 3) 보고서 자문회의를 통해, 아직 현재 SDGs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국내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표 분석 및 국내 지표 개발 등의 작업은 아직 착수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기 보다, 국제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할 것을 제안함.

거나 기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김은경 외, 2014). 통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SDGs 전체 지표와 가용통계를 매핑(mapping)한 연구가 있으며, 여기에서 목표 5번과 젠더가 크로스커팅된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바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b; 고경환 외, 2016). 이러한 연구들은 SDGs 지표관련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나, 젠더관점이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SDGs의 성평등 관련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강상인, 2015),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SDGs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SDGs의 글로벌 이행 현황과 국내 이행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 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를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SDGs 국내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성 평등 지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 되었다. 독자목표 5번의 각 세부목표들은 지난 수십 년 간의 글로벌 여성 권한강화 운동의 결과로써, 성평등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행을 논의하기에 앞서 SDGs 내 성 평등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각 세부지표 별로 가장 적합한 가용통계를 찾거나, 가용통계가 부재할 경우 대안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표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부목표와 지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국문 번역이 필요함을 파악하고 국내 젠더 전문가들과 함께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후술되겠지만, 성평등 관련 지표는 국제사회 차원의 지표 논의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52개 지표에 중에서 비교적 지표 구축이 잘 되어있는 Tier I에 해당하는 글로벌 지표는 9개 정도에 불과하고,

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Tier II와 Tier III에 해당하는 지표가 각각 25개, 16개, 다중/미정인 지표가 2개로 상당부분 추가적인 지표개발이 요청된다(<표 II-10> 참조).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SDGs 성평등 목표의 이행 점검을 위한 국내 가용통계를 점검하고, 한국의 현 주소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국내 이행 및 국내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장기적 안목의 국가적 논의가 필요할 상황이다.⁴⁾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본격적인 국내적 논의에 앞선 사전 연구로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향후 한국 정부 및 사회의 SDGs 성평등 지표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로드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앞서 서술된 배경 및 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 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수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과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배경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론인 제 3장 및 4장에서는 성평등 독자목표(SDG 5)와 그 외 성평등이 크로스커팅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10개 SDG 목표의 41개 지표 및 2개 세부목표를 검토하고 분석한다(<표 I-1> 참고).⁵⁾ 구체적으로 성평등

4) 동 과제 중간보고회(2017. 9. 29.)에서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임.

5)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목표와 세부목표, 지표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sex, gender, women and girls and/or are specifically or largely targeted at women and girls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를 정의하고 있는 UN Women(2017) 기준을 준용하되,

독자목표와 크로스커팅 목표와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수립 배경과 젠더적 의의와 해석을 제시하여 해당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성 인지적 이해를 돕고, 관련 국내 가용통계를 파악해 국내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⁶⁾

〈표 I-1〉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지표 목록

목표	지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1 성별, 연령별, 고용상태 및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2.1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국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2.2 국별로 정의된 모든 측면에서 빈곤 상태의 전 연령 대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1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 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비율(성별, 토지권 종류별) 1.5.1 100,000명 당 재난영향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dispassionately benefit) 정부의 정기적인 자본지출(recurrent and capital spending)의 비중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상 필요에 대응 (현재 논의 중인 지표: 가임기 여성의 빈혈)* 2.3.2.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생산 평균소득

목표별로 성별 분리가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지표 혹은 세부목표를 더 포함하는 식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 6) 본 연구의 중간보고회(2017. 9. 29.)에서 유관기관 자문위원들은 본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끝나기보다는 향후 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점의 국내적 논의를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향후 SDG 성평등 지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논의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성평등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젠더관점의 의의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지표별 국내현황 제시는 간략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국문 해석은 기존 선행문헌에서 각 연구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성인지적 해석이 특히 필요한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목표	지표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p>3.1.1 모성사망비</p> <p>3.1.2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용</p> <p>3.3.1 성별, 연령별, 주요인구군별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HIV/AIDS 신규 발생률</p> <p>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율</p> <p>3.7.2 각 연령층별 1,000명 여성 당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p> <p>3.8.1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추적치료로 제공되는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건강, 전염병, 비전염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필수 서비스의 평균적인 보장)</p>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p>4.1.1 (a) 초등학교 기간 중 2/3 이상 이수한 아동의 성별 비율, (b) 초등 교육 졸업아동 성별 비율, (c) 중학교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성별 아동/청소년의 비율</p> <p>4.2.1 5세 미만의 아동 중 건강,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성별 비율</p> <p>4.2.2 (공식 초등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성별 비율</p> <p>4.3.1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p> <p>4.5.1 (성별,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른) 동등성 지수</p> <p>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비율</p> <p>4.7.1 (i) 세계시민교육과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의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p> <p>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목적의 컴퓨터, (d) 장애 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 손씻기 시설(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p>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p>6.2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종식*</p>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p>8.3.1. 성별 비농업분야 비공식고용 비율</p> <p>8.5.1. 직업별,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p> <p>8.5.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p> <p>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p> <p>8.8.1. 성별, 이민신분별 치명 또는 비치명적인 직업관련 부상 빈도비율</p> <p>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문안과 국내법에 기반한 노동권(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국내준수 수준</p>

목표	지표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위소득보다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 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13.b.1. 여성,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하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1. 성별, 연령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인구 10만명당) 16.1.2. 성별, 연령별, 원인별 분쟁 관련 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 16.1.4. 거주지 주변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2. 성별, 연령별, 착취 유형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16.2.3. 18-29세 사이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인구 비율 16.7.1. 국내 전체 대비 공공기관(중앙/지방의 입법부, 공공서비스, 사법부)에서의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지위 16.7.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의사결정 과정이 포용적이고 반응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주: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성평등이 크로스커팅된 41개의 지표와 2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됨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 5장에서는 향후 성평등 관련 SDGs 목표의 국내적 이행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하고자 한다. 관련 논의의 진행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와 함께, 국내 관련 통계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로드맵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SDGs 내 성평등 목표 및 지표에 대한 배경설명과 젠더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UN

1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문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제적 SDGs 목표 및 지표 수립과정을 검토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내 선행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 SDGs 관련 거버넌스와 기존 선행문헌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성평등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UN Women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과 함께, 국제적 SDGs 수립과정 논의에서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주요하게 언급되는 여성차별 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북경행동강령 등의 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표와 관련해서는 UN 통계국에서 2016년 발간한 지표해설서를 참고하였고(UN, 2016), 이와 더불어 국내 가용통계 및 현황과약을 위해 SDG 지표 수립과 관련된 주요 국내 선행문헌과 국가통계포털 등 주요 국내통계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후속논의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제시를 위해 총 3회의 자문회의 및 1회의 서면자문을 진행하였다(표 I-2 참조). 정부(여성가족부 및 통계청), 여성단체, 개발협력 분야 및 SDG 관련 시민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의 착수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 강도 높은 의견수렴과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연구진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성 평등 목표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I-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내용

차수	일시 및 장소	자문자	주요 내용
1	2017.09.29(금), 09:30-11:30 한국여성정책연구 연구원 국제소회의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 연대센터장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 담당관	- SDGs 목표, 지표의 개념, 의미 등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함. - 국내선행연구가 미흡한 분야로 본 연구를 위한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SDGs 성평등관련 지표이행을 위해 젠더의 개념 및 용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SDGs 국내이행을 위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적극 참고 요함.

차수	일시 및 장소	자문자	주요 내용
2	2017.12.05(화), 10:00-13:00 한국여성정책연구 구원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 연대센터장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 SDGs가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함. - SDGs 목표와 지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3	서면자문	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통계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국내 맥락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글로벌 지표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지표 발굴이 필요함. - SDGs 지표 중 정책적 필요가 높은 지표에 대해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제도를 통해 기존의 조사 체계 및 항목을 정비하여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함. - SDGs 지표 중 정책적 필요가 높은 지표에 대해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제도를 통해 기존의 조사 체계 및 항목을 정비하여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존 연구와의 차별을 위해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II

이론적 배경

- | | |
|------------------------------------|----|
|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 15 |
|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 34 |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1) IAEG-SDGs 회의와 지표 수립과정

SDGs 지표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2015년 3월 구성되어 지표 수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IAEG-SDGs) 회의와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 총회의 연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표 수립은 2014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공개작업반(UN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OWG)의 SDGs 초안이 UN 총회에 제출된 이후 2015년 3월 IAEG-SDGs가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1차 회의에서 지표개발 및 분류 확정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표 상호 연계성 분석 및 데이터 세분화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였다(IAEG-SDGs, 2016).

지표 수립의 가장 첫 단계로 IAEG-SDGs는 250-300개 사이의 지표를 검토하여 색깔 코드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표 II-1 참조).

〈표 II-1〉 SDGs 지표 검토과정 중 색깔코드 분류

	분류기준
녹색(Green)	- 강력히 반대하는 응답자가 25% 미만으로 대체로 동의 - 일부 지표의 경우 이미 완전히 수립되어있는 경우
황색(Yellow)	- 해결할 수 없는 이슈나 대안 지표 제안이 있으나, 회의기간동안 해결이 가능했던 경우
회색(Grey)	- 여전히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한 경우 -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경우

출처: IAEGs-SDGs (2015: 2)

이러한 색깔코드의 분류를 통해 2차 회의에서는 황색을 녹색과 회색으로 정리하고, 3차 회의에서는 남은 회색을 모두 녹색으로 정리하여 색깔코드를

1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삭제하는 방식으로 검토대상 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표확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성을 보여 왔다. 2차 회의를 통해 총 216개의 지표를 검토하였고, 이 중 159개가 녹색으로, 57개의 회색이 남아있는 가운데 2016년 3월 3차 회의를 통해 230개 지표 리스트를 미개발 지표에 대한 개발계획과 함께 제47차 UNSC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지표를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4차 회의를 통해 2개의 새로운 지표(1.a.3과 3.b.2)가 추가되어 2017년 10월 현재 총 232개의 지표목록이 구성되어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별지표에 대한 문안개정 및 지표추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⁷⁾.

〈표 II-2〉 IAEG-SDGs 회의 경과

	주요 논의 결과
1차 회의 (‘15.03 뉴욕)	- 지표개발 및 분류확정 계획 수립 - 세부지표 상호연계성 분석 및 데이터 세분화에 관한 원칙 확인 - 지표제안서 요청
2차 회의 (‘15.10 방콕)	- 250-300개 사이의 지표 검토 - 지표분류체계 Tier System + Color System
3차 회의 (‘16.04 멕시코시티)	- Color system 삭제(모두 녹색으로 합의완료) - 230개 최종 리스트 및 향후 개발계획 제출(47차 UNSC 총회)
4차 회의 (‘16.11 제네바)	- Tier 시스템 확정 - 지표개선 절차 수립 및 지표개발 기관의 일정 점검
5차 회의 (‘17.03 오타와)	- Tier 시스템 검토 및 Tier III일정 점검 - 추가/삭제 지표

출처: UNSD 홈페이지.

이렇게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개선되는 이유는 현재 SDGs 지표의 수립 절차상의 특징과 구성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표의 확정은 단순히 IAEG-SDGs 전문가와 UNSC의 형식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계획과 지표 개선방향에 대해

7)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올 ‘나. 지표개선 작업 현황’과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에서 다루기로 한다.

논의하기 시작한 제4차 회의 이전까지 IAEG-SDGs는 총 4차례에 걸친 공개 자문(Open Consultation) 세션을 공식적으로 개최하였고, 각 단계별로 데이터 개발을 실제 담당할 기관의 개별지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통계 관련 기관, 기타 UN 기구, 회원국 국가통계기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표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⁸⁾. 이는 과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조, 회원국 국가통계기구 및 시민사회의 공조가 목표의 달성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필수적이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UN Task Team, 2013: 20).

또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Tier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지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지표의 개발상황과 파일럿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지표 구성이 변할 수 있다. 단순히 Tier 내의 이동뿐 아니라, 문안의 수정이나 대체 지표로의 교체, 삭제 또는 지표의 추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IAEG-SDGs가 대대적인 중간점검과 지표변경을 예고하고 있는 2020년까지 SDGs 지표는 유기체와 같은 다이내믹을 보여주며 변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지표의 구성

3차 회의 이후 확정된 230개 지표는 실제 세부목표별로 제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총 241개였다. 이렇게 확정된 230개의 지표는 크게 3개의 Tier로 분류되어 있다.

8) 관련한 자세한 공개자문 활동 내역은 <http://unstats.un.org/sdgs/iaeg-sdgs> 중 Activities의 각 단계별 활동 자료 참조.

〈표 II-3〉 지표의 Tier 체계구분

	분류기준
Tier I	개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있으며, 데이터가 모든 지역에 있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지표
Tier II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은 있으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지표
Tier III	국제적으로 정립된 방법론이나 기준이 아직 없으나,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될 예정, 또는 지표가 테스트되고 있거나 될 예정인 지표

출처: Agenda Item 8 at the 5th Meeting of the IAEG-SDGs. (IAEG-SDGs, 2017a)

Tier 시스템 상에서 3차 회의 지표는 전체 241개 지표 중 81개의 Tier I, 57개의 Tier II, 88개의 Tier III, 4개의 다중 및 미정으로, Tier I이 전체 지표의 32.5%에 불과하다. 또한 예를 들어 목표 12의 경우 13개의 지표 중 12.4.1만이 유일하게 Tier I에 해당하고 상당수의 지표가 2020년이나 되어야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MDGs에서부터 유지되어온 보건, 교육 부문의 지표들은 Tier I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표의 최종 초안으로 발표된 230개의 셋트는 목표들 간에도 큰 격차를 보여 미완성의 지표 체계라는 시각과 함께 목표들의 국제적 비교 및 이행점검을 위한 데이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에 직면하기도 했다(김지현, 2016a; 김수진, 2016).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1) Tier III 지표 개발계획

2016년 7월 Tier 체계를 완성한 이후 IAEG-SDGs는 데이터 수집과 생성의 주체가 되는 데이터 담당기관(Custodian Agencies)이 제안한 Tier III 방법론 관련 개발계획을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5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지표들은 총 12개⁹⁾의 2020년

9) 6.6.1/ 8.b.1/ 11.b.1/ 11.b.2/ 12.4.2/ 13.a.1/ 14.2.1/ 14.6.1/ 15.8.1/ 15.9.1/ 17.18.1/ 17.18.2

까지 완성 목표인 Tier III지표(Tier III indicators with a 2020 target deadline)이다(Agenda Items 5 at the 5th Meeting of the IAEG-SDGs).

2) 기존 지표의 개선과 수정

이후 1.a.3과 3.b.3이 추가되고 11.b.2 지표가 1.5.4 지표로 반복되면서 2017년 10월 현재 232개 지표(실제 244개)로 구성되어있다. 1.a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수단 세부목표이다. 2016년까지 지표초안에는 [1.a.1 정부가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한 자원의 비율]과 [1.a.2 핵심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더해 [1.a.3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배정한 전체 무상원조 및 부채를 유발하지 않는 외부자금 유입액 전체의 GDP 대비 비중]이 추가되고, 1.a.1 내용에서 “국내동원(domestically generated)”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는 1.a.1 빈곤감소를 위한 국내재원동원, 1.a.2 빈곤감소를 위한 정부지출노력, 1.a.3 개도국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개발재원 논의와 지표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행수단 지표의 기능에 충실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추가된 또 다른 지표는 [3.b.3 지속가능하게 필수약품 세트가 저렴하고 상시 활용가능하게 구비되어있는 보건시설의 비중]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이행수단 지표로서 3.b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표 [3.b.1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과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ODA 총액]에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3.b.1도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든 백신의 접종 타겟 인구의 비중으로 변경하였다. 즉,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a. 수혜자, b. 국제사회의 지원, c. 보건시설 내 의약품 확보로 나누어 여러 관점을 담고 있는 세부목표의 지표를 개별화함으로써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a.1과 3.b.1의 예와 같이 지표 간 관계정립 또는 세부목표의 내용을 구체화, 또는 단순 오류교정을 위해 5차 회의에서는 총 33개의 지표가

2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변경되었다. <표 II-4>는 세부목표와 지표 간 조정의 결과로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진 12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1.a.1-1.a.3, 3.b.1-3.b.3과 같이 지표범위 조정과 세부목표 반영을 위한 추가지표 삼입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내용상 거의 유사하고 Tier I인 2.b.2만 유지하고 2.b.1은 삭제예정인 되는 등 지표와 세부목표 상, 또 지표 간 지향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4> 지표 개선 결과

	E/CN.3/2017/12 결정
1.a.1 정부가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한 자원의 비율	1.a.1 정부가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한 국내동원 자원의 비중
신규	1.a.3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배정한 전체 무상원조 및 부채를 유발하지 않는 외부자금 유입액 전체의 GDP 대비 비중
2.b.1 농업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	삭제예정 (2.b.2만 유지)
3.8.2 인구 1,000명당 의료보험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보장받는 인구 수	3.8.2 전체 가구 지출 또는 소득 대비 보건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의 비율
3.b.1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3.b.1 국가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백신이 적용되는 목표 인구의 비중
신규	3.b.3 지속가능하게 필수약품 세트가 저렴하고 상시 활용가능하게 구비되어있는 보건시설의 비중
5.6.2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수	5.6.2 15세 이상 남녀 모두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해 평등하고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과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7.a.1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7.a.1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사회의 개도국지원액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문안과 국내법에 기반한 노동권(단체교섭과 교섭단체구성 자유 등) 국내준수 수준
8.9.2 성별 전체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으로서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 증가율	8.9.2 전체 관광관련 일자리 중 지속가능관광 산업 일자리 비중

	E/CN.3/2017/12 결정
8.b.1 국가예산과 GDP에서 전체 사회보고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부지출 비율	8.b.1 국가고용전략의 부분 또는 독립된 전략으로서 청년고용을 위해 개발되고 운영되는 국가 전략의 존재유무
16.4.2 국제기준 및 법적 근거따라 보고되고 관리되고 있는 압류 소화기(small arms) 및 경화기 (light weapons)	16.4.2 국제 기준에 따라 관할기관이 추적해왔거나 수립한 기준에 따른 유통 및 활용과정이 불법인 점유,발견,압수된 무기의 비중

* 굵은 글씨는 변경된 부분

출처: UN(2016)

특히 7.a.1, 8.9.2, 8.b.1등은 기존 지표 보다 세부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인구, 계층, 분야 등을 구체화하여 지표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7.a.1은 녹색기후기금(GCF)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액을 지표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 목표 7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초점을 둔 7.a의 목적을 살려 청정에너지 R&D 투자액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8.9.2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 세부목표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관광산업 일자리의 성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지표보다 전체 관광산업에서 일자리 기준 지속가능관광산업을 분류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샌다이 프레임워크와 연동과정에서 지표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샌다이 프레임워크와 국가전략, 국가 전략과 지방정부의 전략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지표의 개선 이라기보다는 지표를 구체화함으로써 Tier II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그 개발 범위를 압축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의 결과로 야기되는(attributed to disaster) 개념을 포함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실과 피해 외에도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2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표 II-5〉 센다이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개선 결과

기존 지표	E/CN.3/2017/12 결정
1.5.1 100,000명당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1.5.1 100,000명당 사망, 실종자 및 재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구 수 (11.5.1과 13.1.1 반복)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5.3 국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위험경감 전략 보유국 수	1.5.3 『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 』에 따라 국가 재난위험경감 전략 보유국 수 (11.b.1과 13.1.2 반복)
신규	1.5.4 국가재난위험경감전략 에 따라 지역재난 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11.b.2과 13.1.3 반복)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5.2 재난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주요 인프라에 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 의 수

* 굵은 글씨는 변경된 부분

출처: UN(2016)

지표의 개선이 세부목표와의 관계나 지표 간의 관계 정리를 통해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와 동시에 기존 지표의 오류 (editorial change)를 바로잡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정정과 함께, 지표 데이터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지표의 개선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표 II-6> 참조).

〈표 II-6〉 지표 오류 개선결과

기존 지표	E/CN.3/2017/12 결정
3.3.2 인구1,000명당 결핵발생률	3.3.2 인구 100,000 명당 결핵발생률
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 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 비율(백분율)	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 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 비율

기존 지표	E/CN.3/2017/12 결정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5.5.1 (a)의회와 (b)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7.b.1 GDP의 비율(백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 개발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 투자 규모	7.b.1 GDP의 비중 으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 개발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규모
8.10.1 성인 100,000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 수	8.10.1 (a) 성인 100,000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b) 성인 100,000명당 ATM 수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간 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10.2.1 연령별, 성별, 장애여부 별 중간 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순서 변경)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이내(within)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reporting) 인구의 비율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동안 내(in) 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reporting) 인구의 비율
13.a.1 2020년까지 1000억달러 동원	13.a.1 2020년에서 2025년까지 1000억달러 동원
14.7.1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에서 지속가능어업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	14.7.1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에서 지속가능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16.6.2 가장 최근 이용했던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the) 인구비율	16.6.2 가장 최근 이용했던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인구비율 (←the 탈락)

* 굵은 글씨는 변경된 부분

출처: UN(2016)

백분율을 비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표들 사이의 통일성도 원인이지만, 예를 들어 1% 미만의 값들 간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상이한 단위 간 비교가 필요할 경우 비중이 백분율에 비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안에 대한 재검토는 지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Tier 재분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Tier 재분류

3차 회의 직후 Tier III 지표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Tier 재분류에

2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대한 요청이 이어지면서 재분류의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Agenda Items 5 at the 5th Meeting of the IAEG-SDGs). IAEG-SDGs는 데이터가 모든 지역에서 최소 50%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경우 Tier II를 Tier I으로 재분류하고, Tier III가 Tier II로 재분류 되는 것은 ① 국가통계시스템들의 방법론 개발참여 방식, ② 방법론이 국제적 기준이 되는 시기와 방법 및 승인의 주체, ③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파일럿 연구 결과 공유, ④ 메타데이터 초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용상 변경이 없는 지표에 대해 5차 회의를 통해 Tier 간 이동 결정을 Fast Track을 통해 방법론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표 II-7〉 Fast Track 지표 제안과 결과

지표	IAEG-SDGs의 결정 결과
2.c.1 식량가격 이상지표	Tier III→Tier II(주무기관 요청 승인)
3.8.1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보건,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보건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 을 포함한 추적 개입interventions 에 기반한 핵심 서비스의 평균 보급률로 정의되는) 기초보건서비스의 보급률	Tier III 유지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데이터 통합관련 추가 작업 필요)
5.a.1 (a) 성별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 (토지권 종류별)	Tier III→Tier II(주무기관 요청 승인)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Tier III→Tier II(주무기관 요청 승인)
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사용 효율 변화	Tier III 유지(용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요청)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가진 초국적 유역비율	Tier III→Tier II(주무기관 요청 승인)
9.3.1 전체 산업부가가치 중 중소기업들의 비율	Tier III 유지(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한 추가 작업 필요)
9.3.2 용자가 있거나 여신한도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율	
10.5.1 금융건전성지수	Tier III 유지(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데이터 통합관련 추가 작업 필요)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Tier III 유지(5월 종료예정인 메타데이터 및 8월 종료예정인 파일럿 연구 결과 공유 요청)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 되어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Tier III 유지(방법론 개발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파일럿연구 결과 공유요청)

지표	IAEG-SDGs의 결정 결과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Tier III 유지(메타데이터와 함께 방법론 개발이 IAEG-SDGs 가을회의에서 검토예정)

출처: Agenda Items 5 at the 5th Meeting of the IAEG-SDGs (IAEG-SDGs, 2017a)

Fast Track은 데이터 담당기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검토 후 Tier를 재분류하는 제도로 5차 회의를 통해 총 11개의 지표가 Tier 재분류 대상이었으나, 4개 지표가 Tier II로 분류되고, 나머지 7개 지표는 표 4의 결정 내용과 같이 Tier III을 유지하게 되었다.

앞서 변경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최종 지표의 Tier 구성은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er III가 줄어들어 약 34% (3차회의 결과 38%)에서 줄어들기는 했으나, Tier I지표 중 일부가 II로 분류되고, 새로 추가된 지표들에 대한 분류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미정 및 다중이 늘어나, Tier 비중은 아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대와는 달리 Tier III의 개발로 인한 구성 변화가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표 II-8> 목표별 지표의 Tier 구성

	Tier I	Tier II	Tier III	미정/다중
목표 1	2	7	4	1
목표 2	8	5	1	
목표 3	13	10	3	1
목표 4	3	4	2	2
목표 5	2	7	4	1
목표 6	4	3	4	
목표 7	4	0	2	
목표 8	9	4	4	
목표 9	8	1	3	
목표 10	4	0	6	1

2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Tier I	Tier II	Tier III	미정/다중
목표 11	2	6	7	
목표 12	1	1	11	
목표 13	0	2	5	
목표 14	2	0	8	
목표 15	2	7	3	2
목표 16	6	9	8	
목표 17	15	2	8	
합계	85 (35%)	68 (28%)	83 (34%)	8 (3%)

* (%)는 반올림으로 총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출처: UN(2016)반영하여 저자 재구성

4) 추가 지표에 대한 종합검토 계획

IAEG-SDGs 회원들은 현재 33개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37개 지표에 대해 공개 자문을 포함하여 추가여부를 2017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표 II-9〉 추가 검토 지표

세부목표	추가 검토되고 있는 지표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관련 국제협력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재생산 가능연령 여성의 빈혈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 기술 개발과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증대	민간투자 관련 요인

II. 이론적 배경 ●●● 27

세부목표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지표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축하고 정신 건강 및 복리 증진	개인의 우울증 치료범위
3.5 마약 남용과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정신활성물질남용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사망과 상해 건수 반감(半減)	도로교통사고 부상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 물· 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축	가구 및 주변 공기오염으로 인한 병 (illness)
	안전하지 않은 물과 위생시설에 기인한 병
	비의도적인 독성에 의한 병
3.b 주로 개도국에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 제공	의료연구와 기초보건분야에 대한 민간 및 비영리투자
3.c 보건재원 및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내 보건인력의 고용, 계발, 훈련 및 보유를 상당히 증대	보건 인력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는 무상이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어린이의 수
	법으로 보장된 무상의무교육 헛수
4.b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 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대	민간재원을 포함한 ODA 이외의 추가 장학금 자원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 사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대하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 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	물 스트레스 또는 물부족을 경험한 사람 수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전기 구매력

2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세부목표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지표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추가요소
8.7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	강제노동의 출현율(prevalence)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지속가능관광 계획/프로그램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히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에서는 동 비율을 두 배 증대	산업화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표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정치적 포용성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평등성 및 반차별을 강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10.4 특히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등의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경제적 불평등성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	이민자에 발생하는 사망, 부상 및 범죄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유해폐기물관련 법적합의와 개별 합의에 관한 국가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 시키도록 장려	지속가능한 실행여부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효과적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세부목표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지표
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증식시키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	지속가능한 어업, 농업, 관광 및 기타 해안/해양 자원 사용의 경제적 영향
15.a 생물다양성·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 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상당히 증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로를 위한 민간재원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상이한 공공기관 간 신뢰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	기타 근본적인 자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형태의 지역·국제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	국제 R&D 총액
17.18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을 강화	STI와 통신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	GDP를 대체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지표

출처: UN(2016)

현재의 지표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 지표 중 Tier III으로 대변되는 미완성의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추가하려는 노력은 ㉠ 세부목표 상 내용의 구체화(예: 2.2, 3.5, 3.9 등), ㉡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의 해석상 확대(예: 10.4, 7.1, 8.10)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표 9의 지표들에 대해 IAEG-SDGs는 지표를 ㉠ 지표가 세부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추가지표가 세부목표의 모든 영역들을 포괄하기 위해 필요한가, ㉢ 새로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가, ㉣ Tier III에 대한 방법론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기대했던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하였는가, ㉤ 지표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변경 및 삭제들의 의견을 2018년 가을 회의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 말까지 1회 이상의 공개자문이 개최되고, 2019년 중순까지 변경과 삭제에 관한 공개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9월까지 모든 자문과 회의내용을 검토한 이후 IAEG-SDGs의 최종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1) 성평등 지표의 범위

성평등 지표에 대한 정의는 크게 독립목표로서 목표 5에 포함되어있는 지표들과 기타 크로스커팅이슈로서 젠더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MDGs 이행과정에서 간과했던 다양한 젠더 이슈들을 담아내기 위해 목표 5의 지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기타 목표의 데이터 성별세분화를 통해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까지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볼 것인지, 데이터를 성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성평등 관련 지표를 정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UN Women(2017)은 성평등 관련지표의 범위를 목표 5의 지표와 함께 성, 젠더, 여성, 소녀를 구체적으로(specifically) 또는 넓게 보아(largely)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로 정의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4개의 목표 5 지표를 포함하여 총 53개 지표를 성평등 관련 지표로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UNESCAP(2016)은 세부목표 3.2.1 5세 이하 영아사망률과 같이 성별(by sex) 또는 특정 여성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88개의 지표는 젠더와 성평등 관련 지표(gender

and gender-related indicators)로 구분하는 등 젠더 이슈와의 관련성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데이터 세분화와 관련한 성평등 지표의 구분은 IAEG-SDGs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는 모든 지표에 대한 성별세분화를 통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 원칙의 모니터링 목표를 생각하면 더욱 더 복잡해진다.

2) 성평등 지표와 세부목표

UN Women은 232개 지표 중 약 22%에 해당하는 52개의 지표를 젠더 관련 지표로 보았다(UN Women, 2017). 52개의 지표는 목표 6, 7, 9, 12, 14, 15, 17을 제외하고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성평등 관련 지표 해당사항이 없는 목표들은 물과 위생(6), 에너지(7), 인프라(9), 지속가능소비와 생산(12), 해양환경(14), 육상생태계(15), 파트너십(17)로 SDGs의 3대 축을 기준으로 보자면 경제발전과 환경관련 목표들에서 성평등 관련 지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각각 1개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량안보(2)와 기후변화(13)를 더하면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사회발전과 좀 더 관련 있는 목표들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면 MDGs 수립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회발전의 큰 축으로 젠더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UN Water의 성인지적 지표(gender-responsive indicators)를 보면 여전히 물과 위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영역으로 성평등 지표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생산요소와 산업화에 관한 목표인 목표 9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인구세분화가 없는 지표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타깃으로 하는 9.c의 지표인 기술별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인구 비율이나 모두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접근 확대를 타깃으로 하는 9.1의 지표인 교통수단별 승객 및 운송량(9.1.2)등은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여성의 역량과 서비스접근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과 위생에 관한 세부목표 6.2는 세부목표 자체에는 “여성과 소녀 및 취약 계층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표는

3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 등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6.2.1)’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지표상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녀의 학업성취율과 재학률이 학교의 화장실 시설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에 비추어보면 위생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인구세분화를 통한 성평등 관련 지표로서의 기능강화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 2.2와 지표 2.2.1, 2.2.2는 세부목표 6.2와 지표 6.2.1과 유사한 사례이나, 앞서 <표 II-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식가능 연령 여성의 빈혈에 대한 지표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의 ‘영양상의 필요’로 인식하고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2개의 SDGs 지표가 이미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는 세부목표를 압축적으로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성평등 관련 지표로 UN Women이 밝힌 52개의 지표 이외에도 추가되거나,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성인지적 접근을 해야 할 지표들을 발굴해, 이를 지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3) 성평등 지표의 Tier 현황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개 성평등 지표는 Tier I, II, III가 각각 9, 28, 16개로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성평등 목표인 목표 5의 경우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Tier III 지표도 가장 많고, 특히 목표 5의 경우는 Tier III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Tier II도 많아 지표의 완성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Ⅱ-10〉 목표별 성평등 관련 지표와 Tier 현황

	Tier I	Tier II	Tier III	다중/미정
목표 1	2 (1.1.1/1.2.1)	4 (1.2.2/1.3.1/1.4.2/1.5.1)	1 (1.b.1)	
목표 2	-	-	1 (2.3.2)	
목표 3	2 (3.1.2/3.7.1)	3 (3.1.1/3.3.1/3.7.2)	1 (3.8.1)	
목표 4	1 (4.2.2)	3 (4.3.1/4.6.1/4.a.1)	3 (4.1.1/4.2.1/4.7.1)	1 (4.1.1/4.5.1)
목표 5	2 (5.5.2/5.b.1)	9 (5.2.1/5.2.2/5.3.1/5.3.2/5.4.1 /5.6.1/5.a.1/5.a.2/5.c.1)	2 (5.1.1/5.6.2)	1 (5.5.1)
목표 8	1 (8.5.2)	4 (8.3.1/8.5.1/8.7.1/8.8.1)	1 (8.8.2)	
목표 10	-	-	1 (10.2.1)	
목표 11	-	1 (11.2.1)	2 (11.7.1/11.7.2)	
목표 13	-	-	1 (13.b.1)	
목표 16	1 (16.1.1)	4 (16.1.3/16.1.4/16.2.2/16.2.3)	3 (16.1.2/16.7.1/16.7.2)	
합계	9	28	16	2

* '17. Tier 변경 및 8.9.2 지표 변경 반영

출처: UN Women (2017), IAEG-SDGs(2017c)

성평등 관련 지표 중 Tier III지표들의 개발일정은 대부분 2017년 내에 방법론 관련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방법론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어 UNSC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파일럿 연구,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해서 2017년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20년 중간점검 이전까지는 모든 지표가 Tier I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일정이 아닐 수 없다.

3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또 지표 5.3.1, 5.3.2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 수집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Tier I에서 Tier II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수집 주기가 1-4년까지 다양해, 지표를 통해 글로벌 비교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ier III개발 일정과 함께 성평등 관련 지표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 세분화와 그 정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11월 6차 IAEG-SDGs 회의에서 시작된다. 준비문서에 따르면 'sex'에 대한 구분은 전통적인 구분방식인 남자와 여자(male and female)로 하고 젠더는 세분화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¹⁰⁾하고 있다(IAEG-SDGs, 2017b:5-6). 성별에 대한 구분과 함께 회원국 의견서에서는 스웨덴이 성별에 대한 세분화를 시작으로 남성에 대한 성차별, LGBT 이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련 NGO등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 세분화와 수집차원에서 기타 남자와 여자를 넘어 기타 소수 성정체성 이슈까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가. 거버넌스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SDGs이행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과정 및 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된 정책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노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990년

10) "We propose to focus on the dimension sex. Consequently gender w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disaggre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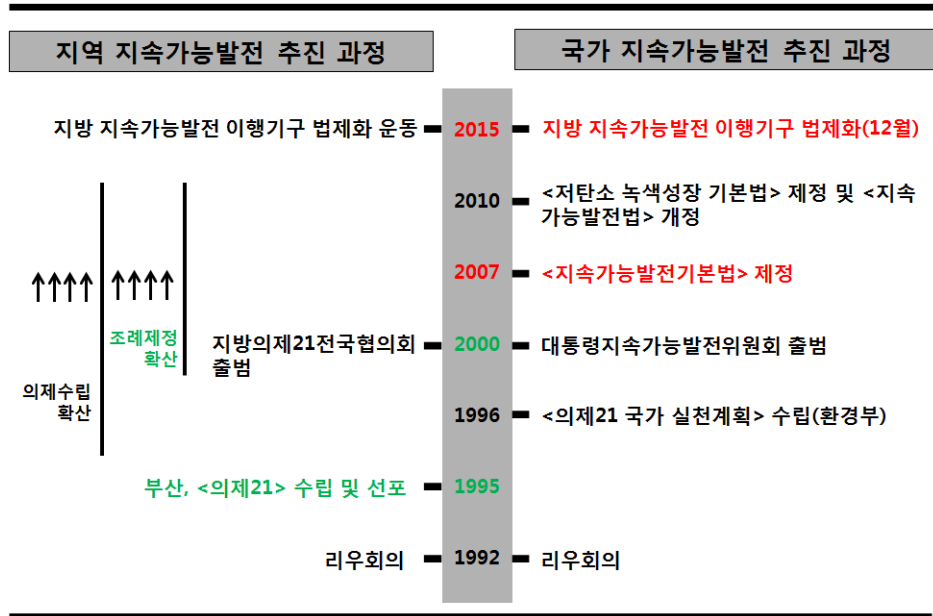
대에 이르러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¹¹⁾ 아울러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촉구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인 ‘의제 21(Agenda 21)’이 도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가 마련되었다(오수길 외, 2016: 13). ‘지방의제 21’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의제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다.¹²⁾ 이와 함께 국가차원에서는 1996년 환경부에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이 없는 보고서에 그쳤다(오수길 외, 2016: 14).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다.¹³⁾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 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며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오수길 외, 2016: 14). 이후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오수길 외, 2016: 14). 이러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II-1]과 같다.

11) 지속가능발전포털. 국내적 배경. <http://ncsd.go.kr/app/sub02/92.do> (접속일: 2017. 11. 22)

12) 지속가능발전포털. 지방의제. <http://ncsd.go.kr/app/sub03/24.do> (접속일: 2017.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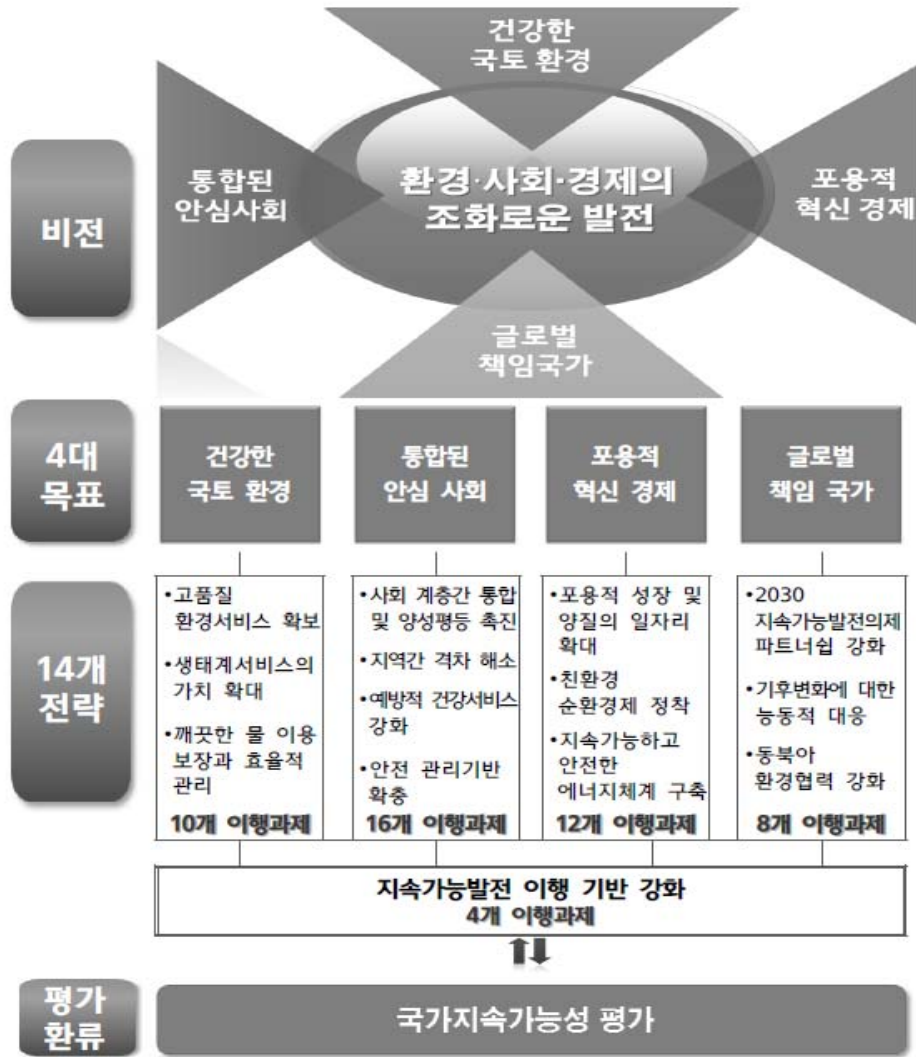
13) 지속가능발전포털. 국내적 배경. <http://ncsd.go.kr/app/sub02/92.do> (접속일: 2017. 11. 22)



출처: 오수길 외(2016: 14)

[그림 II-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

이러한 제도적 체계를 토대로 2011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추구한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조을생 외, 2014: 30). 2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포함한다(오수길 외, 2016: 14). 최근 2016년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채택하여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을 강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29). [그림 II-2]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의 4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14개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6, p. 30)

[그림 II-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 체계도

이상의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토대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3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마련하였다. 특히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위상 재정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오수길 외, 2016: 14).

나. 선행연구

현재 국내에서는 SDGs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초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SDGs가 최종 수립되기 이전인 Post-2015 논의 때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SDGs의 수립이 거의 확정된 2015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글로벌 SDGs 담론을 추적하는 연구는 주로 국가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책제언 및 이행 방안을 위한 연구는 학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환경, 보건, 젠더 등의 기관 해당 분야의 SDGs를 분석한 연구물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SDGs 아젠다의 글로벌 이행 연구, SDGs 국내이행 연구, SDGs의 지역차원 이행에 관한 연구, 통계·데이터 측면의 연구,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연구, SDGs 섹터 별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1) SDGs 아젠다의 글로벌 이행 연구

먼저 SDGs 아젠다를 글로벌 담론 측면에서 검토하고, UN내에서의 동 아젠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권을 외(2015)는 SDG 이행을 개발자원 측면에서 검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자원 수요와 주요 공여기관의 대응전략을 OECD, EU, G20, 세계은행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김지현(2016b)은 2016년 7월 개최된 UN 고위급정치포럼의 SDGs 이행과정을 SDGs 이행 후속조치 및 평가를 목적으로 수립된 HLPF의 수립과정과 2016년 첫 번째 SDGs 이행 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향후 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평가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SDGs는 아젠다 확정 및 지표 수립 과정이 참여적이고 다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표 수립에 관한 연구는 향후 SDGs의 이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원조 기관인 KOICA에서 주로 담당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2016b)의 연구에서는 SDGs 지표의 확정 시점을 맞이하여 지표의 수립과정과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지표의 구성과 내용, 특히 수립 과정에서의 내용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어서 향후 지표의 수정, Tier III 개발 계획, 그리고 지표 수립을 담당하는 IAEG-SDGs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지현(2016b)은 또한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관련 이슈들을 2030의제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을 중심으로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김수진(2016)은 2016년 3월 공개된 IAEG-SDGs 보고서에서 제시된 Tier I 지표들을 대상으로 실제 제시된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data accessibility), 그리고 193개 UN 회원국 전체 중 얼마나 많은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country coverage),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데이터 이용가능 연수는 얼마나 충분한지(data frequency) 등을 살펴봄으로써 Tier II, Tier III 지표들에 비해 가장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Tier I 지표들의 실체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2) SDGs 국내이행 연구

다음으로는 SDGs 국내 이행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조을생 외(2014)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논의 동향, 환경 관련 SDGs 의제를 중심으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논의에서의 주요국의 입장 등을 분석하여 SDGs 수립에 대한 대응전략 및 향후 SDGs 도입 시 국내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4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하였다. 강상인(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이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계획 내로 주류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차,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시행중인 SDGs와 연관된 국내 유관 계획들을 경제, 환경, 사회부문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유관계획 내로의 주류화 방안 마련을 위해 SDGs 169개 세부 이행과제와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84개 세부과제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SDGs 목표 대비 이행과제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발전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적어 향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이행과제 선정 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타 유관계획과의 연관관계 분석에서도 SDGs 목표 5, 목표 16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부문의 보완이 요구되며, 모니터링 및 이행지표와 관련해서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s 검토지표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통해 질적인 부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김태균 외(2016)는 SDGs 국내 이행목표와 기존 정부부처별 시행정책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SDGs의 실질적 국내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단위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 개편과 지역별 활동 협의체와의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박치성과 이영범(2017)은 그들의 연구에서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들이 SDGs 이행을 위해 ODA정책 및 전략 방향을 수정하고, 정부 체계 개편을 단행하였음을 소개하며 한국의 SDGs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을 연구하여, 우리 정부의 ODA 조직 및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균 외(2016)는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SDGs 이행 정책수립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간 긴밀한 종합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총체적 사회적 컨센서스(social consensus)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 연구는 SDGs 목표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5P를 국내이행의 범분야 의제로 채택하여 각 의제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 이슈를 우선 과제로 상정하였다.

3) SDGs의 지방차원 이행에 관한 연구

국내 이행에 있어서 지방 차원에서의 이행에 관한 연구 또한 국가차원의 이행 연구와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수길(2016)의 연구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및 과제 및 활성화 활동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였다(오수길, 2016). 고재경과 주정현(2014)은 경기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경기도는 우리나라 지방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거점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을 지적하며, 기존의 지표 개발 논의를 토대로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이행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SDGs 이행을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 지표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박지연 외, 2016). 박지연 외(2016)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 SDGs 이행 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북한개발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새롭게 추가된 하위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박지연 외, 2016).

4) 통계, 데이터 측면의 연구

SDGs에서는 통계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김찬유(2015)는 국제 사회에서의 Post-2015 논의에서 등장한 데이터 혁명을 소개하고, SDGs를 위한 데이터 혁명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분석한 후, 한국의 체계적인 원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과 개도국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

4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소(2016a)는 SDGs를 소개하고, SDGs가 학계, 정부 및 업계의 통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를 고찰한 후, 실질적으로 SDGs 각 세부 목표와 지표의 측정을 위해 지표 별 국내가용 통계를 제시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이다.

진재현(2017)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향의 연구에서, 유엔 SDGs의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SDGs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통계와 정보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세분화되고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5)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연구

박영실(2016)은 그의 연구에서 SDGs 발표 이후 후속조치 및 평가 부문에 주목하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의 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이론적 검토, SDGs 국내이행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SDGs 이행을 위한 통계지표의 구성과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지표연구 뿐 아니라 국내이행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6) SDGs 섹터 별 연구

다음으로는 환경, 보건, 젠더, 경제산업, 자원, 토지 등의 SDGs 관련 섹터 별 연구가 존재한다. 김성규 외(2016)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SDGs에서의 경제산업 부문을 특화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SDGs 인식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어서 경제성장 일자리 목표인 SDG 8번, 그리고 인프라 및 산업화 목표인 SDG 9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강상인(2015)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와 2012년 리우 +20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2015년까지의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이어 SDGs의 의제, 분석틀, 구조를 살펴보고, 글로벌 이행 전략과 국내 거버넌스 준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SDGs가 국가 계획 내에 어떻게 주류화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홍은경(2016)은 SDGs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환경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서의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인 묘사, 이행수단과 목표의 혼합제시, 다른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Tier II 및 III 분포 등을 지적하였다.

이수형(2016)은 그의 연구에서 SDGs 보건의료 부문 의제의 세부 목표와 주요 내용, 이어 세부 목표의 국내 현황 부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SDSN)가 제시한 국제 지표와 보완적 국내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보건 분야 국가 전략인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 목표, 지표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SDGs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 전략을 모색하였다. 고경환 외(2016)에서는 보건 복지분야의 지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계의 출처 및 정확성을 확인하고,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였다.

김은경 외(2014)는 post-2015 아젠다에서의 젠더 이슈를 UN Women이 제시한 3가지 틀로 분석하고 OWG를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의 추이를 추적하였다. 특히 북경행동강령부터 이어진 여성주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post-2015 관련 젠더 이슈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혜숙(2015)은 자원순환분야에서 SDGs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분야에서 SDGs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명수정(2016)은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토지’ 및 ‘토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아홉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7) 소결

아직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추진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이행을 위한 논의의 기초와 지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김은경 외(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의 기본적 번역에 있어서부터 이러한 관점이 미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부목표와 지표들은 1975년 이후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1995년 북경행동강령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40여 년간의 글로벌 여성인권 운동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각 목표와 지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SDGs의 성평등 목표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부터는 독자목표 5번과 성평등이 크로스커팅된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이어서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현재 국내 가용통계와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47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5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	62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71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77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84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95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99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102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SDGs 내 성평등 지표 수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MDGs 목표로 서 젠더 이슈에 대한 접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SDGs가 MDGs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으로 보편성, 변혁성, 포용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포용성과 보편성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의 원칙에 투영되어 SDGs 달성과 평등성의 확보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SDGs의 달성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그간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상징성을 볼 때, 성평등에 대한 고려는 SDGs 달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

MDGs 내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인 목표 3번의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평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성 격차에만 중점을 두었다. 또한 목표 1번(기아), 2번(교육), 4번(아동사망률), 5번(모성사망률)에 각각 크로스커팅되었다. 그러나 MDGs의 성평등 이슈는 모성보건, 성평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Barton, 2005). 또 김은경 외(2014: 27-28)에서는 MDGs 분야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젠더 의제들을 구분하면서 여성의 물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의료접근성, 의사결정 권한 등 관련 목표 내에서 젠더가 다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Ⅲ-1〉 SDGs 독립목표로서 성평등 세부목표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4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 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5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보건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출처: 김지현(2015)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되,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진이 다소 수정함. 지표까지 포함하는 최종 번역본은 본 연구의 부록으로 수록됨.

MDGs의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Post 2015 논의에서는 향후 수립 될 새로운 개발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달성을 위한 구조적 방해물을 해결하는 전환적인(transformative)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UN Women 2013: 2). 여기서 ‘전환적’이라 함은, 기존의 젠더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젠더 관계를 지지하는 구조가 변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UN Women 2013: 2).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성과 소녀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남성과 소년과 동등 하게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양한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여성 자신의 삶과 역할을 규정짓는 사적, 공적 영역에서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UN Women 2013: 3).

이를 위해 새로운 post 2015의 프레임워크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기존 국제사회의 노력(commitment)에 기반할 것을 요청되었다(UN Women, 2013: 2).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국제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정책적 약속인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ICPD, 1994),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와 여기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리우 20 회의(1994), MDGs 그리고 CSW에서 논의되고 이행되는 이슈들이 포함된다.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49

이러한 시각 하에, SDGs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진입하였다. 독자목표 5번은 총 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14개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MDGs 독자목표 3번 세부목표의 내용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해소에 한정되었던 반면, SDGs 5번 세부목표에서는 여성성기절제 등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 성평등을 위한 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역량강화, 재생산 건강과 자기결정권,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모든 세부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철폐와 권리적 접근이 도입되었다. 또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10개 목표에 포함됨으로써, SDGs의 보다 넓은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실현하였고 이는 보다 통합적인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Ⅲ-2〉 목표 5 지표의 초안과 확정지표

2015년 제안된 지표	최종 확정 지표
5.1.1 CEDAW 협약에 명시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법과 구조 철폐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5.1.2 여성과 여아에 대한 상속권 차별 철폐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던 15-49세 여성과 여자청소년 중에서 현재 또는 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5.2.2 15-49세 여성과 여자 청소년 중에서 15세 이후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5.3.1 20-24세의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동거관계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예: 아동 결혼)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여성 중 FGM/C (여성성기절제)를 겪은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 (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5.4.1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사용된 주간 평균 시간(5세이상 인구)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5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2015년 제안된 지표	최종 확정 지표
5.4.2 15분 이내의 거리에 식수원을 가진 가구의 비율	
5.5.1 지역 정부/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5.5.2 가내 물건 구입 시, 자신의 건강문제 관련 또는 친척 방문 등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	5.5.2 여성 관리직 비율
5.6.1 성별, 지역별, 소득별, 장애여부 또는 개별 국가에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특성이 반영된 여성과 여아계층이 자신의 성정, 재생산 권리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한 비율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 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과 여자 청소년에게 그들의 성정, 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시해야 할 법과 규정의 존재유무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5.a.1 성인 중 땅을 소유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 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5.a.2 공식적인 금융기관 통장을 보유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비율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5.b.1 휴대폰을 보유한 인구의 성별 비율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5.b.2 다양한 ICT 기술보유 능력 관련 성별 비율	
5.c.1 성평등달성을 위한 정책여부와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5.c.2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배분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의 비율	

출처: 정금나(2014)와 김지현(2015)을 참조하여 연구진 번역으로 재구성

본 장에서는 이러한 SDGs 성평등 목표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심도있게 해석하고, 각 지표에 대한 국내 가용 통계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가. 세부목표의 의미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공적, 사적영역(정치, 교육, 보건, 고용, 등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SDGs의 세부목표들이 그동안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논의에 의거한 산물임을 상기할 때, 이 목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부목표는 후술될 세부목표들을 아우르는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법 자체가 차별적일 수도 있으며, 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차별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이 여성과 남성에게서 각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UN Women, 2015a: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부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나. 지표 분석

1)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¹⁴⁾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1.1.은 1)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반차별(non-discrimination)을 증진할 국내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2) 해당 법의 실행을 ‘강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를 측정한다(UNSD, 2016a: 2). 북경행동강령 20주년 검토와 CEDAW 위원회에 의하면, 본 지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국내법은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여성의 노동 제한(work prohibitions), 육아 휴직(family leave), 상속/재산, 국적, 결혼 및 이혼,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할당제, 연금 및 법적 역량(legal capacity)등을 포함하는 법령이다(UNSD, 2016a: 2)¹⁵⁾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라는 세부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양성평등 관련 법 존재의 여부(유무)를 설정한 이유는, 차별적인 법을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UNSD, 2016a: 2). 5.1 지표가 법의 유무를 측정한다면, 목표 5번 내 지표들과, 기타 세부목표 하의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세부목표인 5.2에서는 폭력피해자율 등의 실제 “결과(results)”를 측정한다. 따라서 5.1에서는 다양한 양성평등 관련

14) UN Women 작성, UNSD 2016a에서 인용.

15) 2016년 3월 현재 UN Women은 다음의 여러 활동을 통해 본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 (i) 해당 국내법과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한 컨셉 페이지,
- (ii) 2016년 상반기에 전문가집단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개최하여 이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분야 제안 및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위한 향후 진행 방향
- (iii) 방법론을 2017년 1/4분기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IAEG-SDGs) 회의에서 발표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53

법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목표 5내의 다른 지표들과 젠더가 크로스 커팅된 다른 목표들에서는 그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5.1과 나머지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UNSD, 2016a: 3).

그러나 지표 5.1.1이 양성평등 관련법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본 지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국가의 헌법과 가족법, 이혼관련 법, 형법, 국적법, 상속관련 법, 토지소유법 등에서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UNSD, 2016a: 4).

5.1.1은 Tier III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UN Women, World Bank, OCED 개발센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등이 함께 논의 중이다(IAEG-SDGs, 2017c). 양성평등 관련 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에는 세계은행의 여성기업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 데이터베이스와 OECD의 사회제도 및 젠더 인덱스(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SIGI)가 있다.

나) 가용 통계 및 국내현황

“지표: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여부”의 국내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우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11조 제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Ⅲ-3〉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접속일: 2017. 9.15)

5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동 부처의 소관 법률 중 이와 관련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표 Ⅲ-4〉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

분류	법명
여성(양성평등)정책 (3)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전부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6. 5. 제정)
가족정책 (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2. 8. 제정) 건강가정기본법(2004.2. 9.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1989. 4. 1. 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3.24.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 아이돌봄지원법(2012. 2. 1. 제정)
권익증진정책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3. 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1997.12.31. 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출처: 여성가족부 법령현황,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29.do (접속일: 2017. 9.15)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제정) 역시 성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동 법은 제1조에서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으로 명시하고 이다. 이에 제2조 3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성별 차별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다.

〈표 Ⅲ-5〉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평등권 침해의 차별 조항

제2종(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접속일: 2017. 9.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21. 제정)은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 「국민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해당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명문화하고 있다.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가. 세부목표의 의의

세부목표 5.2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공동의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UN Women, 2015a: 14; 이선주 외, 2010: iv). 예를 들어, 전 세계의 35%의 여성이 일생에 한번 이상 파트너 혹은 제3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5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나타났다(WHO, 2013: 2), 또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약 1.2억 명의 여아가 인생에서 한번 이상의 성경험 혹은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이는 전 세계 10명당 약 1명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다(UNICEF, 2014: 167). 이러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ICPD Programme of Action)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여성폭력에 대한 의제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북경행동강령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심각한 차별행위임을 천명한 바 있다(김은경 외, 2014: 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슈가 포함되지 않아 여성의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이슈를 조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김은경 외, 2014). SDGs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반영되어 여성의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이슈 중 하나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가 SDGs 세부목표 5.2로 포함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의 빈도 및 현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5.2.1과 5.2.2의 지표가 설정되었다(UN Women, 2015a: 14). 또한 이 지표는 뒤에 언급될 크로스커팅 목표 16(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지표 16.1과 16.2와도 연계되어 분석될 수 있다.

나. 지표 분석

1) 지표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2.1은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의 소녀 비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는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¹⁶⁾)로부터 경험하는 육체적, 성적, 심리적 형태의 폭력을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에 대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여성 역시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인구통계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의 경우, 15-49세 사이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49세 이상의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UN Women, 2015a: 15).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2.1은 Tier II로 분류되며,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UN Women, UN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유엔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등이 함께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 5.2.1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국내통계는 부재하나, 대치 가능한 통계로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데이트 폭력피해실태 조사>가 있다. 먼저,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유배우자(사실혼 포함)

16) 영문의 'intimate partner'를 직역하면 '친밀한 파트너'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성적 파트너'로 번역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이는 가정 내의 부부뿐만 아니라, 법적 관계로 묶이지 않은 데이트 상대 등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가정폭력 실태는 지난 1년간 유형별 폭력 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조사된다.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동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은 12.1%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피해 3.3%, 정서적 폭력 10.5%,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이다. 여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9.1%인 반면, 남성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은 8.6%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피해는 1.6%, 정서적 폭력 7.7%,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3%이다.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11.6%이다.

〈표 Ⅲ-6〉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단위: %)

구 분		부부 폭력률 (1)	부부 폭력률 (2)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계
여성 응답	비율	14.5	41.1	4.3	12.7	3.1	2.5	36.7
피해	비율	12.1	34.4	3.3	10.5	2.4	2.3	29.7
가해	비율	9.1	33.1	1.9	8.4	1.1	0.3	29.8
상호폭력	비율	6.5	25.1	0.9	6.2	0.3	0.1	22.8
남성 응답	비율	13.6	42.0	3.1	12.3	1.9	2.0	38.7
피해	비율	8.6	33.3	1.6	7.7	0.8	0.3	30.4
가해	비율	11.6	35.6	2.1	10.5	1.5	1.8	31.8
상호폭력	비율	6.2	25.3	0.6	5.9	0.4	0.1	23.5

- 주: 1)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 기준
 2)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된 값임
 3) 부부폭력률(1)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
 4) 부부폭력률(2)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계 행위를 포함
 5) 원출처의 상대적 표준오차 값은 가독성을 위해 삭제하였음.

출처: 이인선 외(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50쪽.

두 번째로 대치 가능한 통계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년에 발표한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59

<데이트 폭력 피해실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표 Ⅲ-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실태조사의 분석에 포함된 성인 여성 1,017명 중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네 가지 유형(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폭력유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동 조사에서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통제를 경험한 비율은 62.6%로 상대방의 인간관계나 생활, 옷차림 등 일상 전반에 대한 통제가 일종의 데이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7〉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유형	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비율	62.6%	45.9%	18.5%	48.8%
빈도수	637	467	188	496

출처: <http://hotline25.tistory.com/414> [한국여성의전화] (접속일 2017. 12. 19.)

이와 같이 국내에는 지표 5.2.1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데이트 폭력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여성이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나, 동거상태가 아닌 비동거 상태의 성적 파트너에게 당한 폭력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이 만 18세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녀가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표 5.2.1의 국내 이행과 SDGs 국가 보고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계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6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2) 지표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2.1이 성적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을 측정한다면, 5.2.2는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을 조사한다. 이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15세 미만의 소녀 역시 성적 착취와 폭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는 방법론적, 윤리적 측면에서 별도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UN Women, 2015a: 15).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2.2는 Tier II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UNICEF, UN Women, UNFPA, WHO, UNODC, UNSD, UNDP 등이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 5.2.2에 관한 국내 가용 가능한 통계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2015년 8월~2016년 7월) 동안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은 여성의 경우, 1.5%가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세지 등을 통한 성폭력은 4.0%, 몰래카메라를 통한 성폭력 피해는 0.1, 스토킹을 통한 성폭력 피해는 0.3%, 성기노출을 통한 성폭력은 1.6%, 성희롱은 0.5%의 여성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표 III-8>에 제시된 것 같이 남성의 경우 0.1%가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1.5%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구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세지 등	몰래 카메라	스토킹	성기 노출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합계					
전체	0.8	0.0	0.0	0.0	0.8	5.5	0.1	0.1	1.0	0.5
여성	1.5	0.0	0.0	0.0	1.5	4.0	0.1	0.3	1.6	0.9
남성	0.1	-	-	-	0.1	7.0	-	-	0.4	0.1

주 1) 백분율은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3) 성폭력 피해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 강간 미수: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강간: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세지 등: PC, 핸드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은 행위(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 문자, 메일 제외)
- 몰래카메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스톱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성희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 36.

6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나, 신체적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경우 성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여성과 15세 이상 소녀의 연령별 성범죄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자료의 ‘범죄피해자의 신체 피해상황’과 ‘범죄피해자’의 성별 통계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피해자 수와 강력범죄(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518). 그러나 이 역시 정신적 폭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SDGs 지표 5.2.2의 국내 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UNSD, 2016a). 따라서 국내 여성과 소녀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

가. 세부목표의 의미

5.3 세부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MDGs에 비해 SDGs가 젠더적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되는 세부목표 중 하나이다(Esplen, 2015: 15). 유엔(UN)에서는 조혼, 여성할례 등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 문제를 여성 및 청소년의 생식보건 및 성·재생산권을 포함한 여성 및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를 저해하는 차별이자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정의하고 있다(OHCHR, n.d.;

UN, n.d.; Ras-Work, 2006). 이러한 유해한 관습에 대한 세부목표는 기존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으로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ICPD Programme of Action), 북경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 of the Fourth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과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OHCHR, n.d.), 특히, 앞서 언급된 3개 여성관련 국제협약들은 SDGs 형성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초기 논의부터 강조되어온 국제협약들이다.

이러한 유해한 관습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부목표 상에도 예시로서 포함된 아동결혼(child marriage)/조혼(early marriage)/강제결혼(forced marriage)¹⁷⁾, 여성할례와 함께, 순결여부에 대한 검사(virginity test), 전족, 남아선호 및 여아낙태(female infanticide), 지참금 관련 살해(dowry death), 일부다처제(polygamy), 명예살인(honour killing) 등 성차별적인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여러 관습들이 포함될 수 있다(OHCHR, n.d.; UN, n.d.; Ras-Work, 2006). 그러나 이들 이슈들이 워낙 문화나 종교 혹은 회원국의 주권문제(sovcreignty)와 연결되어 민감한 이슈로 다루어지다보니(UN, n.d.; Winter et al., 2002: 73), SDGs 논의과정에서 등장했던 또 다른 유해한 관습의 사례인 명예살인(honour killings)은 그 구체적 사례에서 제외되고, 대신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할례를 구체적 예시로서 제시하면서 유해한 관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⁸⁾

17) 아동결혼(child marriage), 조혼(early marriage), 강제결혼(forced marriage)은 상호 연관된 용어로서, 국제사회 논의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SRI, 2013). 우선, 강제결혼(forced marriage)은 유엔인권선언의 16조 2항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16조 1-b항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쪽 혹은 양쪽 배우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아동결혼은 말 그대로 아동과의 결혼을 의미하는데, 이때, ‘아동’의 정의는 아동인권협약(CRC)상의 정의를 따른다. 동 협약에서는 ‘아동’을 국가에서 성인연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18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18세보다 낮은 연령을 성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조혼(early marriage)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국제적 논의에서 ‘아동결혼’과 혼용되고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아동결혼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보통 18세 미만의 연령에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한다(SRI, 2013).

18) 이 부분은 유엔의 SDGs 공개작업반(OWG)의 논의결과 문서를 검토했을 때, 굉장히

나. 지표 분석

1) 지표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3.1은 세부목표 상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언급된 아동결혼 및 조혼에 대한 지표로서, 20~24세의 여성인구 중에서, 15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과, 18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각각 보고 있다 (UNSD, 2016a: 16). 성년이 되기 전의 아동결혼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일부 민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성차별적인 사회문화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성년인 18세 이전의 아동결혼(child marriage)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조기임신(early pregnancy)이나 사회적 단절(social isolation)을 경험할 수 있고, 학업 중단, 경력 기회에 대한 제한, 동거인(intimate partner)으로부터의 폭력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며, 보통 이러한 아동결혼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되는 여성의 젠더역할(gender roles)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UNSD, 2016a: 16).

앞서 설명된 세부목표가 기존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결혼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도 이전의 여러 국제협약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 16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결혼 및 혼인등록관련 동의·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아프리카아동인권복지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아프리카여성인권헌

첨예한 논의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예살인(honor killings)이 유해한 관습의 예시로서 문서에서 여러차례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유해한 관습의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예시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특별히(especially)’ 라는 수식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보다 중립적으로 예시를 제시하는 형식의 ‘~을 포함해(including)’ 혹은 ‘~와 같은(such as)’와 같은 수식어를 붙일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장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등에서 아동혼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인권협약 상의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학대(abuse)와 유해한 전통관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UNSD, 2016a:16).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3.1은 Tier II에 해당되며 UNICEF, WHO, UNFPA, UN Women, 유엔 경제사회국의 인구분과(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DESA) Population Division)에서 지표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 5.3.1의 경우, 국내에 가용통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b:132-133)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별로 작성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혼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등의 통계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혼인통계>의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조사자료가 미비하기도 하고, 지표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조혼, 아동결혼 등의 전통관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대화된 한국 사회에서 해당 지표의 유효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18세 이전의 동거 경험 혹은 사실혼 경험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133).

〈표 Ⅲ-9〉 5.3.1 지표 관련 국내통계

통계조사명	관련 조사항목	생산기관	법적근거	조사/공표 주기
인구동향조사	연령별 혼인, 일반혼인율, 혼인종류별 혼인, 평균초혼연령 등	통계청	통계법 인구동태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5호)	1개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성관계 경험여부 및 횟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년
청소년매체이용 및유해환경실태 조사	성관계 생애/연간 경험율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제33조	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성관계 경험율, 성관계 시작연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1년

출처: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에서 제시한 통계목록을 중심으로,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http://archive.nypi.re.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추가 및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8.)

하단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5년(2012~2016)의 <인구동향조사> 상의 연도별 혼인건수를 아내와 남편의 연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15세 미만의 남녀 혼인 건수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19세 이하 남녀 혼인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여성의 경우, 1%대 정도에서, 남성의 경우, 그보다 더 낮은 0.2~0.3%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19세 이하의 혼인건수의 경우,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0〉 연령별 남녀 혼인건수

단위: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	15세 미만	5 (0.002)	15 (0.005)	9 (0.003)	6 (0.002)	0 (0)
	19세 이하	4,729 (1.446)	4,437 (1.375)	3,836 (1.256)	3,471 (1.146)	3,283 (1.166)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67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성	15세 미만	0	0	0	0	0
	19세 이하	807 (0.247)	946 (0.293)	985 (0.322)	929 (0.307)	796 (0.283)
전체 혼인건수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추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8.)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이루어진 최근 5년 남녀의 초혼연령 역시, 남성 32세, 여성은 29~30세 전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혼이 2년 정도 일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병역 등으로 남녀의 사회진출 시기 등 차이를 고려할 때 아주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Ⅲ-11〉 남녀 초혼 평균연령

단위: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32.13	29.41	32.21	29.59	32.42	29.81	32.57	29.96	32.79	30.1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추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8.)

이 외에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상 성관계 경험여부 및 횟수,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상 성관계 생애/연간 경험율 등,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상 성관계 경험율, 성관계 시작연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경험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나, 본 지표의 의미 및 취지와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제시는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지표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3.2는 세부목표 상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인 여성성기절제(FGM)에 대한 지표로서 15~49세 사이 여성인구 중에서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로 측정된다(UNSD, 2016a: 17). 여성성기절제(FGM)는 의료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통관습 차원에서 여성 및 여아의 외부생식기의 부분 혹은 전체를 제거하거나 여성의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UN, n.d.: 17-18), 이를 통해 여성의 성욕(sexuality)이 통제되고 결혼 이전의 처녀성(virginity) 및 정절(chastity)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성차별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UN, n.d.). 이러한 여성성기절제는 여성의 건강에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UN, n.d.), 이는 명백한 여아 및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UN, n.d.: 17-18). 앞서서 설명된 지표 5.3.1과 마찬가지로 여성성기절제 역시 여러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서 일찍이 언급된 바 있는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에서 문제로서 제기된 바 있고,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는 여성성기절제를 고문의 한 형태로 정의한 바 있다(UN, n.d.: 17-18).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3.2는 Tier II에 해당되며 UNICEF, UNFPA, WHO에서 지표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인 5.3.2와 관련해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가 주로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으므로, 국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3). 그러나 이들 지표의 국내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69

적 적용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와 국내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 지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세부목표에 대한 의의에서 기술된 것처럼, 세부목표 자체가 특정 유해관습에 국한된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세부목표의 취지 자체가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성별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게 부과되는 특정한 행위들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포함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근절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적 지표를 고민해볼 수 있다. 여성에게 유해한 전통적 관습에 대한 유엔의 접근에 대한 한 연구(Winter et al., 2002)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된 서구(West)에서는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유해한 관습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해로운 남성중심적 문화, 즉, 성차별적인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미용시술 역시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한 예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oward, 1993: 506; Winter et al., 2002: 88에서 인용). 즉, 발전된 사회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을 가시화되지 않는 부정적인 젠더 규범과 고정관념과 연결시켜 생각해본다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문제,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포함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왜곡현상과 더불어,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이어트, 외모, 몸무게로만 측정되는 비만도, 표준 몸무게에 대한 왜곡화 등 소비자본주의라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유해한 관습의 한 예로서 해석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지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의 유해한 관습을 ‘네이밍’하고, 여성정책의 영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¹⁹⁾

19) 본 단락에서 언급된 내용은 연구 관련 자문회의 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의견임 (2017. 12. 8.)

7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의 예로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문항으로 포함되어있는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실태조사> 상 외모에 대한 남녀태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상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등의 통계가 참고할만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부목표와 지표의 취지에 대해서 감안할 때, 국내에서 여성가족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 상 남녀의 결혼 적정연령, 배우자 선택요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상 배우자 선택조건 등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대안적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Ⅲ-12> 5.3 세부목표 관련 대안적 지표 및 통계(안)

통계조사명	관련 조사항목	생산기관	법적근거	조사 주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005~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연애/결혼/취업시 외모 중요도,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의 외모 중요도, 외모로 인해 불이익·차별 경험,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인식, 다이어트 여부 • 배우자 선택조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5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년
가족실태조사	남녀결혼 적정연령, 배우자 선택요인 등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5년

* 주: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미만인 자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백분율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8.)

이러한 대안적 지표의 한 예로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인 지율이 26.8%인 가운데, 남자청소년(20.6%)에 비해 여성청소년(33.4%)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⁰⁾ 이러한 현상은 성인 남녀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성인 응답자(3,457명) 중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한 남성의 비율이 23.5%인 반면, 여성성인 응답자(3,942명) 중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32.9%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가. 세부목표의 의의

5.4 세부목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부과되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unpaid care and domestic work)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Ferrant et al., 2014; Swiebel, 1999: 1-2; UN Women, 2015b; UNSD, 2016a: 22). 이러한 성차별적인 돌봄과 가사노동의 남녀 간 분배는 성차별적 사회제도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20)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6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참고. (접속일: 2017. 10. 8.)

2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6년도 양성평등실태조사 통계 참고. (접속일: 2017. 10. 8.)

(Ferrant et al., 2014; UN Women, 2015a: 16).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의 공식노동은 그 가치가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은 GDP의 10~30%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산됨(UN, 2016:9)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시장 참여, 임금 및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의 문제 및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Ferrant et al., 2014; Swiebel, 1999: 2-3; Antonopoulos, 2009: 11-19; UN, 2016: 9).

유엔에서 무보수 노동을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회의(First Women's Conference)에서부터이다(Swiebel, 1999: 11-12). 동 회의에서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women's double burden)’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가사노동의 부당한 남녀 간 분배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를 위한 가정 내 책임, 즉, 가사의 남녀 간 분배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온 가사 및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인프라와 공공/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은 끊임없이 의제화 되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Swiebel, 1999:11-12). 이와 더불어 세계사회개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도 무보수 노동(unpaid work)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제한적이거나 논의된 바 있다(Swiebel, 1999: 12-13).

나. 지표 분석

1) 지표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가) 지표의 의미

유엔 통계국(UNSD, 2016a: 20)이 제시하는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정의는 자가 최종소비를 위한 무보수 생산활동(unpaid production for own final consumption)으로서, 자가소비(self-consumption)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73

의 생산과 관련된 무보수 노동과, 공동체와 환경,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보수로 수행되는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동 지표의 계산 방식은 개인의 전체 시간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성별, 연령,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혼인상태, 소득, 장애여부, 인종/민족 등의 분류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권장하고 있다(UNSD, 2016a: 20).²²⁾ 이와 더불어, 돌봄노동과 가사활동에 투입된 시간이 분리되어 제시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국가별로 각기 다른 측정방식으로 인해 국제적 지표의 비교와 통합에 있어서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면서²³⁾, 국가적 차원, 혹은 충분히 큰 표본을 가진 조사일 경우, 측정단위가 일별 혹은 주간별로 시간단위 이하로 나뉘는 경우, 시간활동의 구분의 10개 이상으로 충분한 경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UNSD, 2016a: 20-22).

이러한 시간사용에 대한 통계는 무보수 노동과 유급노동에 투입된 시간의 통계를 통해 무보수 노동의 분배의 남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UNSD, 2016a: 22). 또한, 세부목표와 지표가 지닌 의미를 고려할 때, 특정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물 깬는 데 소요되는 시간, 아동연령·지역·가구수입에 따른 영유아보육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 아동 비율 등도 참고할 수 있다(UN Women, 2015a: 16).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4.1은 Tier II에 해당되며 UNSD, UN Women에서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5.4.1지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가용통계가 행동별·집단별로 일별 분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행문헌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 134)에서 제시하고 있는

22) 이 외에도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시간사용 분리하여 비교·고려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가 구축되어 유의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23) 국제적 지표의 비교가능성 및 통합가능성 제고를 위해 “UN Guide to Producing Statistics on Time Use”의 참고가 권고되고 있다(ILO, 2011; UNSD, 2016a에서 재인용).

7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 의해 5년주기로 생산되는 <가족실태조사>, <양성평등 실태 조사> 등에서, 성역할 태도, 자녀돌봄 부담정도, 가사노동 수행비율, 부부 간 가사노동 부담 비율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표 Ⅲ-13〉 5.4.1 지표 관련 국내통계

통계조사명	관련 조사항목	생산기관	법적근거	조사/공표 주기
생활시간조사	행동별 평균시간(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10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소득별, 농가/비농가 등으로 세분화	통계청	-	5년
여성가족패널자료	혼인 경험 여성의 가사노동 정도, 남편의 가사노동 정도(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및 쇼핑, 식사 및 요리준비, 집안청소): 연령, 교육수준별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2년
가족실태조사	성역할태도, 자녀돌봄 부담정도(11개 항목으로 세분화), 가사노동 수행비율(8개 항목으로 세분화)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 기본법 제20조	5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부부 간 가사노동 부담 비율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 기본법 제 10조	5년

출처: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에서 제시한 통계목록을 중심으로,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내용을 참고해 저자가 추가 및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8.)

상기의 국내 가용 통계 중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우선,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서 여성이 약 3~5배의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업무(일)에 활용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아 남녀 간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시간의 사용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Ⅲ-14〉 10세 이상 남녀인구의 행동별 평균시간(요일평균)

	2014		
	요일평균		
	계	남자	여자
계	24:00	24:00	24:00
일	3:16	4:08	2:26
가정관리	1:32	0:32	2:2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3	0:10	0:3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추출. (접속일: 2017. 10. 8.)

지역과 연령별로 나누어 그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2개표와 같이 나타난다. 우선, 지역을 농가와 비농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도시보다 농촌에서 일과 가사, 돌봄노동에 투입되는 남녀 간 시간 격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청소년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던 남녀 간 시간사용의 차이가 20대 성년이 되어 노동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은 반면, 가사와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이후 60세 이상이 되어 은퇴 이후의 시기가 되어도 가사노동의 시간의 남녀 격차는 크게 줄지 않는 반면, 돌봄노동의 시간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15〉 지역(농가/비농가)에 따른 행동별 남녀인구 행동별 평균시간 (요일평균)

농가·비농가별	행동분류별	2014		
		요일평균		
		계	남자	여자
농가	계	24:00	24:00	24:00
	일	3:39	4:11	3:07
	가정관리	1:58	0:48	3:07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1	0:06	0:16

7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농가·비농가별	행동분류별	2014		
		요일평균		
		계	남자	여자
비농가	계	24:00	24:00	24:00
	일	3:15	4:08	2:24
	가정관리	1:30	0:31	2:26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4	0:10	0:3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추출. (접속일: 2017. 10. 8.)

〈표 Ⅲ-16〉 10세 이상 남녀인구의 연령에 따른 남녀인구 행동별 평균시간(요일평균)

연령별	행동분류별	2009		
		요일평균	요일평균-남자	요일평균-여자
10~19세 (10대)	일	5:07	4:52	5:21
	가정관리	0:38	0:34	0:42
	가족 보살피기	0:42	0:40	0:43
20~29세 (20대)	일	6:43	6:47	6:39
	가정관리	1:25	0:49	1:44
	가족 보살피기	2:38	1:16	3:03
30~39세 (30대)	일	6:59	7:20	6:19
	가정관리	2:26	0:59	3:10
	가족 보살피기	2:04	1:09	2:30
40~49세 (40대)	일	7:00	7:17	6:34
	가정관리	2:31	0:58	3:15
	가족 보살피기	1:04	0:53	1:08
50~59세 (50대)	일	6:32	6:57	5:55
	가정관리	2:39	1:11	3:22
	가족 보살피기	0:58	0:52	0:59
60세 이상	일	5:02	5:34	4:27
	가정관리	2:36	1:16	3:16
	가족 보살피기	1:17	1:10	1:1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추출. (접속일: 2017. 10. 8.)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권은 성평등 문제와 여성들의 권한강화(empowerment)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UNSD, 2016a: 30).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들의 권한강화에 대한 발전을 측정하는 데 핵심 지표가 된다(UNSD, 2016a: 29).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은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선정하였다(UN, 1995: 92). 세부목표 5.5 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며, SDGs 수립을 위한 UN의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8차 회의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선정하였다. 세부목표 5.5는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지표 5.5.2. ‘여성관리직 비율’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보고 있다.

나. 지표 분석

1)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5.1은 의회(national parliaments)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의회의 경우 단원제 의회의 의원과

7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양원제 의회의 하원의원을 포함하며 양원제 의회의 상원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여성들을 말하며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UNSD, 2016a: 24). 동 지표는 의회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경우 전체 여성과 남성의 의석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단원제 의회 또는 양원제 하원 의원석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체 여성과 남성의 수중에서 여성이 대표직을 맡은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또 지방정부의 경우 각 국가의 지방정부의 구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UNSD, 2016a: 26). 지난 30여 년간 여성의 정치참여도에 대한 표준 측정 은 의회에서의 여성 의원의 비율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원수, 장관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여성 정치참여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료는 여전히 정치참여의 모든 수준을 보고 있지 않았는데, 지표 5.5.1.에서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참여를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UNSD, 2016a: 26).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5.1은 Tier I과 Tier II에 다중으로 구분되는 지표로서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UN Women, World Bank 등이 주도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IAEG-SDGs, 2017c).

나) 국내 현황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행문헌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 135)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 당선인 통계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대 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지표 5.5.1.에 대한 국내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5). 2016년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당선인 253명 중 여성 의원의 수는 26명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약 10.28%로 나타난다. 하단의 두 개의 표는 역대선거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제18대 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 당선비율이 제17대에 비해 1.79%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역대선거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지역구

역대선거/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20대 / 2016	253	26	10.28
제19대 / 2012	246	19	7.72
제18대 / 2008	245	14	5.71
제17대 / 2004	243	10	4.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표 Ⅲ-18〉 역대선거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비례대표

역대선거/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20대 / 2016	47	25	53.19
제19대 / 2012	54	28	51.85
제18대 / 2008	54	27	50
제17대 / 2004	56	29	51.7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표 <Ⅲ-19>~<Ⅲ-22>는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기초의원 과 비례대표 당선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19〉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비율

역대선거 (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6대 (2014)	705	58	8.23
제5대 (2010)	680	55	8.09
제4대 (2006)	655	32	4.89
제3대 (2002)	609	14	2.3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표 Ⅲ-20〉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비율: 비례대표

역대선거 (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6대 (2014)	84	55	65.48
제5대 (2010)	81	58	71.6
제4대 (2006)	78	57	73.08
제3대 (2002)	73	49	67.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표 Ⅲ-21〉 역대선거별 여성 기초의원 비율

역대선거 (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6대 (2014)	2,519	369	14.65
제5대 (2010)	2,512	274	10.91
제4대 (2006)	2,513	110	4.38
제3대 (2002)	3,485	77	2.2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표 Ⅲ-22〉 역대선거별 여성 기초의원 비율: 비례대표

역대선거 (선거년도)	총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수	여성 당선인 비율(%)
제6대 (2014)	379	363	95.78
제5대 (2010)	376	352	93.62
제4대 (2006)	375	327	87.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접속일 2017. 10. 10)

2) 지표 5.5.2. 여성 관리직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5.2.는 여성관리직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외 분야로 나누어 측정한다. 지표 5.5.2.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 과정을 보기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의 표준 척도보다 범위가 확대되었다(UNSD, 2016a: 30).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표는 아래와 같다.

- 행정부:
 - 전체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 중 여성의 비율
 - 전체 장관직 중 여성 장관직의 비율
 - 전체 지방정부 요직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
- 입법부:
 -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
- 사법부:
 -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
 - 전체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의 비율
- 그 외:
 - 공적·사적 부문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5.2는 Tier I에 해당하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주도적으로 지표개발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8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나) 국내 현황

지표 5.5.2 ‘여성 관리직 비율’과 관련된 국내 통계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5). 이 외에도 매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판사를 포함한 여성 법조인 비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 5.5.2. 지표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행정부 여성 관리직과 관련해서 전체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 중 여성의 비율, 전체 장관직 중 여성 장관직의 비율, 전체 지방정부 요직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을 보고 있는데, 국가 원수, 정부 대표 여성의 비율과 여성 장관직 비율에 대한 통계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방정부 요직을 맡은 여성의 비율에서는 지방정부 요직(leadership positio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5.2 지표에서 보고 있는 입법부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앞서 5.5.1.지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법부 부분의 경우,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과 전체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보고 있다. 여성 판사의 비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 상 여성 법조인 현황(직업별)을 참고할 수 있으나, 여성 경찰관의 비율에 관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아래 <표 III-20>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판사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판사의 비율은 2010년 15.0%에서 2015년 25.5%까지 지난 5년간 10%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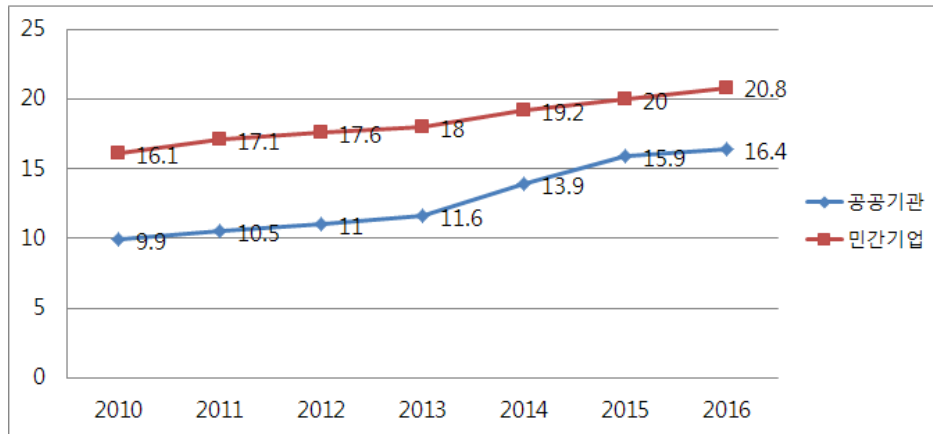
<표 III-23> 여성 판사의 비율

연도	전체 (명)	여성 (명)	여성비율 (%)
2015	25,380	6,479	25.5
2014	19,696	4,271	21.7
2012	17,116	3,168	18.5
2010	14,616	2,192	15.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83

그 외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참고할 수 있다. 아래 [그림 Ⅲ-1]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정리한 그래프로 두 부문 모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의 선행연구에서는 지표 5.5.2.의 경우 국제 통계와의 비교분석을 위한 여성 관리직과 같은 용어의 정의, 통계자료의 정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6:135).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 40을 참고해 재구성

[그림 Ⅲ-1] 공적·사적 부문의 여성 관리직 비율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는 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억 명 이상의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효과적인 피임법을 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이다(UN Women, 2015a: 17).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여성 및 여아의 인권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생식권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세부목표 5.6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지표 5.6.1)’과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지표 5.6.2)’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표는 국제인권개발회의 행동계획(ICPD)과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근거한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이 효과적인 인구개발 전략에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또한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합의된 국제적 의제인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남녀의 평등한 권력 관계를 추구하고자 여성과 빈곤 등의 12개의 주요 관심부문을 설정하였다(이선주 외, 2010). 이 중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이슈는 여성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SDGs의 세부목표 5.6은 이 두 아젠다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생식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SDGs 수립을 위한 UN 차원의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s, OWG)은 제 8차 회의부터 양성평등과 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슈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SDGs의 성평등 목표 내에 성·재생산 보건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세부 목표 5.6이 설정되었다.

나. 지표 분석

1) 지표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가) 지표의 의의

지표 5.6.1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을 측정한다. 즉, 성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에 남성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측정하기 위함이다. UN Women은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인구통계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와 복수지표집단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의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UN Women, 2015a: 18). 구체적으로 DHS에 포함되어 있는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임신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아래 3개 문항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비율을 측정한다(UNSD, 2016a: 31). 즉, 아래 질문에 모두 ‘예’로 대답한 15~49세 여성의 수를 집계하여, 전체 응답 여성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나타낸다.

-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있는지의 여부
- 여성이 자신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

8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DHS는 약 70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DHS와 MICS의 문항을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5.6.1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UNSD, 2016a: 32).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 내 전국 가계조사를 활용하도록 제안한다(UNSD, 2016a: 31).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6.1은 Tier II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UNFPA와 UN Women이 담당하여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 5.6.1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기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6). 이 조사는 1964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3년 주기로 측정되며 한국의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형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이삼식 외, 2015: 3). 구체적으로 1) 성관계, 2) 피임기구 사용, 3)성·재생산 보건에 해당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통해 5.6.1의 국내 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I-2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피임사용과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결정권은 몇 개의 문항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I-24> 5.6.1 지표와 관련된 국내 설문 문항

세부 지표	세부 문항
성관계 결정권	없음
피임기구 사용여부 결정권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율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결정권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존자녀의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

출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87

먼저 피임기구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서는,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율,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 등의 문항을 통해 여성이 피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 의하면, 15~49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9.6%로 전국적으로 지역이나 연령,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높은 피임 실천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 III-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인 경우, 비취업보다 취업 중인 경우, 자녀가 많은 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피임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41).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이삼식 외, 2015: 42).

<표 III-25>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구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전체	79.6	11.1	9.3	100.0	(10,324)
거주지					
대도시	80.6	10.9	8.5	100.0	(4,468)
중소도시	79.7	10.8	9.5	100.0	(4,327)
농촌	76.5	12.6	10.9	100.0	(1,530)
연령					
25세 미만	46.9	20.4	32.7	100.0	(49)
25-29세	49.4	26.3	24.3	100.0	(482)
30-34세	62.0	21.6	16.3	100.0	(1,689)
35-39세	80.8	11.1	8.1	100.0	(2,377)
40-44세	88.6	5.1	6.3	100.0	(2,860)
45-49세	85.6	8.2	6.1	100.0	(2,868)

8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구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교육수준					
중졸이하	76.7	11.5	11.9	100.0	(253)
고졸	82.6	9.4	8.0	100.0	(4,133)
대졸	77.7	12.1	10.2	100.0	(5,506)
대학원졸	77.4	14.1	8.5	100.0	(434)
취업여부					
취업	82.3	9.8	7.9	100.0	(5,654)
비취업	76.3	12.7	11.0	100.0	(4,670)
출생자녀수					
0명	25.8	29.2	45.0	100.0	(756)
1명	63.3	19.6	17.1	100.0	(2,468)
2명	91.0	6.2	2.8	100.0	(5,795)
3명 이상	91.0	6.2	2.8	100.0	(1,302)
가구소득					
60% 미만	68.9	14.4	16.7	100.0	(1,060)
60~80% 미만	73.5	14.0	12.5	100.0	(1,588)
80~100%미만	81.1	10.2	8.7	100.0	(2,071)
100~120%미만	82.9	9.6	7.5	100.0	(1,903)
120~140%미만	80.2	12.2	7.6	100.0	(1,023)
140~160%미만	82.9	9.9	7.3	100.0	(934)
160%이상	84.5	9.1	6.4	100.0	(1,738)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 pp.142-143.

피임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산이 92.9%를 차지하였으며, 7.0%의 여성은 출산연기를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143).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89

피임의 방법으로는 피임사용자의 성별, 피임 효과의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정관수술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삼식 외, 2015: 146). <표 III-26>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고연령층일수록 콘돔의 이용률이 낮으며, 난관수술, 정관수술 등과 같은 영구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사전경구피임약 등의 여성용 피임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이삼식 외, 2015: 147).

<표 III-26>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사전경구피임약	사후경구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기(대상자 타 수)
전체	7.6	23.0	12.4	2.9	0.5	30.2	0.4	31.5	24.8	0.2 (8,219)
거주지										
대도시	6.9	22.0	11.5	2.9	0.5	32.5	0.3	34.7	27.3	0.2 (3,600)
중소도시	7.7	24.6	13.0	3.0	0.4	28.4	0.3	29.3	22.9	0.2 (3,450)
농촌	9.3	21.1	13.3	2.9	0.6	28.2	0.7	28.3	23.2	0.4 (1,170)
연령1)										
30세 미만	2.5	6.4	6.4	12.3	1.0	49.8	-	32.4	34.5	0.4 (261)
30-34세	3.5	10.2	10.2	4.9	1.0	44.3	0.6	41.3	33.9	0.1 (1,048)
35-39세	5.0	16.9	16.9	3.1	0.2	38.9	0.3	37.2	28.5	0.3 (1,921)
40-44세	8.3	26.5	26.5	2.5	0.4	27.0	0.3	29.2	23.7	0.2 (2,533)
45-49세	11.2	31.3	31.3	1.5	0.5	18.5	0.4	25.2	18.3	0.2 (2,456)
교육수준										
중졸이하	17.0	19.6	20.0	4.9	1.3	20.6	-	22.2	15.6	- (194)
고졸	10.3	25.5	16.4	3.1	0.5	23.2	0.5	26.5	21.6	0.4 (3,413)
대졸	5.3	21.3	9.2	2.8	0.5	35.4	0.3	35.4	27.8	0.1 (4,277)
대학원졸	4.7	20.4	7.5	1.5	0.2	40.0	-	39.2	25.4	0.2 (336)

9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구분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 내 장치	사전 경구 피임약	사후 경구 피임약	콘돔	살 정 제	월경 주기법	질외 사정법	기 (대상자 타 수)
취업여부										
취업	7.6	24.1	14.8	2.8	0.4	27.3	0.5	30.2	24.0	0.3 (4,655)
비취업	7.6	21.5	9.2	3.1	0.6	33.9	0.2	33.2	26.0	0.1 (3,564)
가구소득 ²⁾										
60% 미만	8.6	16.1	12.4	3.7	0.9	34.3	0.4	33.6	27.8	- (730)
60-80% 미만	7.7	17.8	11.9	4.4	0.7	33.7	0.3	31.5	27.0	0.2 (1,167)
80-100%미만	8.0	22.6	13.8	2.7	0.3	30.4	0.3	31.7	22.8	0.2 (1,679)
100~120%미만	8.3	21.5	12.7	2.9	0.4	28.8	0.6	31.6	25.0	0.5 (1,577)
120~140%미만	9.3	22.6	13.6	3.0	0.6	29.7	0.8	30.9	22.8	0.2 (820)
140~160%미만	5.2	31.5	10.5	2.2	0.8	28.4	0.4	28.8	23.7	0.2 (774)
160%이상	6.1	28.2	11.1	1.9	0.3	27.6	-	32.1	25.6	0.1 (1,468)
출생자녀수										
0명	-	4.3	5.7	12.7	2.1	55.5	0.4	41.2	28.2	- (195)
1명	1.7	8.9	11.5	4.7	0.6	40.5	0.5	43.3	32.8	0.2 (1,563)
2명	8.3	26.6	12.2	2.1	0.4	28.0	0.3	29.8	23.7	0.1 (5,275)
3명 이상	13.6	28.6	15.3	2.5	0.3	21.8	0.3	22.1	18.7	0.6 (1,185)

-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2명, 20~24세 21명이 포함되어 있음.
 2)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 pp.1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경환 외, 2016)의 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해당 지표의 목표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따라서 향후 국제 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따라 국내 이행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²⁴⁾는 국내 전국적인 표본을 토대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SDGs 5.6.1 지표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5.6.1지표의 국내 이행정도를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셋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미혼여성의 성관계와 피임여부, 성·재생산 보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SDGs 지표 5.6.1에서 제시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토대로 성관계, 피임사용여부, 출산 등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도구에 신규 질문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5.6.2.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가) 지표의 의의

5.6.2.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이는 성관계 및 재생산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문제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이선주 외, 2010: 90). UN Women은 15~49세 여성의 성관계와 재생산 관련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을 아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UN Women, 2015a:18).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자세한 이삼식 외(2015)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9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 배우자, 보호자, 부모 혹은 그 외 인물을 포함한 제 3자의 권한 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 연령 및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이 지표는 앞으로 개발될 설문조사에 대한 각 정부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될 것이다(UN Women, 2015a).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Tier III로 구분되고 있다. 2017년 현재 UNFPA 주도아래 UN Women과 WHO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표와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UNSD, 2016a: 48).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6.2는 Tier III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UNFPA, UN Women, DESA Population Division, WHO 등이 담당하여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지표 5.6.2의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고경환 외, 2016). 5.6.2 지표와 관련된 국내 법률 및 규정의 현황은 다음의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5.6.2 지표와 관련된 국내 법률 및 규정

법률 및 규정	세부 조항
헌법	제 36조 제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자보건법	제 1조: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1항).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93

법률 및 규정	세부 조항
	<p>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1항).</p> <p>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 1항).</p> <p>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 1항).</p> <p>제16조(협회):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제 1항).</p>
아동복지법	<p>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4. 재난대비 안전 / 5. 교통안전</p>
학교 보건법	<p>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출처: 헌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접속일 2017. 10. 4), 모자보건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8&efYd=20170603#0000>) (접속일 2017. 10. 4), 아동복지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99&efYd=20170726#0000>) (접속일 2017. 10. 4), 학교보건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32&efYd=20170726#0000>) (접속일 2017. 10. 4)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먼저 헌법 제 36조 제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국가가 여성을 포함한 국민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모자보건법을 통해서도 국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제 1조), 다양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법 제 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

9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성교육과 성상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다양한 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부와 신상아를 위한 집중 치료 시설, 모유수유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6조(협회) 등의 조항을 통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법률로서 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보건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취학연령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 9조)을 명시하며, 청소년의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37). 또한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37).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가. 세부목표의 의미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토지 및 금융자산 등 경제자원이 개인과 가구의 수입 창출원이 되며 경제적 충격과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원은 은행거래를 포함한 신용거래에 있어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UN Women, 2015a: 18).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여성은 가정 내에서 협상력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켜 더 큰 보호와 강력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다(UN Women, 2015a: 18). 그러나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토지소유는 남성에게만 한정되거나,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 목표에서는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 지표의 분석

1) 지표 5.a.1: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가) 지표의 의미 및 정의

동 지표는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과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두 가지로 나뉘며 아래 수식을 참고하여 산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UNSD, 2016a: 37).

하단의 수식 (a)는 전체 농업 종사자 중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9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한다. 반면 (b)는 양성 평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에서 여성이 얼마나 차별 받는지를 나타낸다. (a)와 (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두 개의 정보이다. 덧붙여, 두 개의 지표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계산식에 사용되는 분모이다. 그리고 (a)의 경우, 총 인구수 대신 전체 농업 종사자 수를 분모로 사용한다. 이는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은 농업이 생계원인 사람들에게만 유관하기 때문이다(UNSD, 2016a: 37).

- (a) (농지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자 수 ÷ 총 농업 종사자 수) X 100
- (b) (농지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수 ÷ 농지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자 수) X 100

수식 (b)에서 분리 제시를 요구하는 토지권 종류(land tenure)란 토지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 및 방식이며 이는 토지 사용을 보장하는 중요 요소이다. 식량농업기구(FAO)의 World Census of Agriculture은 국가마다 특정 유형의 토지권 종류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단, 사후에 이하의 범주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UNSD, 2016a: 38):

- 법적 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 형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 포함)
- 비법률적 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토지
- 기타 종류의 보유 형태

토지권 보유 형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UNSD, 2016a: 38):

- 소유증서(title)를 통한 권리
- 조건 하의 사용: 상속 보유권(heredity tenure), 영구 또는 장기 임대(perpetual lease & long-term lease), 낮은 임대료 또는 무비용의 임대
- 부족 및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통적으로 유지된 보유방식(UNSD, 2016a: 38).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a.1은 Tier II에 분류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UN Women, UNSD, 유엔 환경 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World Bank, 유엔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등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통계 및 국내 현황

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2016: 13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현재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자원, 토지,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본 세부목표와 지표는 한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SDGs 향후 해당 세부목표와 지표의 취지에 기반하여 국내적 맥락에 적합한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본 지표를 한국에서 적용할 경우, 단지 농지소유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으로 그 해석을 확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동 지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단지 여성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자원에서의 접근과 소유가 법적,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농업의 비중이 적고, 4차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SDGs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에 성별구분이 적용될 계획이 있다. 또 다른 지표로는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통계는 현재 성별구분이 되어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중 남성은 57.6%(728만2천명)이고 여성은 42.4%(536만8천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36배 많았다.²⁵⁾ 2017년의 경우 남성은 56.4%(751만2천명), 여성은 42.4% (580만 1천명)으로 남성이 약 1.29 배 많았으나, 여성소유자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²⁵⁾

2)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가) 지표의 의의 및 정의

지표 5.a.2에서 의미하는 법적근거는 여성의 토지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포함한다. 본 지표는 토지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자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내용도 모니터링 한다. 구체적으로, 지표는 여성의 토지권 보장 증진을 위한 여성특화 척도를 채택하여 양성평등 진척 도를 모니터링 한다(UNSD, 2016a: 40).

지표는 0에서 4까지 점수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책/사법체계가 법안 개혁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여준다(UNSD, 2016a: 40-41):

- 0점: 사법체계에서 관련 지표 찾을 수 없음
- 1점: 관련 정책 발달 과정 중
- 1.5점: 관련 정책이 준비되어 있음
- 2점: 심의를 위해 법률입안 제출 함
- 3점: 기본법(primary law) 상 지표 확인 가능
- 4점: 다수의 법률 수단에서 지표 확인 가능
- N/A: 적용 불가능

25) 연합뉴스. ‘여성의 땅’ 얼마나 될까, 성별 토지소유현황 나온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5/0200000000AKR20161125099700003.HTML> (접속일 2017. 12. 18)

26) 통계청.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4721 (접속일 2017. 12. 18)

아울러 동 지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UNSD, 2016a: 41):

- 국가 법률체계가 토지 분배 및 소유권 프로그램에서 여성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 여부
- 여성의 토지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자금을 사법체계가 설립했는지 여부
- 부부의 경우, 사유재산(또는 사용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 등록이 의무인지 여부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a.2는 Tier II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FAO, World Bank, UN Women 등이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통계 및 국내 현황

본 지표는 법적 근거 여부를 검토하는 지표이므로 통계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경우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 지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원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가. 세부목표의 의미

최근 수십 년간,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은 경제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정보의 생산, 전파, 획득 등 사회적 상호 관계를 재정립했다. 점차 더 많은 정보통신기술이 마케팅 및 은행업무 등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농촌 및 벽지 거주자의 정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UN Women, 2015a: 19).

지난 10년 동안 휴대폰 통신망은 급속하게 확산했으며 휴대폰 가입 수는 전 세계 인구수와 거의 같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휴대폰 보유는 만약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한다면,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며, 이는 사적 영역 뿐 아니라 직업적 목적(professional purpose)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연구들은 여성이 휴대폰 보유함으로써 역량이 강화되었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UNSD, 2016a: 43).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정보통신기술 접근·보유·사용·이익에 대해 남성과 여성 비율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본 지표는 이러한 성별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추적하는 데 중요하다(UNSD, 2016a: 44).

나. 지표의 분석

1) 지표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가) 지표의 의미

본 지표는 ‘성별 휴대폰 보유율’로 정의된다. 개인용도를 위해 최소 1개의 활성화된 SIM 카드와 휴대폰 단말기가 있다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한다.²⁷⁾ 사적인 용도(사적 전화통화, 인터넷 접속 등)로도 사용 가능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폰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활성화된 SIM 카드²⁸⁾만 가지고 있고 휴대폰 단말기가 없는 개인은 제외되고, 한편,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보유자로 포함되어 계산된다 (UNSD, 2016a: 43). 각 국가의 정부는 국가가구조사를 통해 본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특정 지역 내(in-scope)에서 휴대폰 보유자 수를 지역 내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27) 휴대폰 단말기란 공중교환전화망(PSTN) 접속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이동무선 공중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휴대전화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IMT-2000 (3G) 및 IMT-Advance와 같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선불 및 후불 휴대폰 모두 포함된다.

28) 활성화된 SIM 카드는 지난 3개월 이상 사용한 SIM 카드를 의미한다

(UNSD, 2016a: 43).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b.1은 Tier I로 분류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주도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통계 및 국내 현황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통계는 2000년도 인구총조사에서 1회 조사된 바 있으나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휴대폰 보급률은 39%로 나타났으나 이는 성별분리되지 않은 수치이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b:154).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 개인별 매체보유현황 휴대폰 항목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 조사는 연령별로 분리되어 있으나 성별로는 분리되지 않았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b: 153). 한국의 높은 휴대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국가승인차원의 통계에서 휴대폰 보급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지표를 위해서는 매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환경과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는 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87.9%, 여성은 82.2%로 남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58).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이용률의 경우, 2016년 남성이 86.7%, 여성이 80.6%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46). 즉, 스마트폰의 보유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 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가. 세부목표의 의의

이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는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출의 비율이다. 본 지표는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위해 책무성 체계와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개선하였다(UN Women, 2015a: 19).

나. 지표 분석

1) 지표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가) 지표의 의의

본 지표는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cycle)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1) 추적하고 2)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예산배분 및 지출 추적시스템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예산 담당 부처 주도하에 관련 부문 부처 및 국가여성기구(National Women's Machineries)와 협력하고 의회 또는 감사원과 같은 적절한 기관에서 감독해야 한다(UNSD, 2016a: 45).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이 인정되려면 각국은 다음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 ① 양성평등을 통합시킨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이 존재함²⁹⁾
 - i. 성인지적 예산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회람(call-circulars)이나 지시 등의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29) 5가지 기준의 기준 기간은 현 회계연도임.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103

- ii. 부문별 예산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할당 여부
 - iii. 성인지예산서 여부
 - iv. 예산 배분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부
 - v. 예산 배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수행 여부
- ② 양성평등에 대한 배분 및 지출이 정부 웹사이트·공식 게시판·공고문을 포함한 공식 정부 간행물 및 경로를 통해 적시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될 경우 공적 자금 지출로 간주함.

본 지표의 목적을 위해,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배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UNSD, 2016a: 46).

- ① 여성 및 여아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 ② 여성 및 남성 모두가 대상이지만 양성평등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예를 들어 여성 및 남성고용 촉진, 남녀 평등한 관리직 대표성 및 남녀 동등임금
- ③ 양성평등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예를 들어 양성평등은 주요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여성 및 여아가 남성 및 남아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본 지표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의회 감사 및 감사원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산 외 항목은 양성평등 관련 예산의 범위 및 영향력 추적에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공 및 민간 자원 협력의 대규모 인프라 재정확보 (infrastructure financing)가 있다. 둘째, 과정 중심적인 본 지표는 자원 배분의 적절성이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또 다른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에 대한 자원’이라고 하면 통상 협소하게 해석되어 종종 ‘여성 특정 프로그램’

10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이나 여성부 예산으로만 이해하고,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배분된 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지표의 포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UNSD, 2016a: 47-48).

글로벌 지표 논의에서 지표 5.c.1은 Tier II에 해당되며, UN Women, OECD에서 구체적인 지표관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IAEG-SDGs, 2017c).

나) 가용 통계 및 국내 현황

본 지표 역시 통계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존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과 양성평등 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표 Ⅲ-28〉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p>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예산”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p> <p>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9. 성인지예산서</p>
--

30) 양성평등 기본법 제16조 (성인지 예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국가재정법 제57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제71조에 제6호

-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국가회계법 제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① 제14조 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7. 성인지 결산서
- ⑤ 제1항 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제5조(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26조 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 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예산서의 내용)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성인지예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 웹페이지³¹⁾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성인지예산.

<http://www.kwdi.re.kr/page.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188> (접속일 2017. 12. 18)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09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113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116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20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26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28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32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34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38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40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1의 주요 내용인 빈곤이슈는 일찍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수립된 북경행동강령에서부터 한 챕터로 자세히 다루어질 정도로 여성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빈곤상황에 놓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도국 여성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빈곤의 원인이 세계화,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 고정관념, 여성에게 제한된 권력 및 자원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동등한 경제참여와 기회 및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경제 및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UN, 1995).

목표 1의 전체 12개 지표 중에서 6개에 성별, 연령의 구분이 명시되어 있다.<표 IV-1> 참조) 세계빈곤선 및 국별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과 같이 빈곤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더불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사회보호 안전망 제도 하의 인구비율, 토지권, 취약계층 대상 정부 예산 할당 비율 등)에 대한 지표 역시 성별로 분리되어 집계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명시적으로 성별 구분 지표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지만, 1.5번 목표 하의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된 인구 수 역시 성별분리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UN Women, 2015a: 21).

<표 IV-1> 목표 1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³²⁾

세부목표	지표
1.1 현재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극빈(極貧)을 2030년까지 근절	1.1.1 성별 , 연령별, 고용상태 및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2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축	1.2.1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국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2.2 국별로 정의된 모든 측면에서 빈곤 상태의 전 연령 대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32) UN Women(2017)의 기준에 따르면 지표 1.5.1은 성평등 지표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난에 의해 사망 및 실종된 인구 역시 성별분리되어 지표가 측정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1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세부목표	지표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3.1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 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 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비율 (성별 , 토지권 종류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관련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축	1.5.1 100,000명당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1.b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인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체계를 창출	1.b.1 여성 ,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dispassionately benefit) 정부의 정기적인 자본지출(recurrent and capital spending)의 비중

출처: 연구진 작성

여성의 빈곤과 관련된 이들 글로벌 지표는 일종의 대리지표(proxie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가구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소득 데이터가 필요한데,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UN Women, 2015a: 20). 따라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세계빈곤선 및 국가빈곤선 이하의 여성인구 비율(지표 1.1.1, 1.2.1, 1.2.2)을 통해 여성의 빈곤 현황을 추적해볼 수 있으며, 동시에 토지권을 소유한 여성의 비율 역시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성(지표 1.4.2)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수립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된 북경행동강령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의 동등한 경제적 참여와 기회, 자원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임산부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내 취약계층의 비율(지표 1.3.1)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배당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지출 비율(지표 1.b.1)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지표 1.3.1에서 임산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에 따른 정책적 지원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11

(maternity benefit)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41%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다(UN, 2017: 3). 한편, 1번 목표 하의 세부목표와 지표는 5번 성평등 독자목표와의 연관성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세부목표 1.4와 세부목표 1.b는 5번 성평등 독자목표 상의 세부목표 5.a, 5.c와 각각 연계하여 고려될 수 있다.

IAEG-SDG(2017c)에 따른 각 지표에 대한 Tier 구분을 살펴보면, 지표 1.1.1은 Tier I에 분류되며 World Bank와 ILO가 지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표 1.2.1 역시 Tier I에 구분되며 World Bank와 UNICEF가 지표관리를 맡고 있다. 지표 1.2.2의 경우 Tier II에 해당되며, 각 국가정부가 주도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UNICEF, World Bank, UNDP도 함께 협력하여 지표 개발을 진행한다. 지표 1.3.1은 Tier II에 해당하며 ILO, World Bank가 지표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표 1.4.1과 1.4.2는 각각 Tier III, Tier II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지표개발의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다. 지표 1.4.1은 UN-Habitat, UNICEF, WHO가 지표 1.4.2는 World Bank, UN-Habitat, FAO, UNSD, UN Women, UNEP,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등이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 지표 1.5.1은 Tier II에 해당하며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 UN-Habitat, UNEP, DESA Population Division 등이 추가 지표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표 1.b.1은 Tier III에 해당되나 지표개발을 위한 담당기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IAEG-SDGs, 2017c).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빈곤선 이하 여성인구 비율 (지표 1.1.1, 1.2.1, 1.2.2)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에서 성별로 분리된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단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상대적빈곤율은 19.5%이며, 남성 16.8%, 여성 21.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³³⁾ 두 번째로, 토지권과 관련해서도

33)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3&conn_path=I2 (접속일: 2017. 11. 27)

11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생산하는 토지소유현황 자료가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성별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2018년도부터 SDGs 목표에 발 맞추어 성별로 발표될 예정이다.³⁴⁾ 셋째로, 사회안전망 내 취약계층의 비율(지표 1.3.1)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 주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1,554,484명의 수급자 중에서 남성이 700,222명, 여성이 854,262명으로 여성이 15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⁵⁾ 이 외에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 통계, 국민연금통계 등을 통해 성별 분리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및 산전 후 및 육아휴직현황과 급여현황 역시 성별 분리된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³⁶⁾ 마지막으로, 여성 등 취약계층에 배당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지출 비율(지표 1.b.1)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범위와 정의에 대한 국내적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4). 1.5번 목표 하의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된 인구 수 역시 성별분리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으므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하여 국내에서 집계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재해연보는 성별분리된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15-19).

-
- 34) 연합뉴스. ‘여성의 땅’ 얼마나 될까, 성별 토지소유현황 나온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5/0200000000AKR20161125099700003.HTML?input=1195m>, (접속일: 2017. 11. 27)
- 35)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2
(접속일: 2017. 11. 27)
- 36) 보다 자세한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b: 7~11) 자료와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6:415-464)를 참고하기 바람.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목표 2의 주요 내용은 기아 종식과 영양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진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 목표에서는 기본적인 권으로서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와 관련하여 여성, 특히, 가임기 및 수유기 여성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UN Women, 2015a: 22). 일찍이 북경행동강령(1995) 및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1994)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영양부족 문제와 재생산 건강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특히, 여아와 관련된 별도 섹션에서 여아에 대한 영양공급과 청소년기 재생산 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과 빈곤문제를 다룸에 있어, 여성이 성별분업(gender division of labour)으로 인하여 가계 빈곤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농촌지역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경제적 자원에서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하단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7개 목표 중 2개 세부목표(세부목표 2.2와 2.3.)에서 여성,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하위 지표로서,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생산 평균소득(지표 2.3.2)이 기 수립된 바 있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가임기 여성의 빈혈 역시 지표로서 현재 추가 논의 중이며 그 지표의 포함 여부가 2017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표 2.3.2의 경우 Tier III에 해당하며 FAO와 World Bank가 지표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IAEG-SDGs, 2017c).

〈표 IV-2〉 목표 2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³⁷⁾

세부목표	지표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상 필요에 대응	(현재 논의 중인 지표: 가임기 여성의 빈혈)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통하여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 증대	2.3.2.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 생산 평균소득

출처: 연구진 작성

세부목표가 주목하고 있는 여성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우선, 2.2 세부목표에서는 영양 공급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특히 영양 공급이 필요한 청소년기, 임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임신한 혹은 수유 중인 여성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며, 이러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빈혈이 고려될 수 있다(UN Women, 2015a: 22).

한편, 세부목표 2.3의 경우에는 기아 종식 및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안보와 농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은 농업분야 노동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의 참여는 50% 이상으로(FAO, 2014: 35), 여성은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관계(gender relations) 및 성불평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UN Women, 2015a: 22; FAO, 2014: 35; FAO,

37) UN Women(2017)의 기준에 의하면 세부목표 2.2는 성평등 목표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세부목표 내에 가임기 여성의 빈혈정도를 지표로 포함할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여 명시하였다.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15

2011), 이는 여성의 농업생산성을 저해함으로써 여성들이 효율적 농업생산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FAO, 2014: 35; FAO, 2011).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주어질 때, 여성의 농업생산량은 20~30%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의 2.5~4%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전세계 기아인구의 12~17%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기도 한다(FAO, 2011: 5). 따라서 여성 농민에게 공평한 자원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확보에도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표 2.3.2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가 존재하나(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37-38) 그 조사단위가 가구자원이기 때문에 성별 분리된 농가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대안지표로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별 월평균 남녀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 여기서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남녀 평균임금과 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 분야들의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66% 수준(월 평균임금 여성 2,270천원, 남성 3,439천원)이며, 이는 전산업에 걸친 남녀 임금격차인 62.5%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322). 한편, 세부목표 2.2와 연계된 빈혈유병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년 주기로 조사, 공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별, 연령별로 분리된 빈혈유병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시점에서 10-18세 청소년기 여성의 빈혈 유병율은 5.9% 수준이고, 20대 여성의 경우, 8.6%, 30대 여성의 경우, 12.6%, 40대 여성의 경우, 16.1%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³⁸⁾

38) 국가통계포털. 빈혈 유병률 추이:성별, 만10세 이상.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10&conn_path=I2
 (접속일: 2017. 11. 29.)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겪지만, 특히 여성과 여아의 경우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부터 기인하는 성차별적 역할 및 요인들로 인해 건강을 저해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UN Women, 2015a: 23). 특히 북경행동강령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여성의 건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국가의 재생산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보건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생식기 관련 질병, HIV/AIDS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노출된다(UN, 1995; 이선주 외, 2010). 따라서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 3의 성별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목표 3 내에는 총 14개의 세부목표와 이행방안이 있으며, 그 중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를 정리하면 <표 IV-3>와 같다. 목표 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는 총 4개로 산모사망비율(3.1), AIDS 등의 전염병의 성별 비율(3.3),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3.7),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3.8)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표 IV-3> 목표 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산모사망 비율을 100,000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축	3.1.1 모성 사망비
	3.1.2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3.3 2030년까지 전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방지	3.3.1 성별 , 연령별, 주요인구군별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HIV/AIDS 신규 발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성·재생산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 (15-49세)의 비율
	3.7.2 각 연령층별 1,000명 여성 당 청소년 출산율 (10-14세, 15-19세)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17

세부목표	지표
3.8 모두를 위한 재무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이고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3.8.1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추적치료로 제공되는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건강, 전염병, 비전염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필수 서비스의 평균적인 보장)

출처: 연구진 작성

세부목표 3.1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산모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인 ‘모성사망비(지표 3.1.1)’와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지표 3.1.2)’은 모두 MDGs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표로,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며 관련된 자료도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UN Women, 2015a: 23). 지표 3.1.1의 모성사망은 임신 또는 그 관리와 관련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 정의에 따라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00). 2014년 한국의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11명으로, SDGs 3.1목표인 70건 미만을 이미 달성하였으나 OECD국가 중에는 높은 편에 속한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00). 이는 국내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임신자의 건강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경환 외, 2016: 118). 지표 3.1.2의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산모의 출산을 지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00). 한국의 경우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3년 주기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2년 99.8%, 2015년 100%의 비율을 나타냈다(고경환 외, 2016: 121). 이와 같이 한국의 모성사망비와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은 SDGs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목표 3.3은 HIV/AIDS 발생률, 결핵발생률, 말라리아발생률, B형 간염 발생률,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를 포함하여 총 5개 지표로 구성

11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되어 있다. 이 중 모든 질병에 대해 성별분리 지표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3.3.1은 지표 내에 성별분리를 명시하여 여성과 여아의 HIV/AIDS 발생률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과 여아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위험한 성적 행동이나 성매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함께 HIV/AIDS를 포함한 성매매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Temin & Levine, 2009). 또한 HIV는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위한 발생률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경환 외, 2016: 126).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 자료를 통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0.522명의 HIV/AIDS 발생률을 나타냈다(고경환 외, 2016: 127). 이는 WHO가 발표한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HIV 발생률인 0.5와 유사한 수치이다(고경환 외, 2016: 126).

세부목표 3.7은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재생산 관련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룬다. 3.7은 2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두 개의 지표 모두 성별분리 데이터를 지표로 포함한다. 그리고 앞서 논의하였던 성평등 독자목표인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3.7.1의 지표는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율’을 나타내며 ‘지표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49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9.6%로 전국적으로 높은 피임 실천율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이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정관수술 등의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삼식 외, 2015: 148). 지표 3.7.2는 청소년 각 연령층별 1,000명 여성 당 청소년 출산율을 각각 10-14세와 15-19세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15-19세 청소년 출산율은 MDGs에서도 포함되었지만, 10-14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SDGs에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19

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로 조기 임신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고경환 외, 2016: 146). 한국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매년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4명을 나타냈다(고경환 외, 2016: 147). 이는 2015년 전세계 청소년 출산율이 44명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고경환 외, 2016: 146). 그러나 10-14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조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부목표 3.8은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성별 분리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표 내에 임신과 모성관련 보건 서비스의 경우 여성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성평등 관련 지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3.8.1의 경우,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추적치료로 제공되는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건강, 전염병, 비전염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필수 서비스의 평균적인 보장’의 정도를 나타내어 여성의 임신 및 모성보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한다.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였고,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07).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통하여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52,034천명이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외, 2016: 149).

IAEG-SDG(2017c)의 각 지표에 대한 Tier 구분을 살펴보면, 지표 3.1.1은 Tier I에 해당되며, WHO가 지표개발을 위한 담당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Bank가 협력기관으로 활동한다. 지표 3.1.2는 Tier I로 UNICEF가 지표개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WHO, UNFPA와 함께 협력한다. 지표 3.3.1은 Tier II에 해당하며 유엔 에이즈계획(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의 관리 아래 WHO, UNFPA가 협력하여 지표관리를 담당한다. 지표 3.7.1과 3.7.2는 각각 Tier I, Tier II로 분류되며 DESA Population Division의 주도로 UNFPA, WHO가 함께 지표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표 3.8.1은 Tier III으로써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WHO가 노력하고 있으며, UNICEF,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도 함께 논의 중이다(IAEG-SDGs, 2017c).

보건과 관련된 SDG 목표 3의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 사망비율과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기준이나 세계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HIV/AIDS 신규 발생률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과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거의 100%에 달했다. 그러나 청소년 출산율의 경우, 10-14세의 출산율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조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국내 수요를 반영한 ‘필수 보건서비스’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하다.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교육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UN, 2015). SDGs 내 교육에 대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목표 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비차별적 교육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이로우며, 특히 여성의 교육은 가족 내의 건강과 영양, 교육 증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UN, 1995). 따라서 여성의 교육은 기존의 국제 아젠다인 북경행동강령과 MDGs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MDGs 내에서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목표로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SDGs에서는 교육의 질과 중등 교육, 직업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안해정 외, 2016: 37). 특히 세부목표 4.5는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목표 4.1-3은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을 모두 언급하며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서의 성불평등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21

은 여성의 제한적인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과도 연관되어 교육과 여성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UN Women, 2015a: 18). 따라서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로 포함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이행방안 중 7개가 젠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IV-4>와 같다. 즉,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목표와 지표가 성평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 성평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4> 목표 4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4.1.1 (a) 초등학교 기간 중 2/3 이상 이수한 아동의 성별 비율, (b) 초등교육 졸업아동 성별 비율, (c) 중학교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성별 아동/청소년의 비율
4.2 2030년까지 초등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이 양질의 유아발달,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4.2.1 5세 미만의 아동 중 건강, 학습, 심리적 건강 (well-being)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성별 비율
	4.2.2 (공식 초등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성별 비율
4.3 2030년까지 대학을 포함하여 적절한 양질의 기술·직업·고등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5.1 동등성 지수(성별 ,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획득할 것을 보장	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 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 비율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4.7.1 (i) 세계시민교육과 (ii) 양성평등 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의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

12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세부목표	지표
4.a 아동·장애·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 목적의 컴퓨터, (d) 장애 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성별 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 손씻기 시설 (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세부목표 4.1은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한 지표로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초등학교 기간 중 2/3 이상 이수한 아동의 성별 비율, 둘째, 초등교육 졸업아동의 성별 비율, 셋째, 중학교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성별 아동/청소년의 비율이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 초등학교 기간 중 2/3 이상 이수한 아동의 성별 비율에 대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은 초등교육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사회에 보고 및 공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계정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초등교육을 졸업한 아동의 성별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 이수 아동의 약 49%가 여아, 52%가 남아로 집계되었다.³⁹⁾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아와 남아의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률은 각각 100%로 기초교육에서의 성별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세 번째 중학교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성별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남학생의 경우, 4.9%가 여학생은 2.2%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으로

39)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전체 아동은 472,641명이며, 이 중 여아는 226,733명, 남아는 245,908명을 차지한다. 출처:

<https://kess.kedi.re.kr/index> (접속일: 2017. 11. 27).

40) 성인지통계. 초등학교의 중학교 진학률(성별)

<https://gsis.kwdi.re.kr/gsis/kr/tblInfo/TblInfoList.html?jsessionid=8069FAB3D6E4DBC7778106B3AFFC8E36> (접속일: 2017. 11. 27).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23

나타나,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⁴¹⁾ 지표 4.1.1의 경우 (a)는 Tier III에, (b)와 (c)는 Tier II에 해당하며 UNESCO-UIS의 담당아래 OECD가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세부목표 4.2는 여아와 남아의 취학 전 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5세 미만의 아동 중 건강,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성별 비율(지표 4.2.1)’과 ‘공식 초등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성별 비율(지표 4.2.2)’을 측정한다. 이 세부목표는 기초교육 시작 전 아동이 교육을 받을 준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표의 경우 구체적인 지표의 정의와 방법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 113). 두 번째 공식 초등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성별 비율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학생 수를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유치원생 694,631명 중, 여아는 342,070명, 남아는 352,561명으로 각각 49%, 51%를 차지한다. 또한 2015년 기준 유치원 취원율의 경우, 49%로 나타났다. 즉, 국내 전체 아동의 절반 정도의 아동이 취학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여아와 남아 모두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5세 아동이 취원하는 유치원에 한정하여 유아원, 어린이집, 기타 보육원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a: 117). 지표 4.2.1은 Tier III에 해당되며, UNICEF 주도아래 UNESCO-UIS, OECD가 협력하여 지표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지표 4.2.2는 Tier I,로 UNESCO-UIS 주도아래 UNICEF, OECD가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세부목표 4.3은 여성과 남성의 양질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에 따른 고등교육과 재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3은 학교-노동시장의

41)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의 성별격차는 2.9%였는데 비해, 2016년의 성별격차는 2.7%로 감소하였다.

12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연계를 강화하고, 숙련된 직업인을 양산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a: 118). 해당 지표로는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로 국내의 경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참석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대학교육통계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참여하는 성별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2,050,619명의 대학생 중, 여자는 839,929명, 남자는 1,210,690명으로, 각각 약 41%, 59%를 차지하여 남학생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표 4.3.1은 Tier II로 분류되며, UNESCO-UIS가 주 담당 기관으로써 UNICEF, OECD가 함께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IAEG-SDGs, 2017c).

〈표 IV-5〉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성별 분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677,721	2,050,619	326,315
여자	278,246	839,929	162,008
남자	399,475	1,210,690	164,307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접속일 2017. 10. 24)

세부목표 4.5는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도농간 격차,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하여 다양한 소외집단에 대한 교육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이 지표는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동등성 지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목표 내 모든 지표들을 성별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표 4.5.1은 Tier I, II, III 모두에 해당하여 뚜렷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UNESCO-UIS의 주도아래 OECD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25

세부목표 4.6은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산술능력을 획득할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평등 관련 지표로는 4.6.1이 해당된다. 지표 4.6.1은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능력의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비율을 측정한다. 이 지표에 해당하는 국내 가용 통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지원실이 3년 주기로 측정하는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21). 국제적으로 지표 4.6.1은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해당 지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Tier II로 분류되어 있으며, UNESCO-UIS와 World Bank, OECD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세부목표 4.7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 세계시민교육과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의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지표 4.7.1)’를 측정함으로써 이행과정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과 영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행과정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연결된다. 비록 계량화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시민교육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과 교사양성에 힘쓰고 있다(조혜승, 2016; 교육부, 2017). 지표 4.7.1은 Tier III에 해당하며 UNESCO-UIS, World Bank, OECD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논의 중이다(IAEG-SDGs, 2017c).

세부목표 4.a.1은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써,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 손씻기 시설(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표가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로 분리된 이유는 특히 ‘성별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과 관련이 있다. 성별분리 화장실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의 여부는 여아

12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의 출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UNDP, 2006; Dolan et al., 2014). 관련된 지표는 ‘초중등 교육시설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가능한 자료가 일부만 존재하는 등 추가적인 자료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126). 지표 4.a.1은 최근 IAEG-SDG 세 번째 미팅을 통해 Tier II로 구분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UNESCO-UIS, UNICEF, OECD, UNEP가 논의 중에 있다(IAEG-SDGs, 2017c).

교육과 관련된 SDG 목표 4의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과 남성의 교육기회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성평등이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SDGs의 이행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데이터 구축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표 IV-6〉 목표 1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⁴²⁾

세부목표	지표
6.2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종식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 등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1]

출처: 연구진 작성

물과 위생시설에의 접근은 여성권한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여성과 여아들이 물을 길는 데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42) 목표 6의 세부목표 6.2와 지표 6.2.1를 UN Women(2017)은 성평등 지표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 물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 포함하였다.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27

특히 어린아이의 수인성 감염 발생률 감소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선된 위생 시설은 수십억 명의 여성 및 남성, 소녀 및 소년에게 비슷한 이익과 건강, 존엄, 안전을 제공한다(UN Women, 2015a: 26). UN Women은 물에 대한 가정 단위의 접근을 측정하는 지표에 “물 수집에 소요된 주간 평균 시간(공공 공급 장치 대기 시간 포함)을 성별, 나이 및 지역별로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Women, 2015a: 26).

위생시설 접근에 대한 조사는 가구 단위에서 측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성별, 연령 또는 장애와 같은 가구 내 불평등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속평가기법이나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얻은 데이터(crowd-sourced data)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는 위생서비스의 안전한 관리사용에 대한 가구 내 불평등적 접근 또는 성차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UNSDb, 2016: 6). 또한 지표 6.2.1은 Tier II로 구분되며 WHO, UNICEF, UNEP이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하수도 보급률>이 있다(통계개발원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46). 한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수도 보급율은 1997년 60.9%에서 2015년 92.9%로 증가하여 48,925천명에게 공공하수처리 시설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 하수도 보급율은 시지역이 95.1%로 농어촌지역의 67.1%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하수도 보급율 증가폭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³⁾ 그러나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된 성별분리 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현실이다.

43) e 나라지표,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481 (접속일: 2017. 11. 29.) 환경부는 매년 12월 경 「하수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목표 8에서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빈곤 탈출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UN, 2017: 7). 여성의 높은 비공식 부문 경제 참여율, 공식노동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이주여성 등의 문제 등은 북경행동강령(1995)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바 있다(UN,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3/4 이상의 남성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온 데 반하여, 여성 노동인구는 50%수준에 불과하다(UN Women, 2015a: 68).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안정하고(insecure)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하에서 일하고 있고, 남녀 간 임금 격차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된다(UN Women, 2015a: 60-121).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의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26%에 이르고, 일부 개발도상국(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75%를 웃돌고, 국제적 남녀 임금격차는 24%에 이른다(UN Women, 2015a: 62-121). 또한, 아동노동의 피해 역시 남녀 간에 상이한데,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유급, 무급 가사노동 및 인신매매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된다(UNICEF, 2006: 48). 또한, 전 세계적으로 11.5백만 명이 유급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인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73.4%로 굉장히 높은 편이며(ILO, 2016: 1-2), 열악한 근로환경 및 많은 인권 침해의 위협 하에 놓여있다.

여성의 노동과 관련되어, 성평등 독자목표 5번에서도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목표 8의 크로스커팅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는 시장에서 여성들의 유급노동과 일자리의 질,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2개 세부목표 중에서 4개 세부목표 하위의 6개 지표에서 성별분리 통계가 요청되고 있다.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29

〈표 IV-7〉 목표 8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하여 미소(微小) 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	8.3.1. 성별 비농업분야 비공식고용 비율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8.5.1. 직업별, 성별 , 장애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
	8.5.2. 성별 ,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
8.7.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	8.7.1. 성별 , 연령별 아동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 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증진	8.8.1. 성별 이민신분별 치명 또는 비치명적인 직업관련 부상 빈도비율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문안과 국내법에 기반한 노동권(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국내준수 수준

출처: 연구진 작성

이들 세부목표에서는 앞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선, 높은 비공식 부문 종사 비율(세부목표 8.3)이 세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식노동 참여와 관련해 나타나는 남녀 간 임금격차(세부목표 8.5)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SDG 목표 9번(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하의 세부목표 9.2(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고용과 국내 총생산 상 산업비율 증대)의 지표와도 관련이 된다(UN Women, 2015a: 22).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세부목표 8.7) 관련 8.7.1 지표의 경우, 7~17세 사이의 아동인구 중에서 특정 기간(최근 1주일) 동안 노동을 했다고 보고되는 아동의 비율로 정의되고 있으며, 제18차 세계노동통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악의 형태의 노동(worst forms of labour)’⁴⁴, 최소 연령 미만 아동의 노동⁴⁵, 아동

13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hazardous) 무보수 가사노동⁴⁶)에 관여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UNSD, 2016c: 13-14). 또한, 열악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의 이슈 역시 8.8 세부목표의 2개 하위지표, 직업관련 부상 비율과 ILO 문서와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의 국내준수 수준을 모니터링 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 외에도, II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세부목표 8.5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 세부목표 8.7과 관련해 강제노동 관련 현황, 세부목표 8.9와 관련해 지속가능관광 계획/프로그램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데에 관한 논의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 지표에 대한 성별분리 여부도 추적될 필요가 있다. IAEG-SDGs(2017c)에 의한 지표의 분류현황을 살펴보면, 지표 8.5.2(Tier I)와 8.8.2(TierIII)를 제외하고는 모두 Tier II에 해당한다. 각 지표는 모두 ILO의 주도아래 구체적인 지표구축과 관리가 이루어진다(IAEG-SDGs, 2017c).

관련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표 8.3.1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조사>나 <임금근로실태조사>에서 무임금 가족노동 종사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22-223).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조사> 상의 성별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율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무급가족종사⁴⁷)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약 7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표 참고)

- 44) 인신매매, 강제노동 및 담보노동(forced and bonded labour), 상업적 성매매, 불법 행위 및 무력분쟁 관련 노동 등을 포함한다(ILO, 2009:66).
- 45) ILO Convention No. 138의 2항에서는 의무교육 이수연령 미만 혹은 15세 미만을 최소 노동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국가의 경우, 14세를 최소연령으로 할 수 있다. 또한, 15~17세 사이의 아동노동은 허용되기는 하지만 건강과 안전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노동은 건강과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노동(light work)’ 한해 허용된다(ILO, 2009:60).
- 46) 장시간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과 위험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무보수 가사노동을 의미한다(ILO, 2009:61).
- 47)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을 종사하는 사람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http://kostat.go.kr> (접속일: 2017. 12.19))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31

〈표 IV-8〉 성별 비임금 근로자수

단위: 천명

성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6,857	5,697	1,559	4,137	1,160
남자	4,200	4,044	1,152	2,892	156
여자	2,657	1,652	407	1,245	1,005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6026&conn_path=I2, 접속일:
2017. 11. 29.)

지표 8.5.1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를 참고할 수 있으며,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이 지적된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29). 한편, 8.5.2 지표의 실업율과 관련해서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성별 분리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율이 3.2%, 남성의 경우, 3.4%, 여성의 경우, 2.9%로, 남녀 간 실업율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31-232).

아동노동과 관련된 8.7.1 지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상에서 진로 및 아르바이트 항목을 통해 12-17세 아동의 성별, 가족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형태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12세 이하의 아동노동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35-6).

마지막으로, 8.8.1 지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생산하는 <산업재해현황조사>가 성별, 연령별, 원인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산업재해현황, 사망재해, 업무상 질병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며(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38-239), 8.8.2와 관련해서는 메타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된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239).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 10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평등은 사회적 통합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UN Women, 2015a: 27). 최근 국제기구의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였다(ILO·IMF·OECD·World Bank, 2015). 기존의 MDGs내에서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이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MDGs는 저개발국의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선진국 내에서의 불평등 완화까지 초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199).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목표 10은 총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부목표 10.2와 지표 10.2.1은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로 분리된다.

〈표 IV-9〉 목표 10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0.2.1 성별 ,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위소득보다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3]

출처: 연구진 작성

세부목표 10.2는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현황을 집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입과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202). 지표 10.2.1은 성별분리 데이터를 지표로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나누어 살펴보게끔 한다. 이는 여성이 경제위기와 빈곤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UN, 1995). 이 지표는 앞서 언급된 세부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33

목표 1.1과 1.2의 지표 1.1.1, 1.2.1, 1.2.2와도 연동되어 집계될 수 있다. 지표 10.2.1은 Tier III으로 분류되며, World Bank가 보다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주관하고 있다(IAEG-SDGs, 2017c).

지표 10.2.1에 대한 국내 가용 데이터로는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로 분기별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처분가능소득⁴⁸⁾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203). 이에 따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9>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전체 인구비율이 13.8%라면, 남성은 11.5% 여성은 15.9%의 비율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별 중위소득 50%이하 비율 (단위: %)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9	15.2	14.6	14.6	14.4	13.8
남성	13.3	13.4	12.8	12.5	12.1	11.5
여성	16.3	16.8	16.3	16.5	16.4	15.9

출처: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p 286

한편, UN Women(2015a)에 따르면 10.2뿐만 아니라 10.1도 성평등과 관련되며, 10.3과 10.7도 역시 성별분리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세부목표 10.1의 경우,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소득 하위 40%의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중대율을 측정하는 것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하위 40% 중에서도 미혼모는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서 이들의 소득성장률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UN Women, 2015a: 27). 따라서 성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48) 처분가능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인 조치로 세부목표 10의 지표 내 성별분리 지표를 확대하여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안전한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각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든지 안전한 공공장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특히 성추행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매일 발생하는 성폭력 형태 중 하나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들은 거리, 대중교통, 공원, 학교, 직장, 공공위생시설, 하물며 그들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UN Women, 2015a: 28).

〈표 IV-11〉 목표 11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성별 ,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1.7.1. 성별 ,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 ⁴⁹⁾
	11.7.2. 성별 ,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49)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1.pdf>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35

지표 11.2.1은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을 측정한다. 여성과 대중교통은 여성의 경제역량을 강화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개도국의 경우, 여성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여성의 생산활동과 시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여성 경제역량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 여성들은 농어촌에서 산지에서 생산한 물자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시장에 팔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에의 접근은 산지와 시장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집안일, 육아 및 돌봄, 생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이동경로는 남성의 이동경로와는 다르게 관찰되고 있으며 여성의 이동 경로에는 단순히 직장과 집 이외에도 어린이집, 슈퍼마켓 등의 장소 등이 추가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노선도를 수립하는 것은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2015년 방갈로르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캠페인의 두 번째 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과 편리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UNSD, 2016d: 4) 관련 데이터 역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여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UNSD, 2016d: 4).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통계국에서는 목표 내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인 ‘(1) 거리에 따른 접근성, (2) 에너지 효율성, (3) 대중교통 확장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SD, 2016d: 4). 지표 11.2.1은 Tier II에 해당하며, UN-Habitat, UNEP,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가 지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IAEG-SDGs, 2017c).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와 <국가교통조사>가 있다. (통계개발원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215). 이 통계들은 매우 세분화 되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통계들 중 일부에서는 임산부, 어린이,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를 교통 약자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 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7%인 1323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말보다 18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⁵⁰⁾ 이 중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중 여성의 비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교통 약자라는 그룹의 분리만으로는 여성의 대중교통 접근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부목표 11.7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명시하는 목표이며, 지표 11.7.1은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을 측정한다. 지표 11.7.1에서 언급하는 공공 공간에는 공공의 소유 토지이며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된 공적 공간으로 거리, 보도 광장, 정원, 공원, 보전 지역 등의 다양한 환경이 포함된다(UNSD, 2016d: 21). 도시 공공 공간의 개선과 유지는 커뮤니티 응집력, 도시 정체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충분한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역량강화 및 제도적, 정치적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면 공공 공간 감소는 삶의 질, 사회적 포용, 인프라 개발, 지속가능 환경,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UNSD, 2016d: 21). 지표 11.7.1은 Tier III으로 분류되며, 지표에 대한 추가개발을 위해 UN-Habitat이 주요 담당기관으로 관여하고 있다(IAEG-SDGs, 2017c).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토지소유현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이 있다. 한국에서 토지소유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도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⁵¹⁾ 그러나 이 통계로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율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항목 확장이나

50) http://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093046615865616&mediaCodeNo=257&OutLnkChk=Y (접속일: 2017. 11. 29)

51) e- 나라지표,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2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37

세분화가 필요하다.

지표 11.7.2.는 지난 12 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겪은 15 세 이상 소녀 및 여성의 수 (최신 괴롭힘의 가해자 및 발생 장소 별로 분류)를 측정한다. 현재 다수의 국제기구, 각국의 입법부 및 법원은 성희롱을 금지 시켰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공통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성희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직장 생활이나 교육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쾌하고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측정한다. 보편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비교는 어렵다. 현재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28개 유럽연합 국가에서만 존재한다(UNSD, 2016d: 26).

2014년 유럽연합의 인권청(European Fundamental Rights Agency)은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다룬 11가지 성희롱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UNSD, 2016d: 26-27).

- 불쾌한 만지기, 포옹 또는 키스
-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제안 의견이나 농담
- 데이트에 대한 부적절한 초대
- [응답자]의 사적인 삶에 대한 관여하여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질문
- [응답자]의 신체, 외모에 대해 관여하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의견
- 응답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응시 또는 유혹
- 피고용인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림, 사진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을 [응답자]에게 과격하게 노출시키는 행위
- 누군가가 [응답자]에게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음란물을 보게 하는 행위
-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원치 않는 이메일 또는 SMS 메시지
- 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또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공격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는 공공장소가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UNSD, 2016d: 27). 지표 11.7.2는 여성과 소녀들의 자치권과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으며, 목표 5.2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철폐), 8.8 (노동권과 안전한 근무 환경 보호) 및 16.1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동 지표는 Tier III으로 분류되며,

13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지표에 대한 추가개발을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주요 담당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UN Women과 UN-Habitat이 협력하고 있다 (IAEG-SDGs, 2017c).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국가승인통계인 <성희롱 실태조사>가 있다.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7,844명) 응답자의 6.4%으로 나타났으며, 남성(1.8%)보다 여성(9.6%), 관리직(4.6%)보다 일반직원(6.9%), 정규직(6.4%)보다 비정규직(8.4%)이 더 높았다. 연령적으로는 40대 미만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회식장소가 44.6%로 1위, 직장 내가 42.9%로 2위로 집계되었다.⁵²⁾ 성희롱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 장애유무, 취업여부로 분류되어 있으며, 발생 장소도 분류하고 있어 지표 11.7.2.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다.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표 IV-12〉 목표 13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3.b.1. 여성 ,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하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출처: 연구진 작성

52) [여성가족부]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http://hrmc.co.kr/ab-law_column_board2_v-20 (접속일: 2017. 11. 29)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39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소녀들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룹이며,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가사노동시간도 늘어나게 된다.⁵³⁾ 예를 들면, 댄감이나 식수를 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등의 행위를 여성과 소녀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 여성과 소녀들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수용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당사자들이며, 또한 이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고 가정 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등 그들의 경험을 통해 기후와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상황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여성의 지식, 기술 및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⁴⁾

동 지표의 정의 및 계산 방법으로는 여성, 청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배양하는 전문 지원을 받는 최빈개발도상국(LDCs)의 수(UNSD Goal13, 2016: 14)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도입한 근거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가시화되고 극심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기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이 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대책과 지속가능한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이하 GFCS) 고위급 기획단은 아직 기후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지 못한 70개의 나라들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의 중점 분야/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1.5, 2.1, 6.1, 6.4, 6.5, 7.1, 9.1, 11.3, 11.5, 12.8, 13.1, 13.2, 14.2, 15.3의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이를 지원한다(UNSD, 2016e: 14)⁵⁵⁾ 또한 지표 13.b.1은 Tier III에 분류

53) <http://www.unwomen.org/en/news/in-focus/climate-change>

54) Ibid.

55)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3.pdf>

14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되며, 유엔최빈국-내륙국고위대표실(United Nations Office of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HRLLS), 군소도서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등의 다양한 기관이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본 지표는 최빈개발도상국의 수를 지표로 선정하고 있어 한국에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표 13번의 기본 취지와,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13.b.1 지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정부도 기후변화와 젠더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관련 통계에 있어서 성별을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본 지표의 한국적 맥락에의 적용을 도모할 수 있다.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6에서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평화와 사회적 포용, 사법 접근권 강화 및 제도의 효과성·책임성·투명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목표 하에는 16개 세부목표와 23개 지표 중에서, 폭력 및 사망, 아동에 대한 학대·착취·매매·폭력과 관련된 3개 세부목표(16.1, 16.2, 16.7)의 6개 지표(16.1.1, 16.1.2, 16.2.2, 16.2.3, 16.7.1, 16.7.2)에서 성별로 분리된 지표가 수립되어 있으며, 성별로 구분된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16.1 세부목표 하의 두 지표(16.1.3, 16.1.4) 역시 여성과 관련이 많은 지표들로 보인다. 16번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세부목표 및 지표들은 성평등 독자목표 5번의 ‘세부목표 5.2.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41

불평등을 완화'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동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UN Women, 2015a: 28).

목표 16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및 착취 문제는 일찍이 북경행동강령에서부터 강조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D.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과 무장분쟁(E. Women and armed conflict) 등 여성의 인권(I. Human rights of women), 여아(L. The girls child) 등 12개 전략목표 및 행동 중 4개에 걸쳐 다루어질 정도로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역시,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1979년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의 언급(UNSD, 2016a)을 시작으로,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전략 목표 및 행동 중 하나로 다루어진 바 있다.

〈표 IV-13〉 목표 16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	16.1.1. 성별 , 연령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인구 10만명당)
	16.1.2. 성별 , 연령별, 원인별 분쟁 관련 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
	16.1.4. 거주지 주변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2. 성별 , 연령별, 착취 유형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16.2.3. 18-29세 사이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 을 경험한 인구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반응적(responsive), 포용적, 참여적,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1. 국내 전체 대비 공공기관(중앙/지방의 임법부, 공공서비스, 사법부)에서의 (성별 , 연령별, 장애 여부별, 인구집단별) 비율
	16.7.2. 성별 ,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의사결정 과정이 포용적이고 반응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 주: 성별 분리된 지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과 관련된 지표라고 생각됨.

출처: 연구진 작성

14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우선, 16.1 세부목표에서 제기되고 있는 젠더기반폭력과 관련된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35%의 여성이 일생에 한번쯤 파트너 혹은 파트너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WHO, 2013: 2), 파트너나 가족에 의한 살인으로 사망한 남성의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거의 50%에 이른다고 보고된다(WHO, 2013: 2; UNODC, 2014: 14; UN Women, 2015a: 28). 또한, 거리 등 공동장소에서의 성희롱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젠더기반 폭력과 관련된 한 이슈로서 주목받고 있다(UN Women, 2015c: 2).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서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3%의 여성이 지난 1년 간 길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도 여성 4명 중 1명은 보행 시 두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5명 중 1명은 길을 건다가 언어적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을 만성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집과 직장을 잃게 하고 모성보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⁵⁶⁾ 지표 16.1.1은 Tier I에 해당하며 UNODC, WHO, UNDESA Population Division이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AEG-SDGs, 2017c). 지표 16.1.2는 Tier III으로 분류되며, OHCHR이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주무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IAEG-SDGs, 2017c).

한편, 16.2 세부목표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중 여성 및 여아의 비율은 71%에 달하며, 인신매매 피해 아동 중 거의 3/4이 여아이며, 여성 및 여아 인신매매 피해자의 3/4이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 된 것으로 보고된다(UNODC, 2016: 7, 28). 또한, 아동성폭력 역시 심각한데, 전세계 여아 10명당 한명 꼴인 1.2억명의 여아들이 인생에 한번쯤 성경험 혹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성폭력은 주로 남편, 파트너, 남자친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된다(UNICEF, 2014: 167). 지표 16.2.2와 16.2.3 모두 Tier II에 해당되며, 16.2.2는 UNODC

56) UN Women 웹사이트.

(<http://beijing20.unwomen.org/en/in-focus/armed-conflict>, 접속일: 2017. 11. 29.)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43

가 16.2.3은 UNICEF가 주요 기관으로 설정되어 지표개발을 위한 추가논의를 진행 중이다(IAEG-SDGs, 201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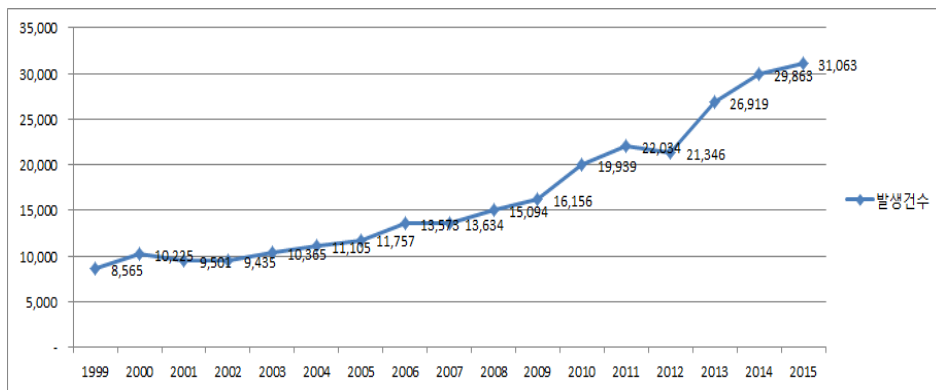
또한, 16.7 세부목표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문제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상하원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3.3%이며, 지역별·국가별 편차가 존재해 북유럽 국가의 경우, 41.7%로 비교적 높은 반면, 아랍, 태평양, 사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약 15~23% 정도로 여성 대표성이 낮은 편이다(IPU, 2017).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성이 국가원수인 국가는 전세계 152개국 중 11개국(7.2%), 여성 총리가 있는 국가도 193개국 중 11개 국가(5.7%)에 불과하다(IPU, 2017). 국회의장이 여성인 국가 역시 전체 278개국 중 53개국(19.1%) 뿐이다(IPU, 2017). 지표 16.7.1과 16.7.2 모두 Tier III에 해당되며, UNDP가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 설정되어 추가논의를 진행 중이다(IAEG-SDGs, 2017c).

관련하여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6.1 세부목표와 관련해 분쟁과 관련된 지표(16.1.2)와 의사결정 과정이 포용적이고 반응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에 대한 지표(16.7.2)⁵⁷⁾ 외에는 관련 지표들이 성별로 분리된 통계에 의해 모니터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및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을 통해 살인범죄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집근처의 야간통행에 대한 안전체감도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427-428, 430-434; 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516-518). 우선,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 피해자 35,139명 중 여성이 84.3%(29,617명)을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력범죄의 피해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516, 517). 또한, 야간보행에

57) 16.7.2 지표의 경우 글로벌 메타데이터 조차 부재한 상황이며, 따라서 그 정의와 측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해 지표 설정이 어려움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14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대한 안전도 체감과 관련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2016년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집 근처에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전체응답자의 비율이 40.9%, 남녀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9.4%, 52.2%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밤길 보행 안전에 훨씬 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⁸⁾



[그림 IV-1] 성폭력 피해건수 증가추이 (1999-2015)

한편, 16.2 세부목표의 2개 지표(16.2.2, 16.2.3)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별, 연령별로 분리된 통계가 존재하며(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438-440), 검찰청의 <검찰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에서는 성별, 연령별로 분리된 성폭력 통계자료가 존재한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441-442; 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518). 우선, 경찰청의 2016년도 경찰범죄 통계에 따르면, 폭력범죄 중에서 약취·유인의 발생건수가 총 201건이며, 그 건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이 중 남성 피해자가 60명, 여성피해자가 141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피해자가 2~3배 정도에 이르고, 20세 이하의 피해건수가 42건에 이르는 등 아동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

58)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6SA131R&conn_path=I2, 접속일: 2017. 11. 29.)

IV.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45

난다.⁵⁹⁾ 한편, 성별,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31,063명 중 여성이 27,959명, 남성이 1,448명으로 여성 피해자가 약 2배에 달하고, 이중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9,01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29%에 달하며, 이를 남녀로 분리시켜 보았을 때, 여성 피해자가 8,499명, 남성 피해자가 566명으로, 여아 및 여성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518).

또한, 16.7 세부목표 하의 16.7.1 지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구·시·군의회의원선거총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을 통해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를 성별로 분리해 파악할 수 있고(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468-469), 안전행정부에서 생산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통계>를 통해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및 관리직의 남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472-475). 2016년도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전국구에 각각 입후보한 934명, 158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98명, 75명이 여성으로 여성할당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구 여성입후보자는 10% 수준에 불과하고, 당선자는 지역구의 경우 253명 중에서 26명, 전국구의 경우, 47명 중에서 25명으로, 마찬가지로 지역구 당선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468). 한편, 정부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44.8%로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보이지만(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472), 정부 내 5급 이상의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16.6%, 지방정부의 경우, 11.6%로 여성 대표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474).

59)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501&conn_path=12, 접속일: 2017. 12. 4)



V

정책과제

1. 연구의 요약	149
2. 분야별 정책 제언	150
3. 향후 연구 과제	160



1. 연구의 요약

2015년 국제사회는 MDGs를 계승한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SDGs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달성을 약속하였다. SDGs에서는 독자적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설정하였으며, 그 외 10개의 목표에 젠더 이슈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어 있다. 이러한 성평등 주제의 독자성과 포괄성은 성평등의 달성 없이는 SDGs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SDGs 체제에서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그 이행에 동참해야 함을 고려할 때, 국내의 성평등 관련 지표의 점검 및 정책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적 맥락을 토대로, 본 연구는 SDGs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를 분석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검토, 국내 가용 통계를 매칭 및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SDGs 성평등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지표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일부 성평등 관련 지표에 관련하여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FGM/C) 등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SDGs의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맥락을 반영한 대안 목표 및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적합한 가용통계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 통계 생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SDGs 내 성평등 관련 목표의 이행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SDGs 성평등 관련 목표의 로드맵 수립과 실질적 달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

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2. 분야별 정책 제언

가.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SDGs의 방대한 주제와 부처 간 협치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SDGs의 이행은 2000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가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의 개별 위원회로서는 SDGs의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국 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9;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4-5)⁶⁰).

국내 SDGs 이행을 총괄할 기구의 정부 내 위치로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한국 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10). 그러나 SDGs 이행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할 경우,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동급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 경우 두 위원회를 포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322). 한편 SDGs 이행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이 갖추어 질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322). 이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SDGs의 대외 이행방안을 전담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 분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국내이행을 전담하면서 대외 이행과 함께 조율하는

60) 이 부분은 본 연구를 진행하며 개최된 자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2017년 한국의 VNR을 제출한 부처가 환경부가 아니라 외교부였다는 점은 SDGs 이행을 위해 국내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고려된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322). 아울러 이러한 편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⁶¹⁾

SDGs 이행 기구의 설립이후에는 기구 내 분야별 작업반(working group)이나 성평등 주제의 분과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분과위원회 설립 후에는, 바로 국내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독자 목표 5번 내 세부목표와 지표, 그리고 성평등이 크로스 커팅된 목표들에 대한 해석 작업이 선행되고 용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어서 각 세부목표 별로 순차적으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지표의 국내 가용 통계 및 현황, 한국적 정합성, 대안지표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국내 성평등 관련 정부 관련 부처,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포함할 것과, 향후 2030년 이행목표 달성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환경, 교육, 보건, 성평등, 도시, 물 등 SDGs 내 특정 목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자문, 조정, 협치를 담당할 주무부처가 필요하다. SDGs는 각 세부목표 간 연계성이 높으며 지표들도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타 섹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타 섹터의 경우에도 성평등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 온전한 목표달성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위한 주무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적합하다.

나.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법·정책에 주류화(통합)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별도의 법·정책의 수립의 경우,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법이 수립되고, 그 아래 성평등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이행 방안은 동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SDGs 국내이행 거버넌스

61) 2017. 12. 05.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자문회의

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독자적 법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SDGs 관련 독자적 법 수립이 어려운 경우, 정부합동의 정책을 수립하고 성평등 조항을 보다 자세하게 포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은 기존의 법·정책에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미 이행 중인 메커니즘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노력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과 이행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성가족부가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평등위원회에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맡기는 것이다. 특히 다부처 간의 협치가 필요한 크로스커팅 이슈를 고려할 때,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SDGs는 글로벌 목표 수립 프로세스부터 참여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SDGs의 기본정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 학계, 지방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기관에서는 SDGs를 기관의 임무(mandate)와 사업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 정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전반 프로세스를 주도하여야 한다. 향후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컨트롤 타워가 확정되고 나면,

62) 2017. 12. 05.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자문회의

성평등 이행을 위한 주무부처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SDGs 컨트롤 타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어느 부처도 SDGs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⁶³⁾ 성평등 이슈는 특히 다른 여러 목표에 주류화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 지정과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 확인된 가장 시급한 과제는, SDGs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와 교육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정부 내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SDGs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부처 간 협조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⁶⁴⁾ 성평등 목표와 관련하여는 정부 내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산하 기관이 먼저 자체 교육을 통해 SDGs와 성평등 목표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어 국내 관련 부처 담당관들을 교육시키는 작업을 담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과 훈련에 관해서는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기관 및 학계

국내 젠더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추적과 분석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SDGs와 관련된 기초연구와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이행을 도울 수 있다. 아울러 SDGs와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대학교에서의 SDGs 관련 강의 개설 등을 통해 SDGs 성평등 목표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고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3) 시민사회

63) 2017. 12. 05.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자문회의

64) 2017. 12. 05. 자문회의

15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시민사회는 SDGs를 도전이면서도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이성훈(2016)은 SDGs는 기존의 활동 영역, 이슈, 국제 및 국내 등으로 분절화 되어 있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넘어 연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SDGs는 그 통합적인 특성 상, 기존의 시민사회의 활동을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와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훈, 2016).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시민사회이 역할은 <표 V-1>와 같이 국내과 모니터링·애드보커시를 통한 기여로 그 역할을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V-1>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국내 이행	국제(대외) 이행
직접실행 (service deli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국내 현장 사업을 통한 SDGs 이행 기여 • 기업의 CSR 사업 등 다자간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서의 직접 사업을 통한 SDGs 이행에 기여 • 다자간 파트너십 참여(예:DAK)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SDG 이행 평가에 참여 • 대안적 지표 개발 및 독립적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정책 변화를 위한 국내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차원의 SDG 이행 평가 과정 참여 • 대안적 지표 개발 및 독립적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정책 변화를 위한 국제 캠페인

출처: 이성훈 (2016)

성평등 관련 국내 시민단체들도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해 위의 <표 V-1>에서 제시된 역할을 성평등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SDGs의 각 세부목표들은 지난 40여 년간의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간의 글로벌 여성 인권 운동의 토대위에 설정되었다. SDGs의 목표의 이행은 따라서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여성 인권 이슈를 대내외적으로 환기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게 SDGs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 이들은 국내외 사업 수행을 통해 SDGs 성평등 및 크로스 커팅 목표를 직접 수행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모니터링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국내에

SDGs 성평등 목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이행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단체

1995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 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지자체와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업 활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며, 아래로부터 위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등 SDGs에서 천명한 기본원칙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10).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는 최근에는 이 민관파트너십이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적 경제, 인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이슈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10). 2017년도에는 성평등 지표 이행을 위한 지역차원의 모니터링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성평등 세부목표의 국내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내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수립된 후 본격적으로 SDGs 이행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구축된 데이터나 통계를 발굴하여 지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의 이행 모니터링을 작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 이들의 지역차원의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해서 본고와 같은 SDGs 성평등 지표의 해석, 성평등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 통계청의 지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⁶⁵⁾

5) 통계관련 기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개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다른 특성별로 분리된 통계에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현재 SDGs 내 232지표의 23퍼센트정도(53개의 지표)에 젠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65) 2017. 12. 05.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자문회의

잘 정비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접근은 SDGs를 모니터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⁶⁶⁾ 우리나라에서 SDGs지표의 통계관리는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내용적인 측면은 통계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SDGs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통계의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지표의 정의와 통계의 상태를 결합한 범주화가 필요하다. 먼저 <표 V-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횡축은 지표의 정의에 완성도에 따른 구분이다. 지표의 개념이 확실하고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여 산출이 가능한 지표와 조작적 정의가 논의 중인 지표로 구분이 가능하다. 종축은 통계의 산출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통계가 생산되고 있어, 지표의 정의에 적합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범주와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V-2> 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통계의 구분

통계유무	정의확실성	지표의 정의가 확실	정의가 불확실
	통계있음	I	III
통계없음	II	IV	

출처: 연구진 작성

그룹 I은 지표의 정의가 확실하고 필요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당지표의 통계치를 측정, 발표하는 일이 필요하다. 발표시에는 성별 구분에 더하여 다른 세분화 변수인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출신국별 등과 어떤 수준으로 결합하여 발표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해당 통계가 복수로 생산되고 있을 경우 지표의 목표에 부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룹 II는 SDGs 지표의 조작적 정의가 확실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

66) http://www.data2x.org/wp-content/uploads/2017/09/Ready-to-Measure-Phase-II_Report.pdf

운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표 5.2.1인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정의는 확실하지만 현재 성적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범주의 지표들은 향후 생산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영실 외 (2016)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사과정별 데이터 세분화 저해 이슈 및 대안”을 참고할 수 있다(박영실 외, 2016: 7). 이 보고서는 성을 연령, 소득 등 다른 변수와 함께 데이터 세분화 변수의 하나로 포함하여,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념정의, 조사표 설계, 표본설계 등을 하는 조사설계 과정에서 세분화 저해요소는 비일관적 용어, 개념, 취약 집단 배제 등을 들고 있고, 대안으로는 국제표준메타데이터, 대안적 표본추출을 제시하고 있다. 성별 통계에 적용하여 본다면 조사설계 시 성별분리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를 하거나, 조사표 항목에 포함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룹 III은 현재 지표의 정의가 불확실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지표들이다. 이 지표들의 측정을 위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조작적 개념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에서 의회비율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지만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은 현재 확실하지 않다. UN Women의 제안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의 여성비율”로 지방의회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 주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룹 IV는 지표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통계의 생산도 어려운 경우이다. 이 그룹의 통계는 개념의 확실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된 이후, 통계의 생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에서 SDGs 지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SDGs 목표 5성평등 목표와 크로스커팅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성평등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필요한 성인지 통계의 분석과 발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의 로드맵 구축을 제안한다. 2015-2020년의 첫 5년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20-2025의 다음 5년은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2025-2030의 마지막 5년은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단계에서의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다. 향후 전문가 작업반이 구성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⁶⁷⁾ 또한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갱신하여 향후 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67) 2017. 12. 05.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자문회의

2015

2020

2025

2030

글로벌
이행

- 제6차 IAEG-SDGs 회의 (17년 11월): 데이터 세분화 및 정의
- 제6차 및 제7차 HLPF 회의 (18년 7월 및 '19년): SDGs 목표 6, 7, 11, 12, 15/ SDGs 목표 4, 8, 10, 13, 16, 17 각각 나누어 검토 및 국가별 VNR 보고서 검토
- G20 회의 개최('18년 11월): SDGs 포함되어 논의
- AIEG-SDGs 최종제안서 작성('19년 9월): 추가지표 검토('17 월), 공개자료 개최('18 월) 등
- Tier III 지표 개발('2020년까지): 방법론 완성 및 보완, 상호화, 데이터 수집 등

국내 성평등
목표 이행

-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성평등 작업반(분과위) 수립
- 세부목표 별 해석 작업 수행
- 국내 이행을 위한 지표 매핑 및 대안지표 개발
- 글로벌 논의 업데이트
- 2019년 9월까지 1차 이행 점검 후 향후 4년 계획 수립

- UN 및 국제사회 차원의 5년 주기 SDGs 이행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 (계속)
- 고위급 국제포럼 (계속): G20 회의 및 HLPF
- 지표 관련 AIEG-SDGs 최종제안서 후속 논의 (계속)

- <이행을 위한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 글로벌 성평등 목표 이행 논의 업데이트
- 해외 벤치마킹 사례 및 모니터링 연구
-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UN 및 국제사회 차원의 5년 주기 SDGs 이행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 (계속)
- 고위급 국제포럼 (계속): G20 회의 및 HLPF
- 지표 관련 AIEG-SDGs 최종제안서 후속 논의 (계속)

- <모니터링 및 평가 >
- 성평등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림 V-1] SDGs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로드맵

3. 향후 연구 과제

마지막으로 SDGs와 관련한 연구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SDGs에 대한 중요성과 성평등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연구의 진행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그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확장된 연구가 생산될 것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SDGs는 달성 기한이 정해진 목표이므로 연구의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연구 필요 분야는 글로벌 차원, 국내 이행 차원 그리고 국외 이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논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예를 들면 2번 세부목표 내 여성과 소녀의 빈혈수가 지표로 포함되기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임신부의 재생산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목표 달성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내 이행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정부가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또한 요구된다. 특히 독자목표 이면서 크로스커팅 목표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 및 개도국 정부들의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매핑(mapping)과 작업은 향후 국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성평등 독자 목표 이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 작업반에서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해석, 지표 확정, 대안지표 개발 작업들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위한 기초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아젠다를 세팅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수행된 다음에는 이를 분석하고 향후 단계를 제시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성평등 목표를 분석한 가이드라인이 가장 시급히 필요함이 제기되었다.⁶⁸⁾ 아울러 크로스커팅 목표들에 대해서도 동일

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섹터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s 성평등 목표의 국외 이행에 대한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정부의 ODA 사업 내에서의 성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ODA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ODA의 비중도 전체 ODA의 약 10% 정도로 낮고, KOICA를 제외하고는 성인지적 ODA 수행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발되고 보급된 성인지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부처의 ODA 담당관들의 성인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계와 관련 하여는 성평등 목표, 크로스커팅 목표 이외에도 SDGs의 전 지표의 성인지적인 해석과, 성별 분리 가능 통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 정신에 따라 데이터를 성, 연령별 등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비단 성평등 목표와 크로스커팅 지표들뿐만 아니라, SDGs의 모든 목표에 대해 성별분리 필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작업도 요구된다.⁶⁹⁾ 아울러 기존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소개, 비교하는 작업, 글로벌 지표 중 국가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대해 국별 비교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작업 등도 수행된다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풍성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8) 2017. 12. 05. 자문회의

69) 2017. 11. 23. 통계청 주무관, 서면 자문



참고문헌

- 강상인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상인, 이현우, 추장민, 김종호, 김충기 (2015).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경환, 장영식, 임달오, 최영준, 고금지, 김솔휘 (2016). **UN SDGs 보건·복지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고재경, 주정현 (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16).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관계부처합동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7년 업무계획: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 교육부.
- 권율, 이상미, 유애라, 송지혜 (2015).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15(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성규, 김지혜, 임소영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804).
- 김수진 (2016).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2): 79-113.
- 김은경, 장은하, 이미정, 김영택, 광서희, 조영숙 (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김지현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 1-35.
- _____ (2016a). SDGs 지표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25, 1-40.
- _____ (2016b).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개발과 이슈**, 26, 1-16.
- 김찬유 (2015). Post-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국제개발협력**, 2015(2), 21-36.
-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 연구**, 25(1), 81-125.

16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 명수정 (2016).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영실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모색, **국제개발협력**. 2, 45-76.
- 박영실, 박효민, 이영미, 김월화(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통계개발원 2016년 하반기 보고서.
- 박지연, 문경연, 조동호 (2016).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 201, 19(4), 123-147
- 박치성, 이영범 (2017). SDGs 이행을 위한 한국 개발협력 조직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 **한국행정학회 2017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학술발표 논문집**. 4051-4072.
- 안해정, 서예원, 윤종혁, 김은영, 임후남, 박환보, 최동주, 김명진, 이정화 (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오수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연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오수길, 윤경효, 김시내, 람후 몽크라능, 운드라흐바야르 출몽 (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선주, 변화순, 박성정 (2010).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성훈(2016). **한국정부의 UN 지속가능(개)발전목표(SDGs) 국내외 이행전략: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학회 - 한국개발정책학회 세미나.
- 이수형 (2016).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과 이행 전략: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42(0), 96-114.
-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주재선, 정수연, 조윤주 (2016).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임혜숙 (2015).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금나 (2014). Goal 5-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한국국제협력단 (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p.85-107). 성남: 한국

국제협력단.

- 조을생, 노태호, 강택구, 김선아, 박준현, 박준희 (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 보고서.
- 조혜승 (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1(2), 153-195.
- 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재현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4(0): 99-109.
-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I. 해설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16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II. 글로벌 지표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isis.kisa.or.kr/board/?pageId=060100&bbsId=7&itemId=817&searchKey=&searchTxt=&pageIndex=1> (접속일 2017. 12. 18)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 7. 1.). URL: <http://www.odawatch.net/470563> (접속일: 2017. 12. 15.)
- 홍은경 (2016).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국제개발협력**, 2, 15-43.
- Amnesty International (2012).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Antonopoulos, R. (2009). *The unpaid care work - paid work connection* (Working Paper No. 8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Barton, C. (2005). Where to for Women's Movements and the MDGs?. *Gender and Development*, 13(1). 25-35.
- Ras-Work, B.. (2006). *The Impact of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on the Girl Child*. UN Expert Group Meet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Girl Child (EGM.DVGC/2006/EP.4).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 UNICEF.

- Dolan, C. S., Ryus, C. R., Dopson, S., Montgomery, P. & Scott, L. (2014). A Blind Spot in Girls' Education: Menarche and its Webs of Exclusion in Ghana.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6, 643-657.
- Esplen, E. (2015). *Progress for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303), 14.
- FAO (2011).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11*.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_____(2014).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errant, G., Pesando, LM,, & Nowacka, Keiko (2014). *Unpaid Care Work: The missing link in the analysis of gender gaps in labour outcomes*. OECD Development Centre. https://www.oecd.org/dev/development-gender/Unpaid_care_work.pdf (접속일: 2017.10.19.)
- Howard, R. (1993). Health Costs of Social Degradation and Female Self-Mutilation in North America, in Kathleen Mahoney and Paul Mahoney (ed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Dordrecht, Boston, MA Et London: Martinus Nijhoff.
- IAEG-SDGs (2015). *Indicator Proposals received from agencie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1st Meeting of IAEG-SDGs, <http://www.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1> (접속일: 2017.10.19.)
- _____(2016). *Work Plan for Tier III Indicator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https://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4> (접속일: 2017.10.19.)
- _____(2017a). *Agenda Items 5 at the 5th Meeting of IAEG-SDGs*, <https://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5> (접속일: 2017.11.10.)
- _____(2017b). *Overview of Standards for Data Disaggreg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6/> (접속일: 2017.11.10.)
- _____(2017c).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 15 December 2017*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접속일: 2018. 1. 4.)
- IPU (2017). *Women in Politics: 2017*. Inter-Parliamentary Union.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infographics/2017-03/women-in-politics-2017>

- ILO (2009). *Report of the Conferenc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24 November-5 December, 2008*.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_____(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_____(2016). *Migrant Domestic Workers Across the World: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LO·IMF·OECD·World Bank. (2015).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 Group.
- OHCHR (n.d.). *Information Seri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armful Practices, Especially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iation*.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RGS/SexualHealth/INFO_Harm_Pract_WEB.pdf (접속일: 2017. 10. 05.)
- SRI (2013). *Analysis of the Language of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s. Sexual Rights Initiative*. Sexual Rights Initiative (SRI).
(URL:<http://www.sexualrightsinitiative.com/wp-content/uploads/SRI-Analysis-of-the-Language-of-Child-Early-and-Forced-Marriages-Sep2013.pdf>, (접속일: 2017. 12. 16.)
- Swiebel, J. (1999). *Unpaid Work and Policy-Making Towards a Broader Perspective of Work and Employment* (DESA Discussion Paper Series No. 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Temin, M. and Levine, R. (2009). *Start with a Girl: A New Agenda for Global Health*.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2016 National Voluntary Review-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UN. (n.d.).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Fact Sheet No. 23).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df> (접속일: 2017. 10. 05.)

16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_____(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UN Fourth Conference on Women.

_____(201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_____(2016).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6/2017/3, December 2016.

_____(2017).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New York: United Nations.

UNESCAP(2016) *List of Gender and Gender Related Indicators by Tier*. UNESCAP www.unescap.org/resources/list-gender-and-gender-related-sdg-indicators-tier (접속일: 2017. 8.10.)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New York: UNDP.

UNICEF (2006).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7*.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s.

_____(2014). *Hidden in Plain Sight: A Statistical Analysi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s.

UNODC (2014). *Global Study on Homicide 2013*. Vienn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_____(2016).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Vienn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SD (2016a).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5.pdf> (접속일: 2017.8.10.)

UNSD (2016b).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6.pdf> (접속일: 2017.10.10.)

UNSD (2016c).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8.pdf> (접속일: 2017.10.10.)

- UNSD (2016d).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1.pdf>
 (접속일: 2017.10.10.)
- UNSD (2016e).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3.pdf>
 (접속일: 2017.10.10.)
-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5/2017-2-IAEA-SD-Fs-E.pdf> (접속일: 2017.11.10.)
- UN Task Team (2013).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 (접속일: 2017.11.10.)
- UN Women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UN Women. <http://www.unwomen.org/> (접속일: 2017.11.10.)
- _____ (2015a). *Position Paper: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UN Women
- _____ (2015b).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Transforming Economics, Realizing Rights.* New York: UN Women.
- _____ (2015c). *IN BRIEF: Safe Cities Global Initiative.* UN Women. (URL: <http://www2.unwomen.org/-/media/field%20office%20eseasia/docs/publications/2016/10/4un%20women%20safe%20cities%20brief-dec%202014-kbelen.pdf?la=en&vs=4948>, (접속일: 2017. 11. 29.)
- _____ (2016). *UN Women Launches Flagship Programme Initiative, Making Every Women and Girls Count.*
<http://www.unwomen.org/en/news/stories/2016/9/un-women-launches-flagship-programme-initiative-making-every-woman-and-girl-count> (접속일: 2017.11.10.)
- _____ (2017). *Gender-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UN Women.



17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AybyaqcDYAhWLIJQKHQISC7wQFggsMAA&url=http%3A%2F%2Fdata2x.org%2Fwp-content%2Fuploads%2F2017%2F05%2FUNWomenList_GenderSDGIndicators.pdf&usg=AOvVaw3ouyzu-XMOLn60XyVgcRLx (접속일: 2017. 8. 14.)

Winter, B., Thompson, D. & Jeffreys, S. (2002) The UN Approach to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4:1, 72-94. DOI: 10.1080/14616740110116191.

WHO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포털. <http://info.nec.go.kr>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http://archive.nypi.re.kr>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http://hotline25.tistory.com/4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포털. <https://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

<http://www.kwdi.re.kr/page.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188>

UNSD. <https://unstats.un.org>

UN Women. <http://www.unwomen.org/en>



부 록: SDGs 목표 5 번역표



<부록> SDGs 목표 5 번역표

이 부록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젠더 독자목표인 Goal 5의 번역과 각 번역에 대한 설명을 서술할 것이다. 이 부록을 수록하게 된 이유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국내 공식 번역본이 부재하고, 각 기관별 번역이 상이하며 때로는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Goal 5의 경우, 기존의 국제사회의 젠더관련 논의를 응축하여 내포하기 때문에 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번역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진의 분석과 젠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토대로, Goal 5를 번역한 내용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 1> SDGs 목표 5 번역표

목표 5	영문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번역(안)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설명	'empower'에 대해 '권익신장' '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공식번역인 '권한강화'를 채택하여 사용함. 'girls'에 대해 '여아' 혹은 '소녀'로 혼용하여 쓰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소녀로 번역함. 보다 분명한 번역으로 'girl child'는 여자아동 혹은 여아로, 'gir'은 소녀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참고로 'men and boys'를 남자와 소년이라고 해석하듯이, 'women and girls'을 여성과 소녀로 번역함)
목표 5.1	영문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번역(안)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설명	기관별로 'End'에 대한 번역으로 '중지' 혹은 '종식'의 번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단어의 의미를 살펴 종식을 사용함.
지표 5.1.1	영문	Whether or not legal frameworks are in place to promote, enforce and monit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번역(안)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설명	'promote'는 증진으로, 'enforce'는 집행으로, 'monitor'은 모니터링으로, 'non-discrimination'은 비차별로 번역하여 사용함. 'enforce'의 경우 법을 강제한다고 번역한 기관도 있었으나,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non-discrimination'의 경우 '반차별'과 '비차별'의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비차별'을 선택함.

17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목표 5.2	영문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번역(안)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설명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에 대해 ‘폭력 근절’ 혹은 ‘폭력 제거’ 등의 번역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공식 번역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차용하여 사용함.
지표 5.2.1	영문	Proportion of ever-partnered women and girls aged 15 years and older subjected to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violence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form of violence and by age
	번역(안)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설명	이 지표는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을 보고자 하는 지표임. Girls의 범위를 18세 이하의 여성으로 총칭할 수 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15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세 이상의 소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intimate partner’에 대한 적절한 국문 번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의미상 성적 파트너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 이는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이라는 두 가지 틀 외에도,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는 데 의의가 있음.
지표 5.2.2	영문	Proportion of women and girls aged 15 years and older subjected to sexual violence by persons other than an intimate partner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age and place of occurrence
	번역(안)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설명	이 지표는 역시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을 보고자 하는 지표임. 성적 파트너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에 초점을 맞춤.
목표 5.3	영문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번역(안)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설명	‘Harmful practices’은 사회문화적인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해한 관습으로 번역함.

지표 5.3.1	영문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5 and before age 18
	번역(안)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설명	20-24세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15세 이전, 18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여성의 2개 그룹을 각각 보는 것임. 조혼율은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모집단을 20-24세 여성으로 설정함. 'in a union'은 사실혼 관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동거라는 표현이 적절함.
지표 5.3.2	영문	Proportion of girls and women aged 15–49 years who have undergone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by age
	번역(안)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설명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은 여성할례라고도 번역되지만, 할례는 이슬람적 용어라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여성성기절제로 번역함.
목표 5.4	영문	Recognize and valu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frastructure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promotion of shared responsibility within the household and the family as nationally appropriate.
	번역(안)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설명	타 기관의 번역에 따르면 'unpaid work'에 대한 번역이 무상돌봄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무보수 돌봄으로 번역함. 이는 Paid work는 임금노동이라고 해석되는데 반해 unpaid care가 무상 돌봄으로 해석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돌봄의 의미를 띠다고 판단함. 따라서 paid work의 반대개념으로 적절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무보수 돌봄'으로 번역함.
지표 5.4.1	영문	Percentage of time spent on unpaid domestic and care work, by sex, age and location
	번역(안)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설명	목표 5.4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unpaid domestic and care work'에 대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번역함.

17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목표 5.5	영문	Ensure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번역(안)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설명	'public life'에 대해 공적 생활 혹은 공직생활의 번역이 혼재하였으나, 이 세부목표에서 의미하는 바는 가정 외의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적생활로 번역함.
지표 5.5.1	영문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and local governments
	번역(안)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설명	-
지표 5.5.2	영문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번역(안)	여성관리직 비율
	설명	-

목표 5.6	영문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번역(안)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설명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을 성·생식보건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성·재생산 건강'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전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된 모자보건과는 다른 의미로 여성의 생애 주기적 전체의 인권의 개념으로 (rights-based approach)을 강조함. 즉, 생리,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출산 이후 건강 관리, 갱년기 등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을 전체로 포괄하는 건강을 의미함. 한편, 'reproductive health'는 재생산 권리를 의미하며, 성적 권리(sexual rights)에 대한 문구는 제외된 것이 특징임.
지표 5.6.1	영문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번역(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설명	Informed decisions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함. Sexual relations는 성적 관계로, Contraceptive use는 피임도구 사용으로 Reproductive health care는 재생산 건강관리로 번역함.

지표 5.6.2	영문	Number of countr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guarantee women aged 15–49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information and education
	번역(안)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설명	지표 5.6.1의 해설과 같음.
목표 5.a	영문	Undertake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번역(안)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설명	-
지표 5.a.1	영문	(a) Proportion of total agricultural population with ownership or secure rights over agricultural land, by sex; and (b) share of women among owners or rights bearers of agricultural land, type of tenure
	번역(안)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농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설명	-
지표 5.a.2	영문	Proportion of countries where the legal framework (including customary law) guarantees women's equal rights to land ownership and/or control
	번역(안)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설명	-
목표 5.b	영문	Enhance the use of enabling technology, in particul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mote the empowerment of women.
	번역(안)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설명	-
지표 5.b.1	영문	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own a mobile telephone, by sex
	번역(안)	성별 휴대폰 보유율
	설명	-

17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목표 5.c	영문	Adopt and strengthen sound policies and enforceable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at all levels.
	번역(안)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설명	Enforceable는 집행 가능한, Promotion은 증진, Empowerment은 권한 강화로 번역함. '견실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하는 것에는 정책, 예산 집행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포함됨.
지표 5.c.1	영문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systems to track and make public allo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번역(안)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설명	'Public allocations'에 대해 '공공자원' 혹은 '공공재원'의 번역이 혼용되고 있으나, 공공자원 배분으로 번역함

Abstract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South Korea: Gender-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Eun Ha Chang
You Kyung Moon
Hye Seung Cho
Jung Soo Kim
Ji Hyun Kim

This research explores the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outh Korea. Among its 17 goals and 169 targets, SDGs sets forth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s a stand-alone Goal 5, and gender issues are also cross cut in other goals as well. The independent as well as cross cutting nature of gender related issues imply the quintessential nature of gender in attaining the overall SDG targets. Given this context, this study employs document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It analyzes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each gender 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with thorough gender lens. The availability and applicability of domestic statistical data is reviewed as baseline SDGs indicators, and current status of achievements are analyzed.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progress South Korea has made in relation to several 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but it still confirms gender gap in various fields. Particularly, as certain indicators such as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may not be fit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it is advised that alternative targets are suggested. Regarding insufficient availability and applicability of domestic statistics, the study calls for further discussions on applying and developing domestic statistics for fut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for systemic approach and management of gender-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of SD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which can coordinate the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In addition, a road map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s i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policy data for establishing a concrete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 targets in South Korea, and ultimatel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ity in SDGs.



2017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2017년 12월 29일 인쇄

2017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권 인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886-3 93330

<정가 22,000 원>